

2022년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

어린이집 연장보육반 운영 현황 조사 및 질적 분석

책임연구원

이지혜(한국국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공동연구원

정진희(우송정보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김선영(대전광역시청어린이집 보육교사)

※ 본 연구는 2022년 참여형 현장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된 연구로써
본 연구결과는 사회서비스원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목적	7
제2장 문헌 검토	9
제3장 연장보육서비스 운영 현황 및 인식 조사	19
제1절 연구대상	21
제2절 연구방법	24
1. 연구절차	24
2. 연구도구	25
제3절 연구결과	26
제4장 연장보육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개별·집단 인터뷰	43
제1절 연구대상	45
제2절 연구방법	46
제3절 연구결과	49
1. 연장보육반에 대한 경험 및 인식	49
2. 어린이집 연장보육에 대한 인식	66
3. 연장보육반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	74
4. 연장보육제도에 대한 요구와 바람	81
제5장 결론 및 제언	89
제1절 논의 및 결론	91
1. 연장보육서비스 운영 현황 및 인식 조사	91
2. 연장보육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개별·집단 인터뷰	95
제2절 제언	104
참고문헌	108
부록: 설문지	111

표/그림 차례

<표 2- 1> 만 0~2세 영아반 연장보육 자격기준	15
<표 2- 2> 연장보육 반별 정원기준 및 탄력편성	16
<표 2- 3>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17
<표 2- 4> 대전지역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현황	18
<표 2- 5> 전자출결시스템 설치·운영	18
<표 3- 1> 원장의 일반적 특성	21
<표 3- 2> 기본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	22
<표 3- 3> 연장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	22
<표 3- 4> 기관유형별 일반적 특성	23
<표 3- 5> 설문지 내용 구성	25
<표 3- 6> 기관내 영아반·유아반 연장보육반 구성	26
<표 3- 7> 연장보육반을 위한 전용보육실 이용 현황	26
<표 3- 8> 인수인계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27
<표 3- 9> 교사대 영유아 비율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28
<표 3-10> 연장보육제도 적용 후 현장에서 가장 개선 된 점	28
<표 3-11> 연장보육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	30
<표 3-12> 연장보육 운영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해야할 점	31
<표 3-13> 연장보육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어떠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가?	32
<표 3-14> 연장보육반의 합리적인 운영시간	33
<표 3-15> 연장보육반이 신청자격 기준	34
<표 3-16> 연장보육반의 영아반(만0-2세)의 적정 정원	35
<표 3-17> 연장보육반의 유아반(만3-5세)의 적정 정원	36
<표 3-18> 연장보육반의 영아반(만0-2세)의 탄력보육 정원	36
<표 3-19> 연장보육반의 유아반(만3-5세)의 탄력보육 정원	37
<표 3-20> 연장보육반 활동 계획	38
<표 3-21> 연장보육반 활동 계획시 참고자료	39
<표 3-22> 계획한 연장보육반 보육활동의 실행정도	39
<표 3-23> 연장보육반 보육 활동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	40
<표 3-24> 연장보육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놀이 및 활동	40
<표 3-25> 연장보육반 영유아들이 하원 후 남은 시간 운영 법	41
<표 3-26> 연장보육교사로서 가장 어려운 점	41
<표 4- 1> 연구참여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일반적 배경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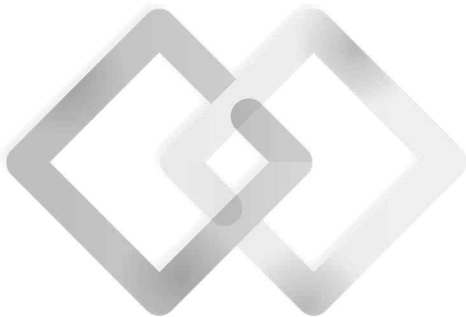
<표 4- 2> 연구참여자(부모) 일반적 배경	46
<표 4- 3> 면담 형태 및 면담 기간	46
<표 4- 4> 연장보육제도에 대한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 목록 예시(연장보육교사용) ...	47
<표 4- 5> 수집된 자료 목록	48
[그림 2- 1] 맞춤형 보육에서 연장보육으로의 변경내용	13
[그림 2- 2] 연장보육제도 기본 운영 모형	14
[그림 2- 3]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보육료 지원	15
[그림 3- 1] 전용보육실 유무와 보육실 이용 이유	27
[그림 3- 2] 연장보육제도 적용 후 현장에서 가장 개선 된 점	29
[그림 3- 3] 연장보육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	30
[그림 3- 4] 연장보육 운영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해야할 점	31
[그림 3- 5] 연장보육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필요	32
[그림 3- 6] 연장보육반의 합리적인 운영시간	33
[그림 3- 7] 연장보육반의 신청자격 기준	34
[그림 3- 8] 연장보육반의 영아반(만0-2세)의 탄력보육 정원	37
[그림 3- 9] 연장보육반의 유아반(만3-5세)의 탄력보육 정원	38

2022년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

**어린이집 연장보육반
운영 현황 조사 및 질적 분석**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 사회는 영유아의 출생 감소로 인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다. 경제구조의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 속에 여성 인력의 사회 참여율은 점차 높아졌으나,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는 전통적으로 어머니의 역할로 인식되어 온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를 수반하게 되었다. 이는 곧 여성의 출산 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여성이 사회적 활동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또한 자녀 양육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효과적인 보육 정책 개발뿐 아니라 지원 확대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문무경·박창현·송기창·김문정·2017; 박정미, 2019).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난 2020년 3월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온종일 활기차게’라는 슬로건 아래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분리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2019; 보건복지부, 2020).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운영 원칙에 따라야 했던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분리 운영하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사실 기존에는 12시간 운영기준이 제시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보육교사 수급을 위한 재정 부족과 교사 업무 과다 등의 문제로 인해 오전 9시 이전 또는 오후 6시 이후 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강제성 없이 각 어린이집의 운영 여건에 맡기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어린이집 운영 체제 속에서 영유아를 맡긴 부모는 ‘우리 아이만 혼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아이 때문에 선생님이 늦게 퇴근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해야 했고, 지친 선생님의 모습에 눈치 봐야 했다. 장시간의 보육업무는 실제로 보육교사뿐 아니라 원장에게도 힘들고 지치는 일이었다(이윤신, 2019; 이정민·이재필·손여울·김예은·방현, 2019). 따라서 이제는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분리하고, 더불어 연장보육시간을 운영하는 전담교사 배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보육정책을 개발·적용하고자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를 통해 보호자의 부담은 덜고, 기본보육반 담임교사¹⁾의 근무여건은 개선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기대와 목적에 따라 개편된 보육체계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돕고자 보건복지부, 보육진흥원, 아이사랑 포털,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부처에서는 원장, 보육교사, 영유아 부모를 위한 다양한 홍보 안내 자료를 제작·배포하기도 하였다.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역할 인식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사교육의 기회들도 마련되었다. 그러나 연장보육 운영에 대한 이해 문제와는 별개로 연장보육 시스템을 도입·적용하여 직접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정부 지원 불안정, 교사 간 역할 갈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 등과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들도 높아졌다.

지난 2022년 7월 한 뉴스 기사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연장보육 이용 아동의 하원 시간을 조작하여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정해선, 2022). 연장보육반 이용시간에 관한 문제는 맘카페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대전세종맘스베이비, 2022; 맘스홀릭베이비, 2022)에서도 종종 언급되는 주제로, ‘연장반 하원 시간이 가끔 터무니 없이 늦게 찍혀요’, ‘한 달, 일정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연장반 교사 급여지원이 중지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 시간을 채워야 어린이집도 연장반 운영을 하죠’, ‘기본 시간도 못 채우면 왜 신청을 하나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만 신청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등 이러한 운영실태는 이미 만연해있으며, 또 이에 대한 이용자 간 찬반 입장으로서의 갈등 의견까지 오가고 있었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후 시행된 ‘2020 상반기 보육교사 노동실태조사’에서는 84.59%의 교사들이 업무 가중이 줄지 않았다고 답하였고, 그 중 32.7%의 교사들은 오히려 업무여건이 더 나빠졌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2020). 영아반 월 30시간, 유아반 월 80시간 이상이라는 연장보육반 최소 이용시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불가로 인해 결국 담임교사들이 연장보육 업무를 겸임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연장반 미신청 아동도 간헐적으로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22b),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별도의 연장보육반이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1) ‘기본보육반 담임교사(보건복지부, 2022b)’란 기본보육시간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전에는 ‘담임교사’로 칭해졌던 교사를 의미함. 이 용어는 관련 공식 자료나 안내를 비롯하여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호칭으로 혼용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도 인용 자료나 각 사례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기본보육반 담임교사’, ‘담임교사’, ‘기본보육반 교사’, ‘기본보육교사’와 같은 다양한 호칭을 사용하게 됨.

연장보육 이용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또, 연장보육교사에 관한 조항에서는 원장과 담임도 연장반교사직을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보육교직원 노조 연합은 현장 상황을 알면 이런 대안을 내세울 수 없다는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권현경, 2019).

국민신문고에는 기본보육반 담임교사로서 연장보육반 교사 업무를 겸해야 하는 보육교사의 고충을 호소하는 민원 글이 등록되었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답변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배치는 선정 조건 충족 및 우선순위 선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설명과 민원인의 업무 가중 어려움을 돕지 못하는 데 대한 사과였다(국민신문고, 2022). 이 외에 보육교사들의 온라인 소통 공간(유치원·보육교사의 작은반란, 2022; 지혜쌤의 최강유아교육자료실, 2022; 키드키즈, 2022)에서도 담임교사로서 또는 오후 보조교사로서 연장보육반 업무까지 겸하고 있는 교사들의 고충과 불만에 관한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연장교사 겸임해도 아무런 추가 수당은 없어요’, ‘8시간 이후로 초과근무해야 시간외수당이라도 받는 거라, 연장반까지 보더라도 8시간 이내이면 그냥 온종일 보육하다 퇴근하는 거예요’ 등 교사들의 업무 가중과 사기 저하를 구체적으로 실감하게 하는 의견들도 다양했다. 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 입장에서는 또 ‘담임 선생님이 연장보육 겸임하셔서 그런지 연장반 신청했는데도 6시 정도면 하원해야 해요(맘스홀릭베이비, 2022)’ 라며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들은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수요에 부응하여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하고자 했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의 주요 취지를 되짚어 보게 한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전에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50.0%의 아동이 5시 이전에 하원해야 했다면, 개편 이후에는 5시 이전 하원 비율이 21.7%로 크게 감소되었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연장보육제도의 도입 효과를 발표하였다(조용남, 2021). 그러나 단순히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많아졌다는 조사 결과로서 정책적 효과를 결정하기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집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컸다.

이에 관련 분야에서는 운영의 현실적인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지며, 연장보육제도를 적용·실행해 나아가고 있는 현직 보육교사와 원장들을 대상으로 연장보육제도의 운영 실태, 인식, 요구 등을 조사·분석하는 연구들(강은진·최경, 2020; 김은미·전유영, 2021; 박성자·권이정, 2022; 이은재, 2021)도 활발하게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서는 기본 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분리된 새로운 운영 체제의 현장 정착 실태 및 경향, 제도적 장점

과 단점에 대한 인식과 요구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김자옥(2020), 임은선·신동주(2022)는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자로서의 영유아 부모 관점에서 연장보육제도에 대한 인식, 만족도, 요구 등을 설문 조사하여 이를 보육교사의 응답과 비교해 봄으로써, 연장보육의 현실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이해와 접근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동반되지 않은 수치화된 연구결과만으로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구조적인 원인과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장보육반 운영의 과정적·질적인 문제에 더욱 초점 맞춘 현장 연구들(고명자, 2021; 김혜금, 2021; 류다현·김은주, 2021)도 속속 이루어지게 되었다. 류다현·김은주(2021)는 연장보육반 운영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기본보육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기본보육교사는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고충을, 연장보육 전담교사들은 모호한 역할 구분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음이 밝혀졌다. 고명자(2021)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연장보육제도의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제도적 문제점을 밝혀내며, 연장보육반 운영 개선 방안으로써 연장보육시간 조정, 재정적 지원,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전문성 강화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반면, 이남수·임민정(2021)의 연구에서 연장보육 전담교사들은 오히려 이 같은 제한된 직무 범위, 전문성에 대한 불인정과 같은 요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남수·임민정, 2021).

즉, 연장보육제도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원장, 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 연장보육반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각기 다른 역할들을 대상으로 다각적 관점에서의 조사·분석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은 원장 집단, 연장보육 전담교사 집단과 같이 단일 유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거나(강은진·최경, 2020; 고명자, 2021; 박성자·권이정, 2022; 이남수·임민정, 2021) 원장과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와 같이 두 집단 간 비교 연구(김은미·전유영, 2021; 류다현·김은주, 2021)로 이루어진 형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연장보육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기본보육교사, 연장보육교사 세 집단 모두가 참여하는 양적·질적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연장보육제도의 현실적 문제를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이해·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 실제 현장에서의 연장보육반은 전담교사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교

사나 담임교사가 겸임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문제로 인한 연장보육반 겸임교사들의 고충과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간과했던 이 같은 연장보육반 겸임교사로서의 입장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보고자 한다. 연장보육반 교사 집단은 특별히 전담 형태와 겸임 형태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함으로써, 또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연장보육의 현실적·제도적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즉, 연장보육제도의 현장 적용 현황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복합적·맥락적 차원에서의 분석과 이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장보육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가 반영될 필요가 있기에 영유아 부모 대상의 심층 면담을 추가하고자 한다. 연장보육제도에 관한 영유아 부모 대상의 질적 연구는 본 연구를 통해 처음 시도됨으로써, 부모의 입장에서 경험한 연장보육의 구체적 현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연장보육제도가 현장에 도입된 지 3년째 되는 시점에 제도의 현장 안착 실태에 관심을 두고 이러한 현장 중심적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 실제 운영 현장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분석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연장보육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제2절 연구목적

본 연구는 어린이집 연장보육반 운영에 관한 실태·인식 조사 및 FGI 분석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어린이집의 연장보육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현황, 실태, 특성 등을 조사·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보육교직원들의 연장보육 운영에 관한 인식적 특성을 원장, 기본보육반 담임교사, 연장보육반 교사라는 세 집단의 차원에서 비교·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 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입장으로서의 원장, 기본보육반 담임교사,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연장보육반 겸임교사,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면담함으로써, 포괄적 관점에서의 연장보육 현실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 접근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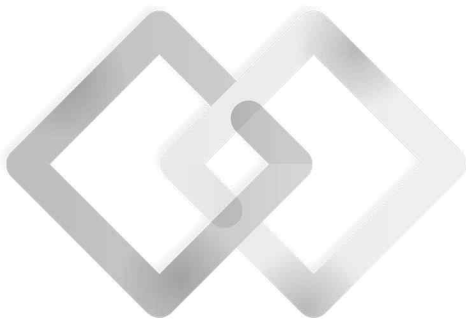
넷째, 본 연구는 어린이집 연장보육 운영의 현실적 문제를 논하고, 이에 기초하여 연장보육제도의 수정·보완에 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22년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

**어린이집 연장보육반
운영 현황 조사 및 질적 분석**



제2장 문헌 검토



제2장 문헌검토

1. 연장보육제도의 추진배경

1) 무상보육 및 맞춤형 보육제도

1991년에 취학 전 영유아의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됨으로써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확대되고 공보육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12년에는 만 0~2세, 만 5세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였고, 2013년에는 모든 영유아가 동일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만 3~4세까지 무상 보육제도가 확대 시행됨으로써 무상보육에 대한 공공성이 강화되었다(김은미, 전유영, 2021; 양옥승, 2019). 이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12시간 종일반이 운영되었고, 가정 보육 시 받는 양육수당²⁾보다 보육료 지원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맞벌이나 취약 가정이 아닌 비취업모도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기 위해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취업모와 비취업모와의 갈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야기되었다(이운신, 2019; 전명숙, 2014).

이러한 무상보육제도로 인해 국가 재정의 부담 증가와 너무 이른 시기에 영아들이 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부모와의 애착형성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16년 7월에 맞춤형 보육제도가 도입되었다. 맞춤형 보육대상은 홀벌이 가정의 영아이고, 종일반 보육대상인 맞벌이, 영아 2인 가구, 다자녀 · 다문화 가정 등의 영아는 제외한다. 맞춤형 보육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15시까지 하루 6시간으로 가정 사정에 따라 월 15시간의 보육 서비스(긴급보육 바우처)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a, 2016). 하지만 대부분의 맞춤형 보육 이용자들이 2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맞춤형 보육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맞춤반 이용시간 비용지불과 긴급바우처 비용을 2회에 걸쳐 결제해야 하는 결제시스템의 번거로움을 호소하였다. 또한, 맞춤형 보육대상자 부모들이 촉박한 맞춤반 귀가 시간으로 인해 맞춤반에서 종일반으로 전환하는 현상도 나타났다(권영희, 2017). 이처럼, 맞춤형 보육제도로 인한 복잡한 행정처리, 어린이집 이용시간

2) 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복지 수당이다(보건복지부, 2013).

에 대한 비취업모와 취업모의 차별적인 보육형태 그리고 보육료 수입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어린이집 이용의 불편함을 줄이고, 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었다(오경미, 2017).

2)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란 보육교사가 자신의 역할을 책임 있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전반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육교사의 복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유희정, 이미화, 2004), 금전적인 보수, 고용조건, 근로조건, 의사소통 등을 포함한다. 특히 보수와 근무시간은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육교사가 이에 대해 불만족하게 되면 직무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는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영유아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교사들의 전문적인 역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근로자로서 1일 8시간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이 1일 12시간 이상을 운영하므로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류다현, 김은주, 2021).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9.5~10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 행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 외 근무를 하고 있었다(김원경, 2015). 2003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으나 보육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들의 퇴근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장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6b).

2018년 7월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실행되면서 근로자들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근로가 제한되었으며, 그 외에도 탄력적 근로, 1주간 12시간 이상 연장근로의 제한, 즉 근로시간이 최대 주 52시간 이상 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의 근로환경에도 큰 변화가 일게 되었고, 이전에는 보육이 주 최대 40시간 근무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특례업종에 속하였으나 2018년에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법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받게 되었다(권순임, 구수연, 2020). 하지만 2019년 보육사업안내에서 여전히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1일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1일 8시간 근무하는 교사의 근로시간과 어린이집 운영시간과의 조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2. 연장보육제도의 개념 및 운영

1) 연장보육제도의 개념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7:30~19:30)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1일 8시간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2019) 어린이집의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7:30~16:00)’ 과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16:00~19:30)’ 으로 보육시간(과정)을 구분하고 연장보육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연장보육료와 연장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다. 연장보육제도의 목적 및 연장보육반 운영에 따른 변경 내용은 아래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맞춤형 보육에서 연장보육으로의 변경 내용



출처 : 보건복지부(2019).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

[그림 2-2] 연장보육제도 기본 운영 모형

7:30		9:00		16:00	17:00	19:30
과정	등원 지도	기본보육			연장보육	
아동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			연장보육 신청 아동 * 0~2세는 자격필요		
반 구성	통합반	연령별 반 구성			연장반(연령 혼합)	
교사	당번 교사	담임 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보육료	보육료			시간당 보육료		

출처 : 보건복지부(2019).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

이처럼, 연장보육제도는 보육과정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은 현행 담임교사가 배치되고,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 시간에는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영유아는 전담교사 배치로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되고, 교사는 업무부담 경감 및 근무환경이 개선되며, 부모는 부담 없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이용하고 어린이집은 장시간 보육운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보건복지부, 2020).

2) 연장보육의 운영

(1) 기본보육·연장보육 운영체계

2020년 3월부터 연장보육제도가 시행되면서, 기본보육반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6시(오후 4시)까지이다. 대상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을 신청한 모든 영유아이며, 기본보육반 교사는 기존에 배치된 담임교사가 담당하고 기본보육반 교사(담임교사)는 정기적인 대면 보육시간 7시간, 기타업무 시간 1시간, 휴게시간 1시간을 갖는다.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에 따라 기본보육반 교사의 휴게시간은 기본보육시간 내 또는 기본보육 시간 이후의 근무시간 중에 부여된다. 순차적인 등·하원지도를 위한 당번 형식의 통합반 보육이 가능하다. 기본보육 시간 보육료는 등·하원 및 행정업무 등을 반영하여 기본보육이 끝난 이후 1시간까지 포함하여 17시(오후 5시)까지로 산정된다.

[그림 2-3]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보육료 지원



출처 : 보건복지부(2020).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안내(원장용)

기본보육시간 이후 연장보육시간은 16시(오후 4시)부터 19시 30분(오후 7시 30분)까지로 대상 아동은 연장보육을 사전에 신청한 영아 또는 유아이다. 만 0~2세 영아는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장보육 신청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시·군구에서 승인되며 해당어린이집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만 3~5세 유아반은 별도의 연장보육반 신청자격 기준이 없으며 어린이집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 0~2세 영아반 연장보육 신청자격 기준은 취업, 구직, 가정형태, 장애·건강, 임신·출산, 학업, 장기 부재로 나누어지고,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만 0~2세 영아반 연장교육 자격기준

취업	임금근로자(주 15시간 이상). 임금근로자(주 15시간 미만-연장보육시간에 근무하는 자), 자영업자, 농·어업인, 예술인, 무급가족종사자, 기타근로자
구직	구직/취업준비
가정	다자녀(자녀2인 이상 가구로 확대), 한부모가족, 조손가구,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장애·건강	장애, 장기요양/산정특례, 입원/간병
임신·출산	임신, 출산, 유산
학업	재학(원격대학 재학인정), 학위과정(논문작성기간 인정, 1년 1회 한정)
장기 부재	군복무, 복역

출처 : 보건복지부(2022b).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2) 연장보육반 편성

연장보육을 위해 별도의 연장보육반을 영아반과 유아반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17시까지는 차량 시간, 하원 지도 등 상황에 따라 담임 또는 당번 교사가 근무할 수 있으므로, 연장보육반은 17시 이후의 보육수요를 기준으로 편성한다.

<표 2-2> 연장보육 반별 정원기준 및 탄력편성

반별 정원	영아반(0~2세)	유아반(3~5세)	장애아 포함 또는 0세반	0세반 아동 포함 영아반 ³⁾	
				1개반	그 외
원칙	5명	15명	3명	3명	5명
탄력편성 가능인원 ⁴⁾	2명	5명	0명	2명	2명

출처: 보건복지부(2022b).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탄력보육 대상은 연장반 정원이 충족된 상태에서 신규 아동이 연장보육을 추가 신청하거나, 연장반 미신청 아동 중 ‘간헐적·긴급 연장보육’을 신청한 경우이다. 간헐적·긴급 연장보육은 연장보육 미신청 영유아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17시(오후 5시) 이후 하원해야 하는 경우, 연장반 탄력보육 허용 범위 내에서 연장보육을 하는 것이다. 부모가 간헐적 또는 긴급하게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날이나 당일 오전까지 어린이집에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전자출결 시 연장보육료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0).

(3) 연장보육교사 근무조건 및 인건비 지원

연장보육반은 연장보육교사가 배치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평일 15시에 출근하여, 16시까지 보육준비 및 30분의 휴게 시간을 갖고 16시부터 19시 30분까지 연장반 보육을 한다. 근무내용은 연장보육반 보육을 계획하고 보육시간 내 책임을 지고 보육하며, 부모에게 하원지도 및 영유아를 인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연장보육반은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가 원칙이나 기본보육시간 보조교사가 근무 후 연장반 교사로 근무하거나, 야간연장(시간연장) 교사가 근무시간 내에 연장반을 전담할 수 있다. 야간연장반 교사가 연장반 전담 시 기존 지원되는 근무시간 범위 내의 근무로 별도 인건비 지원은 없다(보건복지부, 2022).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 어린이집은 아래 <표 2-3>에서와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3) 0세반 아동 포함 영아반은 1개 어린이집당 1개반에 한해 정원 3명 가능

4) 탄력편성 아동은 시스템 상 연장반에 등록하지 않으며, 보육일지를 통해 관리

<표 2-3> 연장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요건	① 연장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반 구성 ②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 - 영아반 3명(0세반 아동 포함 시 2명 가능), 유아반 8명. 단, 장애아 포함 또는 0세반일 경우 2명 (기준) 전월 연장반 현원이 월 1회 이상 정원의 50%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③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 0세반 및 장애아반 월 20시간, 영아반 월 30시간(0세반 아동 포함 시 월 20시간도 가능), 유아반 월 80시간 이상 (기준) 전월 말 연장반 영유아 현원을 기준으로 월 이용시간 충족 시 지원 가능 ④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지원 인원	지원 대상 어린이집의 연장반별로 교사 1인 지원
지원 단가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월 1,025천원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30천원 지원 *야간연장 보육교사(월급여형)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겸임할 경우 보수는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와 수당을 지급, 야간연장 보육교사(단시간형)에게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전담수당 지급 가능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의 30%는 정부 지원, 나머지는 어린이집 부담 *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연령 상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원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급여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출처 : 보건복지부(2022b).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교사를 지원목적과 달리 활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연장보육과 관련된 업무 미수행, 기본보육반 영유아의 하원 차량에 동승, 근무시간 미준수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며, 과오지급된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에 환수 조치가 된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다음 해부터 2년 동안 연장보육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농어촌 지역인 경우, 그리고 신규채용, 보조교사 겸임, 야간연장 보육교사 활용 등 연장보육교사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연장반에 전담교사 배치가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담임교사가 연장반을 보육할 수 있다. 기본보육반 담임교사가 연장반을 겸임할 경우 전담수당 및 인건비는 미지원되지만, 연장보육료는 지원됨에 따라 연장보육료의 일부를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2).

<표 2-4> 대전지역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현황

(단위: 원)

급여	1,025,000	
처우개선비	35,000	
교통급식비	30,000	
영아반 담임교사 수당 (근무환경개선비)	130,000	
장기근속수당	30,000	한 기관에서 37개월부터 지급
명절수당 연 2회	50,000	유성구는 50,000원씩 추가 지급
스승의 날	100,000	
건강증진비 연 1회	100,000	유성구는 100,000원 추가 지급

대전지역 어린이집 연장반 전담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현황 <표 2-4>를 살펴보면, 유성구만 명절수당과 건강증진비를 다른 구보다 각각 두 배 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지역구들도 유성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수당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전자출결시스템 설치·운영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등·하원 정보를 자동으로 체크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영유아가 자동 출결을 위한 인식장치(TAG)를 소지하고 등·하원하면 어린이집에 설치된 감지 기기를 통해 영유아의 등·하원 시간을 인식하게 된다. 미설치 시 연장보육료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연장보육반 교사 인건비 지원에서도 제외된다.

<표 2-5> 전자출결시스템 설치·운영

개념	-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위해서는 영유아의 등·하원 정보를 자동으로 체크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함
기능	- 영유아 등·하원시간 인식 - 영유아 등·하원 시간 문자 알림
목적	- 등·하원 시간 안내로 영유아 부모 안심 - 출석부 서류 관리 및 출석일수 확인 등 행정업무 감소 -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관리 업무 감소
설치·운영	- 영유아는 자동 출결을 위한 인식장치(태그 등)를 소지하고 어린이집 등·하원 - 어린이집은 등·하원 시각 기록을 위한 기기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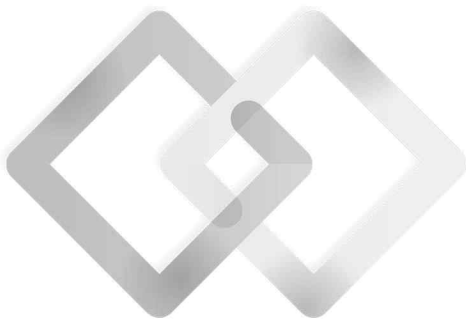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2020).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안내

2022년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

**어린이집 연장보육반
운영 현황 조사 및 질적 분석**



**제3장 연장보육서비스
운영 현황 및 인식 조사**



제3장 연장보육서비스 운영 현황 및 인식조사

제1절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장보육서비스 운영 현황과 연장보육제도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연장보육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 기본보육교사, 연장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원장, 기본보육교사, 연장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 표 <표 3-1>, <표 3-2>, <표 3-3>과 같다.

<표 3-1> 원장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여	71	98.6
	남	1	1.4
연령	만20세-29세	1	1.4
	만30세-39세	6	8.3
	만40세-49세	23	32.0
	만50세-59세	36	50.0
	만60세 이상	6	8.3
근무경력	1년 미만	0	.0
	1년 이상-5년 미만	0	.0
	5년 이상-10년 미만	4	5.6
	10년 이상	68	94.4

<표 3-1>과 같이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성별은 여자응답자가 71명(98.6%)으로 많았으며, 연령은 만50세-59세가 36명(5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만40세-49세가 23명(32%)으로 응답하였다. 근무경력에는 10년 이상 68명(94.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원장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연령 만50세-59세 응답자와 근무경력 10년 이상 응답자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기본교사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여	81	100.0
	남	0	.0
연령	만20세-29세	32	39.5
	만30세-39세	20	24.7
	만40세-49세	25	30.9
	만50세-59세	4	4.9
	만60세 이상	0	.0
근무경력	1년 미만	2	2.5
	1년 이상-5년 미만	62	76.5
	5년 이상-10년 미만	13	16.1
	10년이상	4	4.9

<표 3-2>와 같이 설문에 응답한 기본보육교사의 성별은 여자응답자가 81명(10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만20-29세 32명(39.5%), 만40세-49세 25명(30.9%), 만30세-39세 20명(24.7%)으로 근소한 차이로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무경력은 1년 이상-5년 미만의 응답자가 62명(76.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5년 이상-10년 미만의 응답자가 13명(16.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연장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여	72	96.0
	남	3	4.0
연령	만20세-29세	16	21.3
	만30세-39세	15	20.0
	만40세-49세	27	36.0
	만50세-59세	17	22.7
	만60세 이상	0	.0
근무경력	1년 미만	6	8.0
	1년 이상-5년 미만	31	41.3
	5년 이상-10년 미만	17	22.7
	10년 이상	21	28.0

연장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은 위의 <표 3-3>과 같다. 성별은 여자 72명(96%), 남자 3명(4%)인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만40세-49세 27명(36%), 만50세-59세 17명(22.7%), 만20세-29세 16명(21.3%), 만30세-39세 15명(20%)으로 기본보육교사 응답자 집단보다 연령분포의 범위가 더욱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근무경력은 1년 이상-5년 미만이 31명(41.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년 이상이 21명(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기관유형별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구분		원장	기본보육교사	연장보육교사	전체
어린이집 유형	가정	21(29.2)	20(24.7)	22(29.3)	63(27.6)
	민간	24(33.3)	24(29.6)	19(25.3)	67(29.4)
	사회복지법인	6(8.3)	8(9.9)	5(6.7)	19(8.3)
	법인·단체	2(2.8)	1(1.2)	0(.0)	3(1.3)
	국·공립	11(15.3)	12(14.9)	20(26.7)	43(18.9)
	직장	8(11.1)	15(18.5)	9(12)	32(14.1)
	협동	0(.0)	1(1.2)	0(.0)	1(0.4)
전체					228(100.)

원장, 기본보육교사, 연장보육교사의 근무 기관 유형은 원장은 72명 중 민간어린이집 24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가정어린이집 21명(29.2%)으로 나타났다. 기본보육교사는 81명 중 민간어린이집 24명(29.6%)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가정어린이집 20명(24.7%)으로 나타났다. 연장보육교사 75명 응답 중 가정어린이집 22명(29.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20명(26.7%)으로 나타났다. 연장보육교사 응답자 중 연장보육교사의 근무형태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36명(48%), 보조교사 겸임 연장보육교사 27명(36%), 기본보육교사 겸임 연장보육교사 7명(9.3%), 야간연장 겸임 연장보육교사 5명(6.7%)으로 나타났다.

제2절 연구방법

1.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조사에 앞서 설문지 구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사용될 어린이집 현황과 인식, 요구조사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문항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원장 3명, 기본보육교사 3명, 연장보육교사 3명 총 9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후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나 모호한 문장 등을 수정·보완하였다. 수정된 설문지로 원장 1명, 기본보육교사 1명, 연장보육교사 1명 총 3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지 응답에 약 5-8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을 파악하였다.

2) 본조사

예비조사 이후 보완된 설문지로 2022년 5월 26일 ~ 2022년 9월 8일까지 연장 보육제도를 시행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기본보육교사, 연장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원장, 기본보육교사, 연장보육교사 설문지는 원장 및 교사 연수, 어린이집 연합회, 교직원 교육 모임 등을 통해 배부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설문을 받기 위해서 회수되는 유형을 파악하여 부족한 유형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설문지는 온라인 설문지와 종이 설문지로 배부하였으며, 어린이집 연장보육반 운영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한 개소당 한 명의 설문지만을 수집하였다. 원장 78부, 기본보육교사 99부, 연장보육교사 78부로 총 255부가 수집되었고 이중에서 원장 6부, 기본보육교사 18부, 연장보육교사 3부는 설문 기록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원장 72부, 기본보육교사 81부, 연장보육교사 75부, 총 228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현재 대전지역 어린이집 연장보육반 운영 현황 및 연장보육제도에 대한 원장, 기본보육반 교사, 연장보육반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임은선(2022)의 보육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연장보육제도에 대한 인식과 요구에 대한 설문지와 김은미(2021)의 원장과 연장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연장보육제도에 대한 운영실태와 인식을 조사한 설문지를 참고로 본 연구목적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수정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장 및 기본보육반 교사용 설문지와 연장보육반 교사용 설문지 두 가지로 제작하였는데, 연장보육반 교사용 설문지에서는 연장보육반 운영에 관련된 질문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예비검사 응답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차 검토에서 자격증 취득경로에 대한 응답 문항 1개를 삭제했으며, 기관 내 영아반 연장보육반과 유아반 연장보육반이 몇 반인지 조사하는 항목에서 ‘없음’을 추가하고, 질문 응답 문항 간 순서를 바꾸기도 하였다. 학계 전문가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연구자 간 2차 검토에서 최종으로 일반적인 배경, 현황, 인식, 요구 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중 연장보육교사용 설문지에서 연장보육교사의 일과운영 방식과 어려운 점을 알아보기 위해 7개의 문항을 추가하여 총 3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내용 구성은 <표3-5>와 같다.

<표 3-5> 설문지 내용 구성

구분		내 용	원장용 문항 수	기본보육 교사용 문항 수	연장보육 교사용 문항 수
일반적 배경		직급, 성별, 연령, 어린이집 유형, 근무경력, 자격증 취득경로, 최종학력	7	7	7
현황	연장보육 환경 및 운영실태	영아반, 유아반 연장보육 반구성	2	2	2
		연장 보육실 전용 여부 및 연장보육실 선정 이유	3	3	3
		기본반 교사와 연장반 교사 인수인계 방법	1	1	1
		연장보육반 영유아 비율 준수	2	2	2
인식	기대효과	연장보육제도의 효과	1	1	1
		연장보육제도의 수혜자	1	1	1
	운영체계	연장보육반 운영시간	1	1	1
		연장보육반 신청자격	1	1	1
		연장보육반 정원	4	4	4
	일과운영	연장보육교사의 근무형태	-	-	1
		보육활동 운영 계획 및 실행	-	-	4
		가장 많이 하는 놀이 및 활동	-	-	1
요구	연장보육제도에 대한 요구 및 어려움	가장 개선해야 할 점	1	1	1
		연장보육반 운영 시 필요한 지원	1	1	1
		연장보육교사로서 어려운 점	-	-	1
합 계			25	25	32

제3절 연구결과

1. 연장보육반 운영 현황 조사

<표 3-6> 기관 내 영아반·유아반 연장보육반 구성

(단위: 개(%))

구분	연장보육반	
	영아반	유아반
1) 한 반	127(55.7)	107(46.9)
2) 두 반	63(27.6)	31(13.6)
3) 세 반	11(4.8)	12(5.3)
4) 네 반	7(3.1)	2(0.9)
5) 다섯 반 이상	3(1.3)	5(2.2)
합계	211(92.5)	157(6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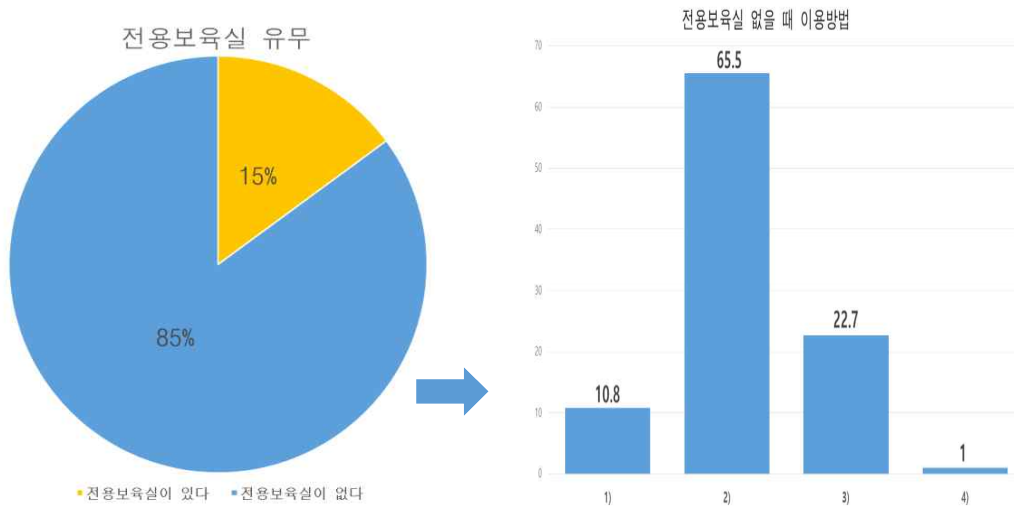
본 연구에 참여한 228개소 어린이집의 연장보육반 운영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어린이집에서 운영되고 있는 연장보육반은 총 368개로 이 중 영아반, 유아반 없음을 제외한 결과 211개 반(58.0%)은 영아반, 157개 반(42.0%)은 유아반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표 3-7> 연장보육반을 위한 전용보육실 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n
전용보육실 유무	1) 전용보육실이 있다	34(14.9)
	2) 전용보육실이 없다	194(85.1)
	전체	228(100.0)
없다면 어떤 보육실을 이용하는지	1) 여러 보육실을 돌아가면서 이용	21(10.8)
	2) 일정한 한 보육실을 이용	127(65.5)
	3) 유아는 유아반 교실, 영아는 영아반 교실을 번갈아 이용	44(22.7)
	4) 기타	2(1)
	전체	194(100.0)
보육실을 이용하는 큰 이유	1) 해당반 영유아가 가장 많이 남아있어서	27(13.9)
	2) 보육실의 크기가 적절해서	61(31.5)
	3) 귀가 지도, 화장실, 기타 업무 등을 하기에 용이한 위치에 있어서	84(43.3)
	4) 연장보육반 전용보육실을 관리하는 것보다 기본보육반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해서	21(10.8)
	5) 기타	1(0.5)
	전체	194(100.0)

[그림 3-1] 전용보육실 유무와 보육실 이용 방법



<표 3-7>과 같이 연장보육반을 위한 전용보육실 유무에 대한 응답으로 ‘전용보육실이 없다’로 194명(85.1%)으로 가장 많았고, 34명(14.9%)이 ‘전용보육실이 있다’로 응답하였다. ‘전용보육실이 없다’로 응답한 194명(85.1%)을 대상으로 어떤 보육실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제일 많은 127명(65.6%)이 ‘일정한 한 보육실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유아는 유아반 교실, 영아는 영아반 교실을 번갈아 이용’한다고 44명(22.7%)이 응답하였다. 응답한 보육실을 이용하는 큰 이유로는 84명(43.3%)이 ‘귀가 지도, 화장실, 기타 업무 등을 하기에 용이한 위치에 있어서’라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61명(31.5%)이 ‘보육실의 크기가 적절해서’라고 응답하였다.

<표 3-8> 인수인계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단위: 명(%))

구분	n
1) 구두로 전달	135(59.2)
2) 간단한 메모로 전달	27(11.8)
3) 연계일지를 통해 전달	20(8.8)
4) 상황에 따라 각자 알아서 전달	36(15.8)
5) 기타	10(4.4)
전체	228(100.0)

기본보육교사와 연장보육교사가 인수인계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표 3-8>과 같이 ‘구두로 전달’을 135명(59.2%)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상황에 따라 각자 알아서 전달’이 36명(15.8%)으로 나타났고 ‘간단한 메모로 전달’이 27명(11.8%)으로 나타났다. 기타로 제시된 10명(4.4) 의견 중 카카오톡 단체방을 활용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표 3-9>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단위: 명(%))

구분	n (%)
1) 잘 지켜지고 있다	198(86.8)
2)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30(13.2)
전체(%)	228(100.0)

<표 3-9>와 같이 연장반교사대 영유아의 비율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은 ‘잘 지켜지고 있다’로 198명(86.8%)으로 많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30명(13.2%)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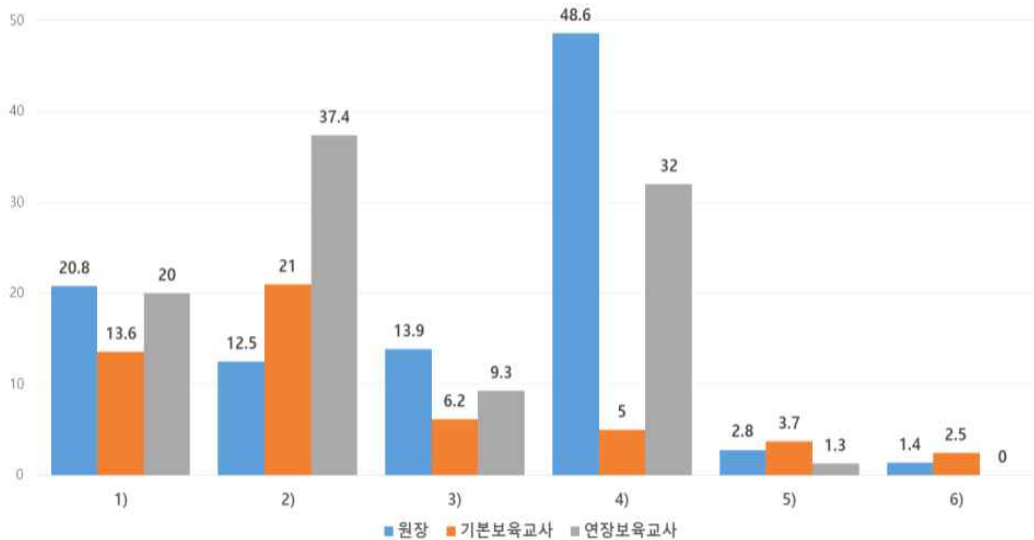
2. 연장보육제도에 대한 인식: 원장, 기본보육교사, 연장보육교사 중심으로

<표 3-10> 연장보육제도 적용 후 현장에서 가장 개선된 점

(단위: 명(%))

구분	집단구분			전체
	원장	기본보육교사	연장보육교사	
1)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로 영유아에게 정서적 안정감 부여	15(20.8)	11(13.6)	15(20)	41(17.9)
2) 장시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가 부담감 없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 이용	9(12.5)	17(21)	28(37.4)	54(23.7)
3) 어린이집은 장시간 보육 운영에 따른 부담 완화	10(13.9)	5(6.2)	7(9.3)	22(9.7)
4) 기본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35(48.6)	43(53)	24(32)	102(44.7)
5) 고정된 연장보육 영유아들이 이용하므로 계획된 프로그램 운영 가능	2(2.8)	3(3.7)	1(1.3)	6(2.7)
6) 기타	1(1.4)	2(2.5)	0(.0)	3(1.3)
전체	72(100.0)	81(100.0)	75(100.0)	228(100.0)

[그림 3-2] 연장보육제도 적용 후 현장에서 가장 개선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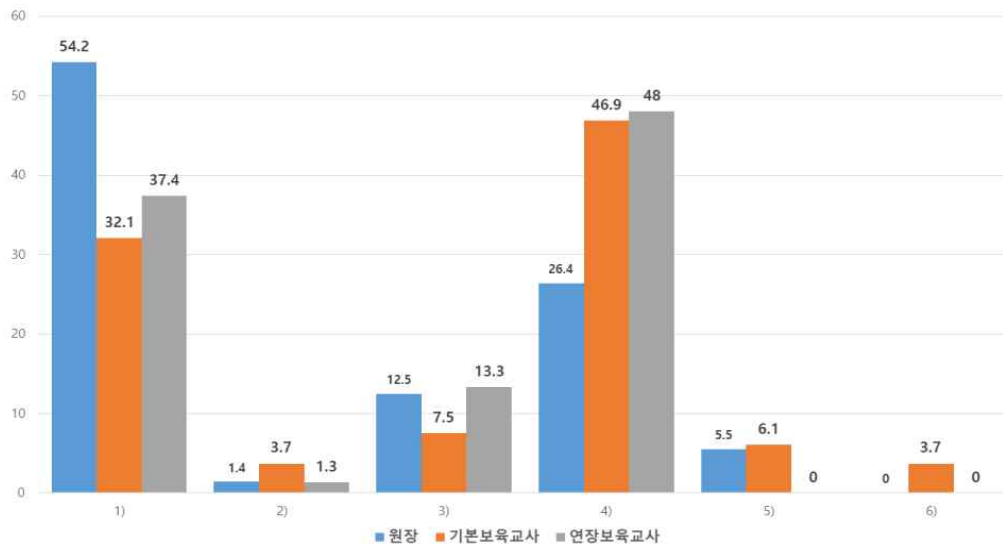
‘연장보육제도 적용 후 현장에서 가장 개선된 점’으로는 ‘기본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의 문항에 원장 35명(48.6%), 기본보육교사 43명(53.0%)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장시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가 부담감 없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 이용’ 문항에 연장보육교사 28명(37.4%)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원장은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로 영유아에게 정서적 안정감 부여’를 15명(20.8%)이 응답하였고, 기본보육교사는 ‘장시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가 부담감 없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 이용’에 17명(21.0%)이 응답하였다. 연장보육교사는 그다음으로 24명(32.0%)이 ‘기본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응답하였다. 집단별로 원장과 기본보육교사는 ‘기본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이 연장보육시행 후 가장 개선된 점으로 크게 인식하였고, 연장보육교사는 ‘장시간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가 부담감 없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 이용’을 크게 인식한 것을 알 수 있다. 세 집단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도 ‘기본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문항에 102명(44.7%)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러나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로 영유아에게 정서적 안정감 부여’에 대한 응답은 41명(17.9%)으로 연장보육서비스 대상인 영유아를 위한 인식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3-11> 연장보육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

(단위: 명(%))

구분	집단구분			전체
	원장	기본보육교사	연장보육교사	
1) 기본보육교사	39(54.2)	26(32.1)	28(37.4)	93(40.8)
2) 연장보육교사	1(1.4)	3(3.7)	1(1.3)	5(2.2)
3) 연장보육반 영유아	9(12.5)	6(7.5)	10(13.3)	25(10.9)
4) 연장보육반 부모	19(26.4)	38(46.9)	36(48)	93(40.8)
5)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관리자 (원장)	4(5.5)	5(6.1)	0(.0)	9(3.9)
6) 기타	0(.0)	3(3.7)	0(.0)	3(1.4)
전체	72(100.0)	81(100.0)	75(100.0)	228(100.0)

[그림 3-3] 연장보육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



‘연장보육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에 대한 질문에는 원장 39명(54.2%)은 ‘기본보육교사’로 가장 많이 인식하였고, 기본보육교사 38명(46.9%)와 연장보육교사 36명(48.0%)은 ‘연장보육반 부모’를 수혜자로 가장 많이 인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원장19명(26.4%)이 ‘연장보육반 부모’라고 인식하였고, 기본보육교사26명(32.1%)과 연장보육교사 28명(37.4%)은 ‘기본보육교사’라고 인식하였다. 집단별로 가장 큰 수혜자로 원장은 ‘기본보육교사’, 기본보육교사와 연장보육교사는 ‘연장보육반 부모’로 인식한 것으로 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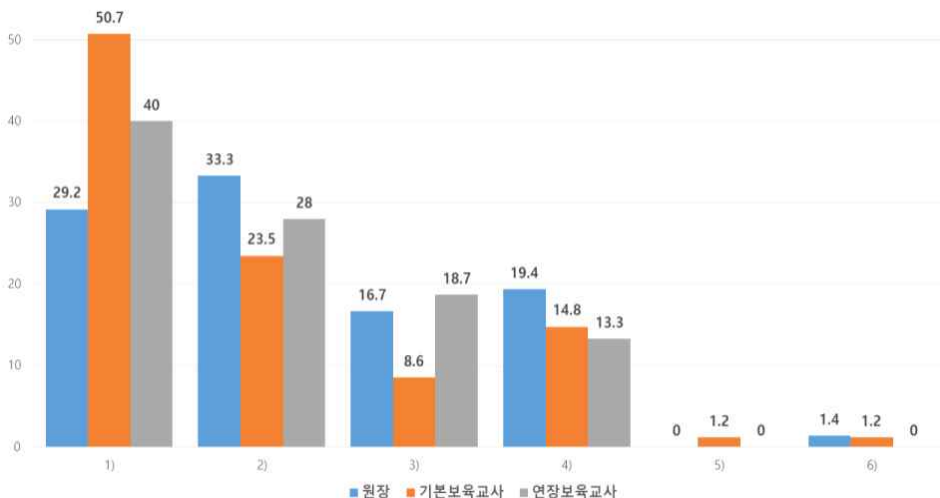
있다. 세 집단 응답결과를 전체적으로 종합한 결과 연장보육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로 ‘기본보육교사’와 ‘연장보육반 부모’를 각 93명(48.0%)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표 3-10>에서 연장보육제도의 개선점으로 연장보육서비스 대상인 영유아가 다소 낮게 인식되었던 것과 같이 <표 3-11>에서도 연장보육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로 교사와 부모로 인식하여 영유아의 인식이 낮게 인식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3-12> 연장보육 운영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

(단위: 명(%))

구분	집단구분			전체
	원장	기본보육교사	연장보육교사	
1) 연장보육교사의 명확한 업무 기준 마련	21(29.2)	41(50.7)	30(40)	92(40.4)
2) 기본보육교사와 연장보육교사의 원활한 인수인계 및 협력 방안 마련	24(33.3)	19(23.5)	21(28)	64(28.1)
3) 연장보육반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감을 위한 환경 조성	12(16.7)	7(8.6)	14(18.7)	33(14.5)
4) 연장보육반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자료 개발 및 보급	14(19.4)	12(14.8)	10(13.3)	36(15.8)
5) 연장보육반 부모의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수업 확대 실시	0(.0)	1(1.2)	0(.0)	1(0.4)
6) 기타	1(1.4)	1(1.2)	0(.0)	2(0.8)
전체	72(100.0)	81(100.0)	75(100.0)	228(100.0)

[그림 3-4] 연장보육 운영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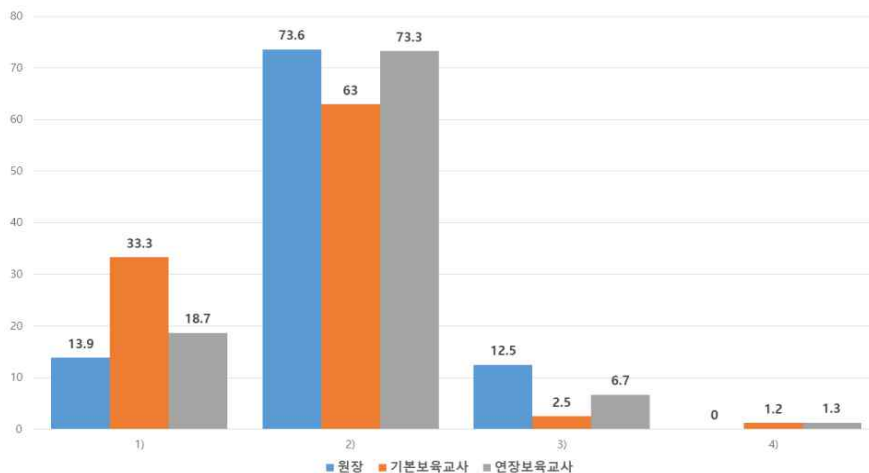
연장보육 운영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해야할 점은 <표 3-8>과 같다. 기본보육교사 41명(50.7%), 연장보육교사 30명(40.0%)는 ‘연장보육교사의 명확한 업무 기준 마련’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원장 24명(33.3%)은 ‘기본보육교사와 연장보육교사의 원활한 인수인계 및 협력 방안 마련’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근소한 차이로 원장 21명(29.2%)은 ‘연장보육교사의 명확한 업무 기준 마련’에 그다음으로 응답하였으며, 기본보육교사 19명(23.5%)과 연장보육교사 21명(28.0%)은 ‘기본보육교사와 연장보육교사의 원활한 인수인계 및 협력 방안 마련’에 응답하였다. 세 집단의 응답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연장보육교사의 명확한 업무 기준 마련’에 228명 중 92명(40.4%)이 응답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서로 긴밀하게 상호하며 업무를 하고 있는 두 집단인 기본보육교사와 연장보육교사들이 가장 많이 개선해야할 점으로 인식하였다.

<표 3-13> 연장보육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어떠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가?

(단위: 명(%))

구분	집단구분			전체
	원장	기본보육교사	연장보육교사	
1) 독립된 공간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10(13.9)	27(33.3)	14(18.7)	51(22.4)
2) 연장보육교사 및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53(73.6)	51(63)	55(73.3)	159(69.7)
3) 급·간식비 및 차량 유지비 등의 운영비 지원	9(12.5)	2(2.5)	5(6.7)	16(7)
4) 기타	0(0)	1(1.2)	1(1.3)	2(0.9)
전체	72(100.0)	81(100.0)	75(100.0)	228(100.0)

[그림 3-5] 연장보육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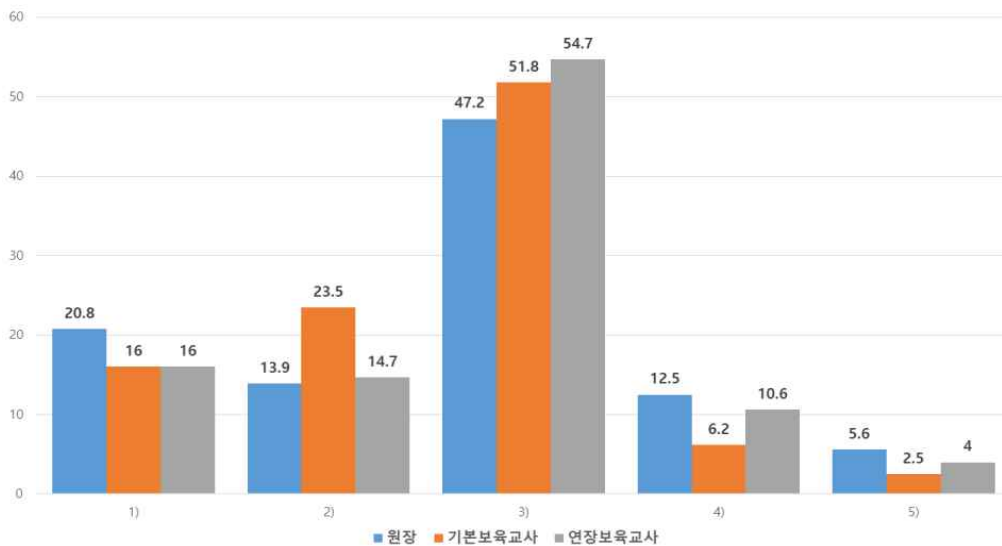
‘연장보육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어떠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은 ‘연장보육교사 및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에 대한 문항에 원장 53명(73.6%), 기본보육교사 51명(63%), 연장보육교사 55명(73.3%)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독립된 공간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으로 원장 10명(13.9%), 기본보육교사 27명(33.3%), 연장보육교사 14명(18.7%)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전체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도 ‘연장보육교사 및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에 대한 응답이 228명 중 159명(69.7%)으로 가장 많았다.

<표 3-14> 연장보육반의 합리적인 운영시간

(단위: 명(%))

구분	집단구분			전체
	원장	기본보육교사	연장보육교사	
1) 15:00-19:30이 적당	15(20.8)	13(16)	12(16)	40(17.5)
2) 15:30-19:30이 적당	10(13.9)	19(23.5)	11(14.7)	40(17.5)
3) 16:00-19:30이 적당	34(47.2)	42(51.8)	41(54.7)	117(51.3)
4) 6:30-19:30이 적당	9(12.5)	5(6.2)	8(10.6)	22(9.7)
5) 기타	4(5.6)	2(2.5)	3(4.0)	9(4.0)
전체	72(100.0)	81(100.0)	75(100.0)	228(100.0)

[그림 3-6] 연장보육반의 합리적인 운영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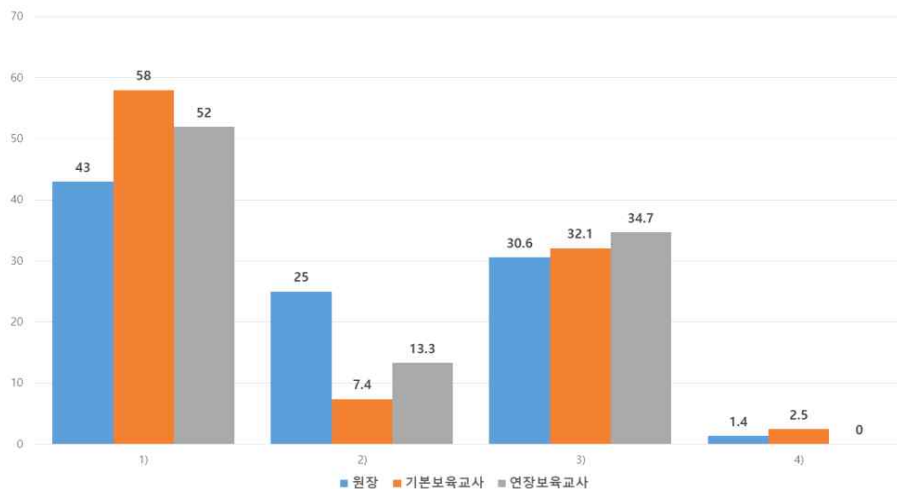
‘연장보육반의 합리적인 운영시간’에 대한 응답은 ‘16:00-19:30이 적당’에 대한 문항에 원장 34명(47.2%), 기본보육교사 42명(51.8%), 연장보육교사 41명(54.7%)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15:00-19:30이 적당’에 그 다음으로 원장 15명(20.8%), 연장보육교사 12명(16%)으로 응답하였다. ‘15:30-19:30이 적당’에 기본보육교사 19명(23.5%)이 그다음으로 응답하였다. 전체 228명 중 117명(51.3%)이 현행유지 시간 ‘16:00-19:30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5:00-19:30이 적당’과 ‘15:30-19:30이 적당’은 각각 40명(17.5%)으로 응답한 것을 알 수 있어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15> 연장보육반의 신청자격 기준

(단위: 명(%))

구분	집단구분			전체
	원장	기본보육교사	연장보육교사	
1) 영아는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의 신청자격 기준이 있고, 유아는 신청자격 기준이 별도로 없는 것	31(43)	47(58)	39(52)	117(51.3)
2) 영아와 유아 모두 신청자격 기준이 별도로 없는 것	18(25)	6(7.4)	10(13.3)	34(14.9)
3) 영아와 유아 모두 신청자격 기준이 있는 것	22(30.6)	26(32.1)	26(34.7)	74(32.5)
4) 기타	1(1.4)	2(2.5)	0(.0)	3(1.3)
전체(%)	72(100.0)	81(100.0)	75(100.0)	228(100.0)

[그림 3-7] 연장보육반의 신청자격 기준



기본보육시간 외 연장보육반 이용을 위한 신청 자격 기준에 대한 인식 응답은 ‘영아는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의 신청자격 기준이 있고, 유아는 신청자격 기준이 별도로 없는 것’에 대한 문항에 원장 31명(43.0%), 기본보육교사 47명(58.0%), 연장보육교사 39명(52.0%)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영아와 유아 모두 신청자격 기준이 있는 것’에 원장 22명(30.6%), 기본보육교사 26명(32.1%), 연장보육교사 26명(34.7%)이 응답하였다.

<표 3-16> 연장보육반의 영아반(만0-2세)의 적정 정원

(단위: 명(%))

구분	집단구분			전체
	원장	기본보육교사	연장보육교사	
1) 3명 이내	23(31.9)	18(22.2)	17(22.7)	58(25.4)
2) 4명 이내	8(11.1)	25(30.8)	21(28)	54(23.7)
3) 5명 이내	40(55.6)	33(40.8)	34(45.3)	107(47)
4) 6명 이내	0(.0)	2(2.5)	0(.0)	2(0.9)
5) 7명 이내	1(1.4)	3(3.7)	3(4)	7(3)
6) 기타	0(.0)	0(.0)	0(.0)	0(.0)
전체(%)	72(100.0)	81(100.0)	75(100.0)	228(100.0)

‘연장보육반의 영아반(만0-2세)의 적정 정원’에 대한 응답은 현행기준인 ‘5명 이내’ 문항에 원장 40명(55.6%), 기본보육교사 33명(40.8%), 연장보육교사 34명(45.3%)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4명 이내’ 문항에 기본보육교사 25명(30.8%), 연장보육교사 21명(28%) 그다음으로 응답하였고, ‘3명 이내’ 문항에 원장 23명(31.9%)이 그다음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전체 228명 중 응답 결과를 볼 때 ‘5명 이내’ 107명(47.0%)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응답한 문항은 ‘3명 이내’ 58명(25.4%), ‘4명 이내’ 54명(23.7%)으로 근소한 차이로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17> 연장보육반의 유아반(만3-5세)의 적정 정원

(단위: 명(%))

구분	집단구분			전체
	원장	기본보육교사	연장보육교사	
1) 12명 이내	38(52.8)	33(40.8)	42(56.0)	113(49.6)
2) 13명 이내	1(1.4)	11(13.6)	9(12.0)	21(9.2)
3) 14명 이내	0(.0)	5(6.2)	2(2.7)	7(3.0)
4) 15명 이내	29(40.3)	27(33.3)	19(25.3)	75(32.9)
5) 16명 이내	1(1.4)	0(.0)	0(.0)	1(0.4)
6) 17-20명	1(1.4)	1(1.2)	0(.0)	2(0.9)
7) 기타	2(2.7)	4(4.9)	3(4.0)	9(4.0)
전체	72(100.0)	81(100.0)	75(100.0)	228(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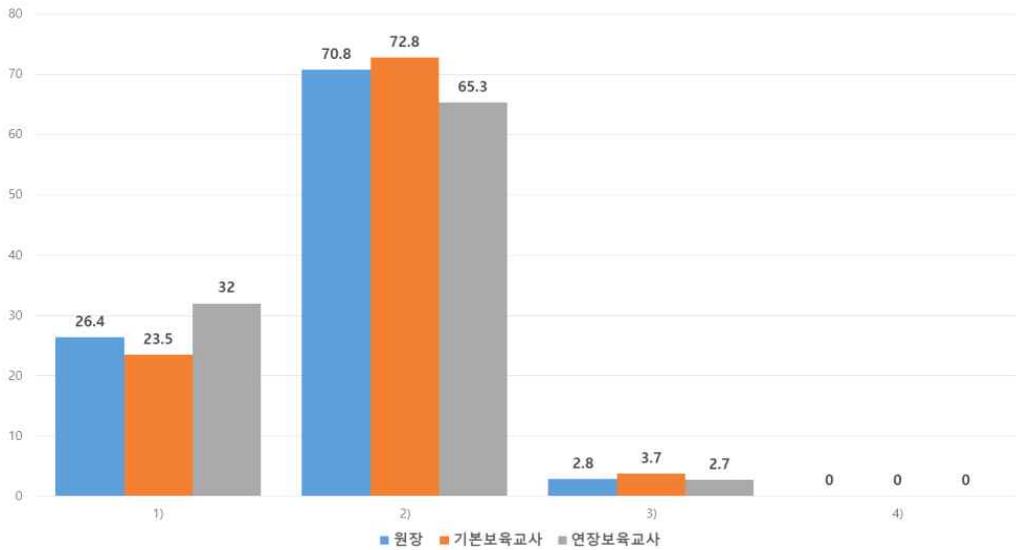
‘연장보육반의 유아반(만3-5세)의 적정 정원’에 대한 응답은 현행기준보다 적은 ‘12명 이내’ 문항에 원장 38명(52.8%), 기본보육교사 33명(40.8%), 연장보육교사 42명(56%)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현행기준인 ‘15명 이내’에 원장 29명(40.3%), 기본보육교사 27명(33.3%), 연장보육교사 19명(25.3%)이 그다음으로 응답하였다.

<표 3-18> 연장보육반의 영아반(만0-2세)의 탄력보육 정원

(단위: 명(%))

구분	집단구분			전체
	원장	기본보육교사	연장보육교사	
1) 1명 이내	19(26.4)	19(23.5)	24(32)	62(27.2)
2) 2명 이내	51(70.8)	59(72.8)	49(65.3)	159(69.7)
3) 3명 이내	2(2.8)	3(3.7)	2(2.7)	7(3.1)
4) 기타	0(0)	0(0)	0(0)	0(0)
전체	72(100.0)	81(100.0)	75(100.0)	228(100.0)

[그림 3-8] 연장보육반의 영아반(만0-2세)의 탄력보육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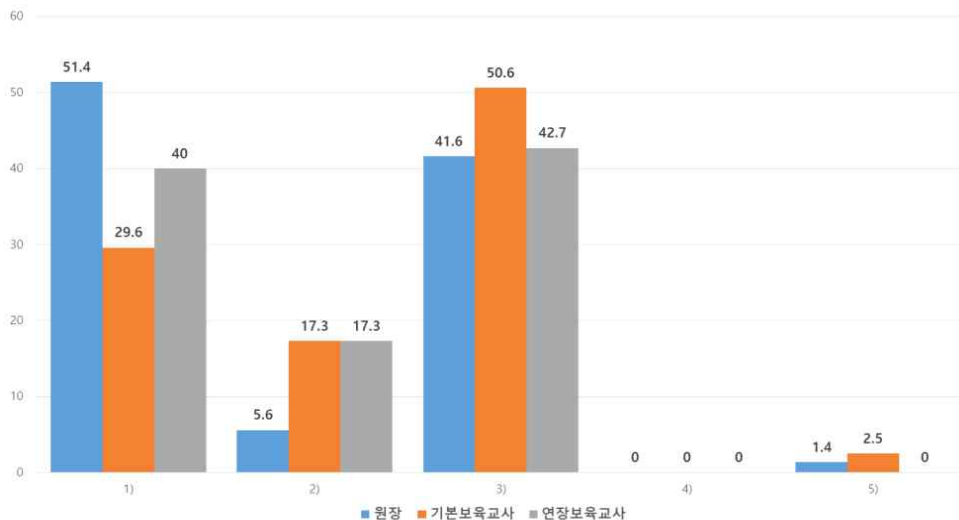
‘연장보육반의 영아반(만0-2세)의 탄력보육 정원’에 대한 응답은 현행기준인 ‘2명 이내’ 문항에 원장 51명(70.8%), 기본보육교사 59명(72.8%), 연장보육교사 49명(65.3%)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1명 이내’ 문항에 원장 19명(26.4%), 기본보육교사 19명(23.5%), 연장보육교사 24명(32.0%)이 응답하였다. ‘연장보육반의 영아반(만0-2세)의 보육정원과 탄력보육 정원 모두 현행기준에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19> 연장보육반의 유아반(만3-5세)의 탄력보육 정원

(단위: 명(%))

구분	집단구분			전체
	원장	기본보육교사	연장보육교사	
1) 3명 이내	37(51.4)	24(29.6)	30(40)	91(39.9)
2) 4명 이내	4(5.6)	14(17.3)	13(17.3)	31(13.6)
3) 5명 이내	30(41.6)	41(50.6)	32(42.7)	103(45.2)
4) 6명 이내	0(.0)	0(.0)	0(.0)	0(.0)
5) 기타	1(1.4)	2(2.5)	0(.0)	3(1.3)
전체	72(100.0)	81(100.0)	75(100.0)	228(100.0)

[그림 3-9] 연장보육반의 유아반(만3-5세)의 탄력보육 정원



‘연장보육반의 유아반(만3-5세)의 탄력보육 정원’에 대한 응답은 현행기준 ‘5명 이내’로 기본보육교사 41명(50.6%), 연장보육교사 32명(42.7%)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원장 37명(51.4%)으로 ‘3명 이내’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근소한 차이로 원장 30명(41.6%)이 ‘5명 이내’를 그다음으로 응답하였다. 전체 228명에서 103명(45.2%)이 ‘5명 이내’를 응답하였고, 91명(39.9%)이 ‘3명 이내’로 나타났다.

3. 연장보육시간의 일과운영 실태: 연장보육교사 중심으로

<표 3-20> 연장보육반 활동 계획

(단위: 명(%))	
구분	연장보육교사
1) 계획한다.	63(84.0)
2) 계획하지 않는다.	12(16.0)
전체	75(100.0)

<표 3-20>는 연장보육반을 운영할 때 활동을 계획하는지에 대한 응답이다. ‘계획한다’는 63명(84.0%), ‘계획하지 않는다’는 12명(16.0%)으로 나타났다.

<표 3-21> 연장보육반 활동 계획시 참고자료

(단위: 명(%))

구분	연장보육교사
1)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자료실에 있는 시간연장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작성	7(11.1)
2) 영유아관련 잡지 이용	24(38.1)
3) 기본보육반의 활동을 연계하여 작성	27(42.9)
4) 전공도서나 자료 참고	3(4.7)
5) 기타	2(3.2)
전체	63(100.0)

<표 3-20>에서 ‘계획한다’ 라고 응답한 63명(84.0%) 중, 계획 시 참고하는 자료에 대한 질문에 ‘기본보육반의 활동을 연계하여 작성’ 한다고 27명(42.9%)이 응답하였고, 근소한 차이로 ‘영유아 관련 잡지 이용’ 을 24명(38.1%)이 응답하였다.

<표 3-22> 계획한 연장보육반 보육활동의 실행정도

(단위: 명(%))

구분	연장보육교사
1) 계획한 대로 실행	0(.0)
2) 계획한 대로 실행하지만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진행	48(76.2)
3) 상황이 되면 계획한 활동을 실행해 보려고 시도	13(20.6)
4) 계획하지만 실행하지 않는다	2(3.2)
전체(%)	63(100.0)

<표 3-22>에서 ‘계획한다’ 라고 응답한 63명(84.0%)이 ‘계획한 연장보육반 보육활동의 실행정도’에 대한 응답으로는 48명(76.2%), ‘계획한 대로 실행하지만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진행’ 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13명(20.6%)이 ‘상황이 되면 계획한 활동을 실행해 보려고 시도’로 나타났다. ‘계획한다’ 라고 응답한 63명 중 한 사람도 ‘계획한 대로 실행’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없는 것도 알 수 있는데 교사들이 계획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계획은 하지만 계획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된다면’에 집중하여 보육활동을 실행함을 알 수 있다.

<표 3-23> 연장보육반 보육 활동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연장보육교사
1) 기본보육반의 놀이 및 활동을 연장하여 진행해서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아서	2(16.7)
2) 자연스럽게 휴식하거나 놀이하는 시간으로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아서	2(16.7)
3) 수시로 이루어지는 귀가지도로 인해 보육계획안을 반영하여 실행할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8(66.6)
4) 연장보육을 하다 보면 준비 시간이 부족하여 계획이 어려우므로	0(.0)
5) 전문성 부족으로 수업계획이 어려우므로	0(.0)
전체	12(100.0)

<표 3-20>에서 ‘계획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한 12명(16%) 중 8명(66.6%)이 ‘연장보육반 보육활동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 로 <표 3-23>과 같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귀가 지도로 인해 보육계획안을 반영하여 실행할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3-10>에서 연장보육제도의 개선점에 대한 문항 중 ‘고정된 연장보육 영유아들이 이용하므로 계획된 프로그램 운영 가능’ 에 대한 연장보육교사의 응답이 1명(1.3%)인 것과 일맥상통한 응답으로 연장보육반을 운영할 때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시간이 영유아마다 다르기에 연장보육 교사들이 보육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24> 연장보육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놀이 및 활동

(단위: 명(%))

구분	연장보육교사
1) 기본보육반의 보육 프로그램의 반복	8(10.7)
2) 자유 놀이	48(64.0)
3) 예술 경험(미술, 노래부르기 등)	10(13.3)
4) 책 읽기나 끼적이기 활동	6(8.0)
5) 신체 활동	3(4.0)
6) 기타	0(.0)
전체	75(100.0)

연장보육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놀이 및 활동으로는 <표 3-24>와 같이 ‘자유놀이’를 한다고 응답이 48명(6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10명(13.3%)이 ‘예술경험(미술, 노래부르기 등)’으로 응답하였고, 근소한 차이로 8명(10.7%)이 ‘기본보육반의 보육 프로그램의 반복’으로 응답하였다.

<표 3-25> 연장보육반 영유아들이 하원 후 남은 시간 운영법

(단위: 명(%))

구분	연장보육교사
1) 일지작성 및 다음날 놀이 및 활동준비를 한다.	15(20)
2) 청소 및 환경을 정리한다,	56(74.7)
3) 휴게 시간을 가진다.	3(4)
4) 기타	1(1.3)
전체	75(100.0)

연장보육반 영유아들이 하원 후 남은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다음 <표3-25>와 같다. 56명(74.7%)이 ‘청소 및 환경을 정리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15명(20%)은 ‘일지 작성 및 다음날 놀이 및 활동 준비를 한다’고 하였다.

<표 3-26> 연장보육교사로서 가장 어려운 점

(단위: 명(%))

구분	연장보육교사
1) 연장보육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내에서 여러 업무를 해야 할 때	37(49.3)
2) 기본보육교사와 소통의 어려움, 갈등	12(16)
3) 부모와의 소통이 어려움	15(20)
4) 전용 연장보육실이 없어 발생하는 어려움	11(14.7)
전체(%)	75(100.0)

<표 3-26>은 ‘연장보육교사로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37명(49.3%)이 ‘연장보육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내에서 여러 업무를 해야 할 때’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15명(20.0%)가 ‘부모와의 소통이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근소한 차이로 12명(16.0%)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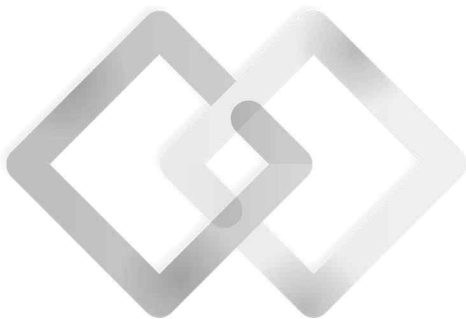
본보육교사와 소통의 어려움, 갈등' 으로 응답하였다. <표 3-12>에서 연장보육제도에서 개선해야할 점 중 '연장보육교사의 명확한 업무 기준 마련' 에 대한 응답에 연장보육교사 75명 중 30명(40.0%)이 응답하였고, 집단 전체 228명 중 92명(40.4%)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것은 연장보육교사로서 가장 어려운 점을 느끼는 '연장보육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내에서 여러 업무를 해야 할 때' 문항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결과와 함께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

**어린이집 연장보육반
운영 현황 조사 및 질적 분석**



**제4장 연장보육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개별·집단 인터뷰**



제4장 연장보육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개별·집단 인터뷰

제1절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총 27명으로 대전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원장 5명, 기본보육반 교사 5명, 연장반 전담교사 5명, 연장반 겸임교사 5명 그리고 어린이집에 보육을 위탁한 부모 7명 총 27명이다.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절차에 대해 소개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하였고, 보육교직원의 일반적 배경은 <표 4-1>과 같다.

<표 4-1> 연구참여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일반적 배경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유형	연령(만)	총 경력	최종학력
원장	A	가정	49	23년	석사
	B	민간	62	29년	석사
	C	법인	34	12년 4개월	석사
	D	직장	49	10년 9개월	박사
	E	국공립	45	23년 11개월	4년제
기본보육반 교사	A	가정	35	1년 6개월	4년제
	B	민간	48	13년 2개월	4년제
	C	법인	36	14년6개월	3년제
	D	직장	35	10년	3년제
	E	국공립	32	9년 4개월	4년제
연장반 전담교사	A	가정	36	2년 3개월	2년제
	B	민간	42	3년	2년제
	C	법인	46	3년 5개월	4년제
	D	직장	39	10년 개월	4년제
	E	국공립	49	16년	2년제
연장반 겸임교사	A	가정	28	5년	2년제
	B	민간	46	7년	2년제
	C	법인	61	8년	2년제
	D	직장	31	7년	3년제
	E	국공립	53	8년 4개월	4년제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의 연령은 만 31세~ 45세로 자녀의 연령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다양하며, 4명은 일을 하고 있는 취업모이다. <표 4-2>는 부모의 일반적 배경이다.

<표 4-2> 연구참여자(부모) 일반적 배경

부모 (모)	자녀의 어린이집 유형	연령(만)	자녀 연령
A	가정	45	만2세
B	민간	32	만0세, 만4세
C	법인	43	만0세
D	직장	38	만1세
E	직장	40	만3세
G	국공립	38	만4세
H	국공립	31	만5세

제2절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연장보육제도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개인 면담을 진행하였다. FGI는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에 대한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 19로 인해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들이 대면으로 진행하지 않고 실시간 화상회의(zoom)으로 기본보육반 교사, 연장반 전담교사, 연장반 겸임교사 대상으로 각각 진행되었다. 또한, 원장과 부모 대상으로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깊이 있게 탐색하고자 개인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은 2022년 6월 17일부터 2022년 9월 20일까지 진행되었다.

<표 4-3> 면담 형태 및 면담 기간

면담 형태	연구 참여자	면담 일시
FGI	기본보육반 교사	2022. 7. 21.
	연장반 전담교사	2022. 7. 16.
	연장반 겸임교사	2022. 7. 23.
개인 면담	원장	2022. 6. 17. ~ 2022. 8. 25.
	부모	2022. 9. 13. ~ 2022. 9. 20.

면담을 진행하기 전에 원장 2명을 대상으로 예비 면담을 각각 1시간 30분 정도 진행하여, 면담 내용이 연구목적에 적절한지 추가할 질문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면담 전,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질문 목록을 보내어 연구참여자가 충분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였고, 개인 면담은 대략 40분 ~1시간 20분, FGI는 1시간 20~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시작하여 자유롭게 면담 내용을 확장해 나가는 비구조화된 면담이 진행되었다. 면담 시,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노력하였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재질문하여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였다. 면담은 각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화하거나 녹음하였고 면담이 끝난 후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면담이 이루어졌다.

<표 4-4> 연장보육제도에 대한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 목록 예시 (연장보육교사용)

질문 범주	질문 내용
연장보육반 운영 현황	• 현재 ○○어린이집 연장보육반은 어떠한 형태(연장보육교사 근무 형태/연장보육 환경 등)로 운영되고 있나요? - 그러한 운영 형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 연장보육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연장보육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기록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연장보육제도에 대한 인식	• 기본보육반과 연장보육반으로 보육과정 및 시간을 구분하는 연장보육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연장보육제도 이전과 비교하여)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연장보육반의 운영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연장보육반의 정원은 몇 명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영아반·유아반 정원 / 탄력보육 정원 • 연장보육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선생님은 연장보육반 교사로서 전담 혹은 겸임 중 어떠한 형태로 근무하고 싶으신가요? - 왜 그러한 형태로 근무하고 싶으신가요? • 영유를 위한 연장보육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연장보육 교사가 전담 혹은 겸임 형태 중 어떠한 형태로 근무하는 것이 가장 유익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연장보육반 운영 경험 및 바람(요구)	• 연장보육반 교사로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연장보육반 운영과 관련된 바람이나 요구가 있으신가요? • 연장보육반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연장보육제도와 관련하여 관할 정부 기관에 정책적 제안 또는 요구하고 싶은 점이 있으신가요? • 연장보육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모, 원장님, 기본보육반 교사 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 면담을 마친 후 연장보육 제도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기존의 인식에 변화가 생긴 부분이 있으신가요?

2. 자료수집 및 분석

줌(Zoom)으로 진행된 FGI 면담 기록(영상 녹화, 전사기록), 개인 면담 전사기록, 연구자들이 면담 시 작성한 저널, 연장보육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 정책관련 자료, 보도자료 등 다양한 연구자료를 분석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연장보육서비스에 대한 보육교직원과 부모의 경험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반복적 비교 분석법(유기웅 외, 2018)을 적용하여 1단계에서는 질문 내용을 유목화하여 반복적으로 읽고 검토하면서 의미 있게 나타나는 핵심 문장, 용어, 어휘 등을 중심으로 그 단락을 메모하여 분류하는 개방코딩을 하였다. 2단계에서는 비슷한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모아서 어떤 범주로 재배열해야 할지를 결정해 나갔고 3단계에서는 범주의 주제를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구상한 후, 범주화가 잘 되었는지 원자료와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유아교육과 교수 2인에게 자료 분석과 해석에 대해 검토 받아 연구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 목록은 <표 4-5>와 같다.

<표 4-5> 수집된 자료 목록

자료 목록	내용	분량
FGI (기본보육교사, 연장전담교사, 연장겸임교사)	줌으로 진행된 온라인 실시간 면담 녹화 영상	250분
	녹화 영상 전사본	78장
개인 면담 (원장, 부모)	녹음자료	552분
	녹음자료 전사본	142장
연구자 저널	연구자들이 면담 진행 시 또는 이후에 생각이나 느낌을 작성함	33장

제3절 연구결과

1. 연장보육반에 대한 경험 및 인식

1) 연장보육반은 누가 보육할 것인가? 누가 해도 장단점이 있다!

연장보육반은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가 원칙이나 기본보육시간 보조교사가 연장보육반 교사로 겸임 근무를 하거나, 야간연장(시간연장) 교사가 근무시간 내에 연장보육반을 전담할 수 있다. 연장보육반이 많아서 연장보육반 교사가 부족할 경우 기본보육반 교사가 연장보육반까지 보육을 하기도 한다. 연장보육반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보육교직원과 연장보육반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1) 연장보육 겸임교사들의 이야기

보조교사로 근무하면서 연장보육반 교사 겸임을 하는 교사들은 오전부터 보조교사로 근무를 하면 영유아와 소통이 원활하고 오전에 있었던 일들을 파악할 수 있어 좋은 점도 있으나 장시간 근무로, 연장보육반 아동이 많아서 체력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저는 이제 오전부터 일을 하니깐 오전에 치우치는 일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소통이 이어지니까 연장반까지 이어서 하면 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에 비해 연장전담반은 좀 덜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모르겠어요. 서로 나름대로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오후에 연장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기 담임 선생님하고 친해졌다가 연장반을 갔을 때 조금 쉽게 받아드리지 않는 경우가 좀 있고, 저처럼 오전부터 할 때는 체력적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있죠.

(연장보육 겸임 C교사, 온라인 실시간 그룹면담, 2022. 7. 23.)

저는 이제 원래 연장보육제도가 있기 전에는 야간연장 담임교사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연장반이 생기면서 제가 겸임으로 하게 됐는데 연장반도 사실은 괜찮아요. 근데 아이들을 너무 많이 혼자 보게 되니까 저는 체력적으로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겸임을 하게 되면서 체력을 다 소모하다 보니까 야간연장까지 갈 때 더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저는 겸임보다는 전담만 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연장보육 겸임 E교사, 온라인 실시간 그룹면담, 2022. 7. 23.)

직장어린이집에서 영아반 보조교사와 그 반의 연장보육을 하고 있는 D교사는 기본보육반에서 했던 놀이나 활동을 오후에도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고 영아들의 컨디션 등을 알게 되는 장점이 있어서 겸임으로 계속 일하고 싶다고 하였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아동 대부분이 연장보육반을 이용하고 있어 반마다 연장보육교사가 배치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한 반에 머물면서 보조교사와 연장보육 겸임을 하는 경우 겸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지 않고 오전에 여러 반의 보조교사 역할을 하면서 연장보육까지 여러 반의 아동들을 보육하게 되면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장보육 전담교사들의 이야기

연장보육 전담교사들은 기본보육반 교사들과의 소통과 영유아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있어서 보조교사 겸임으로 근무할 때 장점이 있으나, 보조교사가 보육이 아닌 청소나 설거지 등 어린이집 업무를 하게 되면 앞에서 제시한 장점들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연장보육전담 교사로 아동만 보육하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신체적 피로감이 없으니 연장보육반 보육에 전념할 수 있어서 연장전담 형태가 더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가 같은 어린이집에서 2년 전에는 겸임을 했고 지금은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담을 하면 어쨌거나 오전에 상황을 전달을 받기는 하지만 그 아이의 상황이나 놀이나 이런 걸 제가 직접 목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뭔가 질문을 하셔도 그냥 구두로 전달 받은 것을 단순하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고, 또 이제 담임 선생님도 가끔 이제 인간인지라 전달사항이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약간 혼선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전부터 겸임을 했을 때는 어쨌거나 제게 오전부터 책임지고 계속 서포트를 하면서 함께 관찰을 하니까 부모와의 그런 소통이라든지 아이의 발달 상황이 오전 오후로 정확하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그런 소통이나 아이가 오전에 어떻게 행동했길래 좀 오후에 이런 반응이 이어지는지 예를 들어 설사도 오전에 몇 번 했다 치면 제가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관찰했을 때랑 그냥 듣기만 하고 이러면 좀 헛갈릴 때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저는 겸임이 더 업무상 효율적으로 잘 흘러갔던 것 같아요.

(연장보육전담 E교사, 온라인 실시간 그룹면담, 2022. 7. 16.)

저는 이제 오전 보조교사를 해봤었는데, 그때랑 비교했을 때 보면은 오후 연장반 선생님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오전은 솔직히 보조교사라고는 해도 특별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기보다 어린이집 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조교사를 설거지나 청소 이런 걸 좀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좀 케어하고 일을 하게 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연장보육전담 B교사, 온라인 실시간 그룹면담, 2022. 7. 16.)

이처럼, 어린이집에 따라 보조교사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다르으로써 보조교사 겸임 연장보육교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기본보육반 교사들의 이야기

기본보육반 교사의 입장에서는 연장보육 전담보다는 겸임으로 근무하는 교사들과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장보육 겸임교사와 함께 일할 때 더 장점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연장교사가 오전 보조교사로 겸임을 하면서 해야 좀 소통이 훨씬 잘 되고 겸임이 아니면 말을 못 전할 때도 있잖아요. 저희도 잊어버려서 전달이 잘 안 될 때 이제 선생님들도 하루에 같이 있을 때는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오전 보조를 막 계속 연령을 돌아다니면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고정된 반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기본보육반 C교사, 온라인 실시간 그룹면담, 2022. 7. 21.)

연장 선생님도 또 하나의 담임 선생님이라고 해서 4시간만이 아니고 이제 오전에는 두 담임인 거죠. 오전에는 담임 선생님이랑 같이 아이들도 돌보면서 지금 겸임하는 것처럼 보조 선생님이 연장 선생님을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소통이 편한 것 같긴 해요.

(기본보육반 E교사, 온라인 실시간 그룹면담, 2022. 7. 21.)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이 의견에 동의하나 보조교사 겸 연장보육을 하고 있는 교사가 1명이라서 힘들어한다고 하였다. 야간연장보육을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E교사도 야간연장보육교사가 연장반 보육까지 겸임으로 일하면서 시간 외 근무를 해야할 만큼 업무시간이 연장되어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저희 원에서 영아 연장반은 야간연장 겸임하시는 선생님이 봐주시고, 유아 연장반을

교사들이 당직으로 번갈아 가면서 보육하고 있어요. 이제 당직을 하게 되면 다음 날 수업준비나 이제 청소 같은 부분 이런 것을 조금 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겨서 연장보육을 하고 나서 근무시간 외에 이제 준비를 해야 하니까 업무 시간이 더 연장되는 고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본보육반 E교사, 온라인 실시간 그룹면담, 2022. 7. 21.)

이처럼, 기본보육반 교사들은 연장보육반 교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겸임 형태로 근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으나, 겸임으로 일하는 연장보육반 교사들이 자신들과 같이 8시간 근무하면서 체력적으로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4) 원장들의 이야기

원장의 입장에서는 연장보육교사가 오전 보조교사 겸임으로 근무하는 것이 원 운영과 아동, 특히 영아의 정서적 측면에 있어서 장점이 있으나, 만약 보조교사의 주 업무가 보육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연장보육반 교사 겸임을 했을 때의 장점이 없다고 하였다. 비슷한 맥락으로 유아들이 보조교사의 요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연장보육반 교사들이 기본보육반 교사들에 비해 교사로서의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어 아동 입장에서는 전문성 있는 기본보육반 교사가 종일 보육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특히 영아들은 교사가 바뀌는 것보다 한 교사가 보육하는 것이 영아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원장 입장에서는 겸임을 하면 좋기는 한데,,,종일 있는 거잖아요. 안정적으로 이제 반이 운영되기 때문에 좋긴 한데, 이 겸임을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보육 교사하고 근무시간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급여에선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교사 입장에선 참 안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또 아무래도 보조교사는 보육이 주가 아니다 보니까 청소나 그다음에 맨날 뭐 씻기는 거나...물론 또 이제 그 어떤 수업 준비를 하고 이런 것에서 좀 부담을 좀 덜 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반면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자리가 없어서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경력이 단절돼서 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한데... 영유아 입장에서는 저는 직장 어린이집이어서인지 자격이 되는 교사들이 나를 하루종일 보살펴주는 게 아이들 입장에선 더 좋진 않을까요? 그래서 퀄리티가 있는 교사가 온종일 케어해 주면, 학력도 좋고 인성

도 되고 하는 사람이 종일 나를 케어해주는 게 오히려 그렇게 겸임이라는 어떤 분이 뭐 제가 더 뭐 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뽀다 보면은 또 조금 이렇게 자격이 좀 덜 갖춰진 분들도 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상황에서 그냥 질이 좋은 사람이 하루 종일 보살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D원장, 개인면담, 2022. 7. 22.)

아이들 입장에서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애들이 이게 중간중간에 이동이 되는 거잖아요. 양육자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 좀 이게 어떨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연장반도 전담 교사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 아이들도 적응되고 규칙적으로 계속되니 괜찮더라고요. 다만 그 중간의 4-5시 아이들이 문제죠. 담임의 역할은 담임이 충분히 하고 이후에 너희들은 이제 무슨 반이야 알려주고 항상 규칙적으로 안내하고 옮겨져서 생활을 하는 거니까. 애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그게 불안하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게 좀 신경이 쓰였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연령 특히 0세면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도 같아요. 초반에는 특히... 저희는 지금 그런 영아는 없기 때문에 괜찮지만요. 만약에 0세나 1세 생일 늦은 아이들이면 민감해서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적응을 하면 애네들도 괜찮을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게 제도인데 일단 따라야 하니 엄마들하고 떨어질 때 처음에는 그렇지만 적응하고 나면 선생님한테 자연스럽게 가듯이 그렇게 애들이 안정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안정하고 나서는 그런 분리 불안이나 이런 게 강하지는 않을 거예요.

(A원장, 개인면담, 2022. 7. 8.)

(5) 부모들의 이야기

일부 부모들은 연장보육교사가 겸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교사들이 겸임으로 연장보육을 하는 것보다는 전담으로 하는 것이 교사 입장에서 덜 힘들고 보육의 질에 있어서도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하지만 만 1세 자녀가 연장보육반을 이용하는 부모는 아이가 예민하고 까다롭다며 오전 보조교사가 연장보육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저는 오후에 출근하셔서 보시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애들 유치원 때도 그랬지만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집중해서 본다는 게 사실 어렵고 애들로 받는 스트레스가 부모인 저희도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

게 분리되어야 선생님이 휴식을 좀 취하고 서로 더 효율적으로 또 사랑으로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부모 H, 개인면담, 2022. 9. 17.)

저는 연장반 전담으로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일을 하게 되면 파트가 막 나뉘어서 하는데.. 그거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되면 질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를 가지고 A를 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A만 맞고 저 사람이 B만 맡아줬으면 좋겠어요.

(부모 C, 개인면담, 2022. 9. 17.)

저는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오전부터 같이 보조해주시는 분이 근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릴수록 한 선생님과 친밀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00이가 조금 예민하고 까다로워서 새로운 선생님이 있으면 그만큼 또 적응하고 하는 게 어려울 것 같긴해요.

(부모 D, 개인면담, 2022. 9. 16.)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연장보육교사가 어떠한 형태로 근무하든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보육겸임 교사로 근무할 경우, 기본보육반 교사들과 소통이 원활하고 오전에 아동의 일상생활, 놀이 등을 관찰할 수 있어 연장보육반에서도 이와 연계해서 일과를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연장겸임 교사가 한 보육실에서 보조교사를 하다가 그 반 아동을 연장보육할 때 기본반 교사와 연장반 교사 모두 연장보육반 운영에 대해 만족감을 보였다. 하지만, 연장보육 겸임교사가 보조교사로 여러 반을 순회하면서 보조업무를 하거나 보육이 아닌 청소나 주방 보조, 행사 준비 등 어린이집 업무 위주로 근무하다가 연장반을 보육할 경우 체력소모가 커서 오히려 연장보육제도의 목적과 다르게 연장보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경우 기본보육교사와의 소통문제, 연장보육 전 아동의 상황을 제대로 잘 알 수 없다는 점, 특히 0~1세 영아의 경우 교사의 교체로 분리 불안 등 정서적인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 것이 단점이나 연장보육반 담임교사로서 책임지고 연장보육반 운영에 전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본보육반 E교사는 유아의 경우 기본보육반 선생님과 연장보육반 선생님 두 명의 교사를 만나게 되면서 더 다양한 놀이 경험을 할 수 있

어 유아들 입장에서는 더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부모들은 기본보육반 교사를 위해 그리고 연장 보육의 질을 위해서 연장전담 교사가 좋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각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연장보육반을 누가 보육할 것인지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영아반은 보육을 위주로 하는 보조교사가 겸임으로, 유아반은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보육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2) 연장보육반은 정원 기준으로만 구성하는 것이 좋다

연장보육반 교사 대 아동 정원 기준은 영아반 1:5, 유아반은 1:15이다. 하지만, 탄력보육 기준을 적용하면 영아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즉 영아반은 1:7, 유아반은 1:20까지 허용되는 것이다. 탄력보육 대상은 연장반 정원이 충족된 상태에서 신규 아동이 연장보육을 추가 신청하거나, 연장반 미신청 아동 중 ‘간헐적·긴급 연장보육’을 신청한 경우이다. 간헐적·긴급 연장보육은 연장보육 미신청 영유아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17시 이후 하원해야 하는 경우, 연장반 탄력보육 허용 범위 내에서 연장보육을 하는 것이다.

연장보육반 교사들은 탄력보육 기준으로 혼자 보육하다 보면 인원수가 많아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특히 만 0~2세까지 통합하는 영아반의 경우 발달상 차이가 커서, 개별적으로의 세심한 보육이 어렵다고 하였다.

저는 일단 교사 대 영아의 비율은 낮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영아들은 좀 더 적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물론 유아반 아이들도 낮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후 시간이 되면 낮잠을 자지 않는 유아반은 아이들이 굉장히 흥분할 때도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에너지 소모가 안 되면 힘들어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많은 교사들이 보게 된다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다치거나 이런 위험을 조금 줄여서 안전을 위해서는요.

(연장보육 겸임 D교사, 온라인 실시간 그룹면담, 2022. 7. 23.)

저는 영아반을 보육하는데, 아이들이 다 기저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저귀를 갈다 보면 아이들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보육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버겁더라고요. 다른 분한테 요청을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래도 담임 선생님들은 이제 연장반이니까 딱 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면 왜 도와달라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서 지금은 제가 부탁

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탄력보육을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기본 정원에 맞게 보육하면 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잘 케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명이라는 자체가 사실 좀 힘든 것 같아요.

(연장보육 겸임 E교사, 온라인 실시간 그룹면담, 2022. 7. 23.)

실제로 탄력 보육하는 인원까지 꼭 차버리면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연장 보육반 그 시간에는 그냥 원래 정원대로만 하는 게 안전 측면에서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옆 반 선생님이랑 합치면 일단 20명이 되는데 딱 20명이 됐을 때랑 아이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몸이 안 좋아서 다섯 명이 또 빠지고 이래서 딱 15명일 때랑 이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초과된 인원은 제한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냥 현실적으로 좀 와 닿았어요. 탄력 보육은 없었으면... 그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15명 인원도 적은 건 아니니까요.

(연장보육 전담 D교사, 온라인 실시간 그룹면담, 2022. 7. 16.)

기본보육반 교사들도 영아 연장반은 탄력보육없이 1:5, 유아반은 1:10~15가 적당하다고 이야기하였다. 한편, 기본보육반 교사이면서 연장보육까지 하는 C교사는 현실적으로 간헐적·긴급보육 신청 없이 4시 이후 아이를 맡기는 부모로 인해 탄력보육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E교사는 유아들이 기본보육반 교사와 연장보육반 교사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르며, 연장보육반 교사의 이야기에 잘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유아 연장보육반 정원 15명이 모두 있으면, 연장보육반 교사가 힘들 거라도 하였다.

저는 영아반 1:5까지가 괜찮은 것 같고. 유아반은 1:10 생각했거든요. 저희 원에 유아반 아이들 성향들이 다 개성이 강해서 13명인데도 혼자서 보기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또 아이들 특성에 따라 되게 달라서 우선 조금 적게 정원수를 잡아놔야 선생님들이 좀 케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탄력보육은 유아반만 2명 정도 생각했었어요.

(기본보육반 D교사, 온라인 실시간 그룹면담, 7. 21.)

저도 영아반은 탄력보육 없이 1:5가 적당한 것 같구요. 유아반 같은 경우에는 뭐 1:15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탄력보육이라는 그 간헐적 보육하는 아이들도 정말 4시라고는 하지만 원에서 4시 이후에 이제 하원을 하지 않으면 그 친구들 또한 연장반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거의 매일 그렇게 되거든요. ‘오늘만 내일만 뭐 잠깐 4시 좀 넘

어서 올게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서서 그게 뭐 1:5다, 뭐 1:7이다, 정해져 있어도 그게 조금 오버가 되긴 하더라구요.

(기본보육반 C교사, 온라인 실시간 그룹면담, 7. 21.)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입장에서든 탄력보육으로 연장보육교사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지만, 새로 연장반 구성을 할 때까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원장들은 연장보육반의 아동수가 많은 날은 기본보육반 교사들이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으나, 기본보육반 교사들이 왜 연장보육반을 도와야 하는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거부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저희는 연장반이 만1, 2세 혼합이어서 연령혼합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는데, 인원은 5명으로 정확히 설정되면 좋겠어요. 연장반 교사들은 다 5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탄력보육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거기서 자기가 7명을 보면 자기는 부담하다고 생각할걸요. 그러니까 대신 담임교사가 같이 보육하던가 그래야죠. 교사들은 현실적으로 불만이고 거부하는데, 정부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기본반도 만1, 2세 혼합반은 5명까지인데, 왜 연장반은 0~2세 7명까지인지...

(A원장, 개인면담, 2022. 7. 8.)

저희가 지금 연장반이 영아반 한 반, 유아반 한 반인데,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엔 다 연장반을 원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유아 연장반은 지금 있는 담임교사들이 당직대로 운영을 하니깐, 한 명을 또 당직으로 배치할 수가 없으니까 탄력보육을 하고 있거든요. 탄력보육이 그야말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면 모르는데 계속 탄력보육 인원수까지 보육을 하고 있으니까 야간연장 겸임하시는 영아 연장반 선생님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E원장, 개인면담, 2022. 7. 13.)

부모들은 자녀가 이용하는 연장보육반의 인원수가 몇 명인지 정확히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연장보육반을 이용하면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면 불안감이 생겨 연장보육반의 인원수가 적어야 한다고 하였다.

연구자: 어머님께서 지금 연장반 유아들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지금 이 유아반으로 연장보육반 한 반이 구성이 된다

면 이 아이들이 몇 명 정도면 조금 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부모 C: 제 욕심에는 한 7~8명 정도만... 왜냐하면 한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을 보시기에는 힘드시니까 인원 수가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아이한테 가는 눈이 더 적어지겠죠. 그리고 저희 아이가 항상 본 수업에는 안 그랬는데 연장반 들어가고 나서 한 두 번 정도 사고가 있었거든요. 계단에서 한번 굴러가지고 집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선생님 눈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런 면이 조금 걸리기는 해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한 선생님이 돌봐주면 이런 일이 빈번하겠구나 싶은...

(부모 C, 개인면담, 2022. 9. 17)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영아 연장보육반의 경우 교사 1명이 만 0~2세 연령별 발달 차이가 큰 영아 5명을 혼자서 보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탄력보육 2명이 더 늘어나게 되면, 현실적으로 다른 교사의 도움 없이는 반을 운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만 3~5세를 통합하는 유아반도 15명 정원에 5명까지 탄력보육을 하게 되면 유아들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영아반은 탄력보육 없이 5명까지, 유아반은 정원 기준을 10~13명, 탄력보육 2명까지를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3) 연장보육반은 따로 또는 같이, 운영시간은 부모에게는 적절!

어린이집 일과 운영에서 오후 4시부터 5시 정도까지 기본보육반 하원, 차량운행 등으로 기본보육반 교사와 연장보육반 교사가 함께 한 보육실에서 기본보육반과 연장보육반 아동을 통합해서 보육을 하거나, 4시 이후 각 반에서 기본보육반 교사와 연장보육반 교사가 5시쯤까지 함께 기본보육반과 연장보육반 아동을 보육하다가 5시쯤 연장보육반 교사가 연장보육반 아동을 인솔해서 연장보육반 보육실로 이동하여 보육하기도 하였다. 6시 이후가 되면 영아 연장보육반과 유아 연장보육반을 통합해서 한 보육실에서 두 명의 연장보육 교사가 보육하기도 하고, 5시쯤부터 한 보육실에서 모든 연장보육반을 통합해서 보육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대체로 4시~5시 사이에는 기본보육반과 연장보육반으로 구분없이 함께 통합보육되는 형태가 많았으며 5시 이후에 연장보육이 시작되고 있었다.

B교사: 4시 이후 이제 각자 기본반에서 담임교사들이 아이를 돌보구요. 담임 선생님들이랑 같이 보다가 이제 5시에 연장반 보육실로 옮겨서 다른 연장반과 선생님들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연구자: 그럼, 5시 전까지는 아이들이 다 각자 교실에 있군요. 연장반 아이들도...

B교사 : 네, 담임 선생님들이랑 같이 애들 보면서 있다가 이제 제가 인솔해서 갑니다.

(연장반 전담 B교사, 온라인 실시간 그룹면담, 2022. 7. 16.)

C원장: 저희는 4시 45분까지 기본반 당직 선생님이 같이 들어가 계세요. 연장반 선생님이랑.

연구자: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당직 선생님을 정하신 거예요?

C원장: 네, 저희 당직 교사가 출근을 늦게 하고 5시까지, 왜냐하면 기본반 교사들이 4시 45분에 퇴근하니까 뭐 조금 인건비 절약이나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시간 외 근무가 아닌 오전에 조금 늦게 출근하고 다섯 시 퇴근으로 해서 당직 선생님이 연장 선생님이랑 아이들을 같이 유아반에서 봐요. 영아반은 없어요. 유아반 아이들만 4시 이후에 거의 남아 있어요. 영아들은 4시 전이나 4시에 거의 다 가요.

연구자: 그러면 기본반 선생님들이 근데 4시 이후에 굳이 당직을 왜 서야 되냐 연장 선생님이 계신데 뭐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C원장: 저희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고 연장반에도 장애아가 있기 때문에 기본반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5시 이후엔 아이가 한 명이 남아요.

(C원장, 개인면담, 2022. 8. 25.)

면담 결과, 일부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는 오후 4시부터 이미 일과가 마무리된 것처럼, 기본보육반 교사들이 교대로 오후 4시 이후 하원하는 기본·연장보육 아동들을 통합해서 보육하고, 연장보육반 교사 포함 다른 교사들은 청소하고 마무리하는 시스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장보육제도 실행 전보다 아동만 많아졌을 뿐 연장보육반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형태로 연장보육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교사들은 연장반 운영과 관련된 문서만 늘어나 더 힘들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연장보육반이 독립된 반으로 구성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장들 대상의 연장보육반 운영에 대한 인식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연장보육반 운영시간은 현재 16시(4시)부터 19시(7시) 30분인데, 7시 전에 연장반 아동

들이 모두 하원하는 경우는 교사들이 문서업무나 청소 등을 할 여유가 있어서 운영시간이 적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7시 이후 늦게 가는 연장보육반 아동이 있는 경우 배고파하기도 하고, 간혹 7시 30분 이후까지 하원하지 않을 경우 교사들도 보육 이외의 업무 시간이 부족해 힘들어하였다.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정말 7시 전후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3시간 이상을 있을 때 교사나 아이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7시 다 되면 ‘배고파요’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야간연장이 아니니까 밥을 줄 수도 없고. 게다가 또 이제 저희는 3시 반에 어쨌든 교실 투입이 되니까 이게 엄청 길거든요. 7시 반 다 돼서 가는 경우에는 정말 너무 길어서 3시 반부터 하는 거는 좀 너무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연장보육 시간을 조정을 하더라도 4시 이후에 투입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담임도 해보고 다 해봐서 확실히 좋아진 건 맞는데 이게 조금 지치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연장전담 D교사, 온라인 실시간 그룹면담, 2022. 7. 16.)

연장 보육이 7시 반까지잖아요. 야간연장 친구들은 저녁식사를 하는데, 연장반 친구들한테 저녁식사 제공은 안 하고 있거든요. 야간연장 아이들이 7시 30분 이후에 식사를 하면 솔직히 너무 배고파해서 저희는 앞당겨서 주거든요. 그럴 경우에 야간연장 친구들이 6시 반에 밥을 먹는데 연장반 아이들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다른 보육실에 가 있지만 야간연장 아이들은 이미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잖아요. 보고 냄새도 맡고, 그럼 또 더 허기지고. 6시 반 이후에 남아 있는 연장반 아이들이 안쓰러워서. 이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녁을 또 안 주기에는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진짜 이 저녁 식사에 대한 애로사항이 정말 많아요.

(E원장, 개인면담, 2022. 7. 13.)

아이가 오후 3시 전후로 오후 간식을 먹고 나서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그러면 너무 배고플 것 같아요. 그래서 7시 전에 한 번 더 간식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에 아이를 보낼 때(다른 어린이집) 그때는 저녁을 주니까 또 간식이 따로 나오는 것 같지는 않더라구요. 저녁을 먹든 안 먹든 그냥 7시 전에 연장보육을 하는 아이들에게 간식이 제공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 C, 개인면담, 2022. 9. 15.)

야간연장반을 운영하는 E원장은 연장보육이 끝나는 오후 7시 30분까지 기다렸다가 야간연장반에게 저녁을 먹이면 너무 배고파해서 6시 30분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 연장보육반 아동들이 너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난감해하였다. C원장은 연장보육반 아동의 부모님이 간식을 어린이집에 보내면 별도로 보관했다가 제공한다고 하였다. 한편, 한 어린이집에서 오후 7시가 넘어 배고파하는 연장보육반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했는데 저녁까지 어린이집에서 먹고 오면 편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연장반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가정에서도 연장반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교사들이 저녁 식사까지 준비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부모 H의 자녀가 다니는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식비를 따로 내지 않지만 오후 5시 20분에 저녁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부모 A의 자녀가 다니는 가정어린이집도 5시 30분 전에 저녁을 일찍 먹여서 그것 때문에 좀 늦게 갈 때도 많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연장보육반 저녁 식사 제공에 대한 명확한 기준(자격, 시간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연장전담 D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고, 3시 30분부터 기본보육반에 들어가 하원 지도를 돕는 것부터 일과를 시작하는데 연장보육반 운영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고도 하였다. 연장전담 E교사는 휴게시간에 기본보육반 하원 지도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을 쓰기가 애매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연장보육반 교사의 휴게시간을 확실히 보장해주고, 오후 7시 반까지 연장보육반 아동들을 보육해야 하는 경우 교사가 문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4시 이후에 보육업무를 시작하는 등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부 부모들은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을 하는 것조차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 아도 너무 늦게 데리러 가면 자녀와 선생님께 미안하기도 해서 6시 반 이전에 데리러 간다고 하였다. 부모 B의 경우 7시 30분에 데리러 간 경우는 한 번뿐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연장보육이 오후 7시 30분까지인 것을 부모에게 정확히 안내하지 않거나, 너무 늦게 데려가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제가 이제 교사 일도 하고 부모로서 이용도 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선생님 오늘 제가 좀 늦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 오늘 지금 마지막 가는 애가 6시 반에 간다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냥 6시 반까지는 가겠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애들도 자기들이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게 되면 저한테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막 그러거든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빨리 최대한 가긴 해야죠. 대부분 엄마

들은 7시 반까지 봐줘야 하고, 뭐 그렇게 자세히는 모를 것 같아요. 대부분 퇴근도 6시니까 데리러오면 6시 반이고, 대충 그 시간까지 맞출 수도 있고요. 전달 받아야 될 것만 전달을 받고 그러니까 일반 엄마들은 몇 시까지 운영하는지 모르는 건 잘 몰라요. 그냥 6시 반에 애들 다 가요 하면 그때 가야 하는 건 줄 알고 갈 것 같아요. 저는 알긴 하지만 선생님들도 고생하고 그 연장선생님도 고생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맞춰서 데리러 가요.

(부모 B, 개인면담, 2022. 9. 20.)

4) 연장보육반은 주로 자유놀이로 이루어져!

연장보육반 교사들은 보육활동 계획 시, 영아반과 유아반 각각 연령혼합으로 이루어져 수준별 계획을 하기도 어렵고, 간헐적 긴급보육을 하는 아동이라든가, 개별적으로 하원하는 시간이 다른 상황에서 놀이나 활동을 계획했어도 제대로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다. 게다가 영아반과 유아반 연장보육반이 한 보육실에서 통합되는 경우도 있어 따로 놀이나 활동을 실행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5시 이후가 되면 아이들도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놀이 위주로 오전에 진행된 놀이와 연계해서 연장보육이 진행되고 있었다. 원장들도 연장보육반에서 오전 일과와 같은 놀이나 활동 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는 하나 돌봄 위주인 것을 아쉬워했다.

부모님들이 퇴근할 무렵에 하원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지쳐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전 프로그램에서 그날 그날 주제에 있는 거 조금씩 하면서 아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원 할 때 힘들어 하거든요. 어떨 때는 또 연장반 수업 프로그램이 또 중단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면서 아이들 편하게 하원 할 수 있도록 실행하고 있어요.

(연장보육 겸임 C교사, 온라인 실시간 그룹면담, 2022. 7. 23.)

저희도 연장반 시간에는 그냥 자유롭게 아이들이 선택해서 놀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주제 계획안부터 시작해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 계획대로 잘 실천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계획대로 실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연장보육 겸임 E교사, 온라인 실시간 그룹면담, 2022. 7. 23.)

오전에는 사실 담임 선생님이 반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서 나름 즐거운 놀이를 하고, 선생님이 그렇게 이 한 반을 책임져주는 거잖아요. 근데 연장반에 가면 그런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진 못하거든요. 혼합반이기도 해서 교사가 운영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고, 수준은 어디에 맞춰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교사는 한 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낮은 수준으로 하면 높은 애들이 그렇고, 높은 수준으로 하면 낮은 애들은 못 따라가고... 그래서 처음에는 교육적인 부분을 좀 더 중요시 여기다가 어쨌든 교사 한 명이 애네 전부를 봐야 하는 거라면 어려울 것 같고 그냥 편안함으로 가자 그렇게 되었거든요. 연장반 교사 입장에서는 또 담임만큼의 처우도 없는데, 구체적으로 뭘 얼마나 교육을 계획하라고 하겠어요. 혼합연령계획은 담임교사들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냥 편안한 씬으로 가자해서 그냥 그렇게 한 건데...

(A원장, 개인면담, 2022. 7. 9.)

연장보육반 전담 교사들은 겸임 교사들에 비해 좀 더 구체적인 활동을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었다. 직장어린이집 유아반 연장전담 D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미술교재를 하고 있는데 활동 준비나 부모님께 보내는 포트폴리오 작성 등의 업무가 많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다. 국공립어린이집 영아반 연장전담 E교사는 기본보육반에서 하는 놀이프로그램 교재를 받아 이어서 하기도 하고, 놀잇감을 만들기도 하면서 영아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보육하고 있었다.

영아 같은 경우는 그냥 놀이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엄청 특별하게 뭔가를 준비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오전 활동 연계로 놀이하고 그런 부분을 일지에 기록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재작년에 할 때는 유아반도 놀이 중심이었는데 이제 원장님께서 유아는 아이들이 수업하는 거 이런 거 즐거워하니 미술 교육도 하면 좋겠다고 교재를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은 안 해도 되긴 하나 그걸 또 안 하기가 좀 어려운 게, 교재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든지 키즈노트로 어머님들께 안내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꼬박꼬박 나가다 보니 너무 그거에 시간이 할애가 많이 돼서 2주에 한 번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모든 아이들이 다 하게끔 하고 이제 그 부분을 마지막 주 금요일 이렇게 요일을 정해서 유아반 연장선생님 두 명이 놀이나 미술 활동했던 부분들을 사진 다섯 장씩 이렇게 해서 내용과 함께 사진을 첨부해서 어머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어요. 수업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준비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 좀 바쁘더라고

요 제가 이게 검임을 할 때는 시간적인 여유도 좀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3시에 출근을 해서 3시 반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준비하기에 많은 날도 있고 많지 않은 날도 있고 그런데 많은 날은 조금 심적 부담이 되더라고요.

(연장보육 전담 D교사, 온라인 실시간 그룹면담, 2022. 7. 16.)

E교사: 저 같은 경우는 0세랑 1세, 그전에는 이제 2세였다가 지금 아이가 0세가 들어오면서 좀 바뀌기는 했는데요. 그전에는 기본반 선생님한테 활동지 형식의 놀이 프로그램을 받아 가지고 활동을 하기도 하고 제가 교재교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만든 교재를 갖다가 활용하기도 해요.

연구자: 이제 기본반에서 했던 활동의 연장으로 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군요.

E교사: 네, 그렇게도 하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또 생각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만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교재나 이런 것들 따로 좀 만들기도 해요. 제가 자료를 집에서 찾아서 이제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그날그날 욕구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제가 활동을 계획했어도 아이가 이제 그때 감정이나 욕구나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걸 이제 보육일지에 작성을 하기도 하고 제가 한 활동을 보육 일지에 작성하고 있어요.

연구자: 그러니까 기본보육반 활동의 연장도 하지만 또 아이들 그때그때 흥미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선생님께서 또 직접 다른 활동도 추가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네요.

(연장보육 전담 E교사, 온라인 실시간 그룹면담, 2022. 7. 16.)

어린이집 평가제(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22)에서는 16시 이후 보육되는 영유아에 대해 놀이 및 휴식 등이 이루어지는지 평가하고 있으며, 연장보육반은 특별활동을 신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별활동은 외부강사에 의해 진행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직원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연장보육반에서는 특별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교사들의 이야기처럼 연장보육계획안을 반영한 놀이 및 활동이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실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계획안과 실행기록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부모 입장에서는 연장보육 시간에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 연장보육교사와 소통할 기회가 별로 없어 잘 모른다고 하였다. 자녀를 데리러 갔을 때 주로 블록놀이나 미끄럼타기 등 자유 놀이하는 모습을 본다고 하였다. 키즈노트 등으로 연장보육반에서의 놀이 모습

을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끼적이기나 신체 운동 등 한정적인 놀이 모습만 보이고 교육적인 활동이 좀 더 다양해지길 바라고 있었다. 특히 취학 전 만 5세라면 교육적인 부분에 더 신경 써 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우리는 몇 시까지 운영하는지 대충 그런 거만 알고 있지 그 외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혀 모르니까... 연장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처럼 우리랑 상담하고 소통해 주고 하는 것도 아니니깐요. 이렇게 기록해서 뭘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말로서 전달받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도 궁금한 사람이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만 전달받기만 하고 하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얘기 나누는 게 없으니까 항상 그렇죠.. 알림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모 B, 개인면담, 2022. 9. 20.)

어차피 짧은 시간이라 대단하게는 아니어도 맨날 이렇게 끼적이는 거 이런 거 말고 선생님하고 같이 책이라도 읽어준다든지 그랬으면... 사진을 보면 주로 혼자 이렇게 자기 들끼리 그냥 아무거나 하고 노는 그런 모습인 거죠. 애가 선생님하고 이렇게 교류가 되는 건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얼굴도 제가 잘 못보고 하니까...

(부모 G, 개인면담, 2022. 9. 13.)

지금은 아이가 5살이라 괜찮은데 혹시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7살 연장반 선생님께서는 조금 이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조금 교육적인 부분도 조금만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한편으로는 또 학원으로 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아직 7살이고 6살인데 학원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라...

(부모 H, 개인면담, 2022. 9. 17.)

이렇듯, 유아 연장보육반을 신청한 부모들은 한글, 수, 영어 등 유아들에게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주길 원하고 있었고 이에 원장들은 난감해하고 있었다.

저희도 부모님들이 한글, 수, 학습지를 가져다 줄 테니까 여기서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작년까지도 사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안 된다곤 했어요. 어린이집에서는 놀이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왜 안 되는지를 얘기 했지만 부모님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요청이 있긴 해요. 그래서 사실 만 5

세 같은 취학 전일 경우에는 저희도 겨울쯤에 돼서는 어느 정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긴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어요.

(E원장, 2022. 7. 13.)

2. 어린이집 연장보육에 대한 인식

1) 연장보육제도 자체는 좋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어린이집에 연장보육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된 점을 반기고 있었다. 특히,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들과 겸임교사들은 이전에 기본보육반 교사나 보조교사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연장보육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제가 예전에 종일반 교사로 근무할 때는 아이들 낮잠 잘 때 겨우 쉬면서 보육일지를 작성한다거나 이런 기억들이 있었고 오후 한 5시가 되면 정말 피곤하다 힘들다 에너지가 다 소비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컸는데요. 그리고 또 수업 준비하는 거 자체도 시간이 안 돼서 아이들을 계속 이제 연장해서 보육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일을 집에 까지 갖고 가서 그다음 활동을 준비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연장보육제도가 생기면서 제가 이거를 처음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사들을 봤을 때 여유로움도 있고요. 또 자기가 그다음 날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교구라든가 수업 준비도 이제 자체적으로 다 하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유로움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오후 시간 되니까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많이 밝아지기도 하고 저로서는 너무 다행이다. 근무환경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서 저는 찬성이예요.

(연장보육 전담 E교사, 온라인 실시간 그룹면담, 2022. 7. 16.)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오전 보조교사를 해봤었는데 그때랑 비교했을 때 오후 연장반 선생님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오전은 솔직히 보조교사라고는 해도 특별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기보다 어린이집 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조교사에게 설거지나 그런 어린이집 청소 이런 걸 좀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그래도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좀 케어하고

일을 하게 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연장보육 전담 B교사, 온라인 실시간 그룹면담, 2022. 7. 16.)

원장들도 연장보육제도로 인해 온종일 쉼 없이 일해야 했던 교사들이 4시 이후 보육 이외의 업무를 하게 되면서 좀 더 여유를 갖고 일과에 대한 평가나 다음 날 놀이나 활동에 대한 준비 등 교사로서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연장보육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교사들이 조금 더 여유로워진 수업 준비를 하거나... 그전에는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복잡하고 전투적으로 지나갔었잖아요. 사실.. 하루를 전투적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기본이랑 연장으로 나누니까 기본반이 운영되는 시간까지가 교사가 자기의 기본 하루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 이후 시간은 연장반으로 딱 생각을 하니까 훨씬 더 교사들도 여유롭게 하루를 보낼 수 있죠.

(A원장, 개인면담, 2022. 7. 8)

교사들한테는 진짜 너무 좋죠. 연장반으로 (아이들을) 인계를 하고 나면 정말 청소도 그렇고 수업 준비도 철저히 할 수 있고, 시간 외 수당 받는 거보다 선생님들이 더 많이 근무하는 건 또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좀 안심하고 맡겨놓고 인수인계하고 나면 본인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한테는 진짜 좋은 거 같아요.

(E원장, 개인면담, 2022. 7. 13.)

연장보육반 교사가 부족해 연장보육까지 하고 있는 기본보육반 교사들은 연장보육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오히려 보육업무가 더 늘어나 아쉽다고 한 반면, 기본보육반 하고 있는 교사들은 연장보육제도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기본반 아이들 80%가 연장반을 하다보니 담임교사들이 보육하는 연장반 세 반, 연장 교사 두 명이 보육하는 연장반 두 반, 총 다섯 반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연장반을 맡으면 수당 연장반이라고. (중략) 그렇게 연장반이 정해져 있지만, 담임 선생님들이 서류 작성이나 수업 준비나 놀이 중심이니까 그런 걸 준비하라고 연장보육반이 생긴 건데 이제 또 연장반이 주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책임이나 수업 준비나 이런 것 때문에 기본반 선생님들이 조금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기본보육반 C교사, 온라인 실시간 그룹면담, 2022. 7. 21.)

대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거 같은데... 그 원래 취지는 기본반 선생님들이 연장보육시간인 4시가 되면은 서류를 하든지, 수업 준비를 하든지, 청소를 수월하게 하고 이제 아이들하고의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저희 (어린이집) 상황이랑 조금 맞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요.

(기본보육반 E교사, 온라인 실시간 그룹면담, 2022. 7. 21.)

부모 입장에서든 자녀를 늦게 데리러 가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선생님들께 미안한 마음을 덜 수 있어서 좋고, 특히 기본보육반이 4시까지인 것이 짧다라고 느껴지는데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어 연장보육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제일 큰 장점은 저처럼 일하는 엄마들한테는 정말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저희한테는 제일 믿음직한 곳이죠. 갑자기 막 6시에 못 가서 저희도 이제 늦게 야근을 하게 되서 선생님한테 전화드리면 선생님은 그래도 괜찮다고 ‘그 시간에 오셔도 돼요’ 라고 한마디 해 주시는 게 정말 큰 위안이 되거든요. 연장반이라는 게 없었으면 일을 못 했겠죠.

(부모 H, 개인면담, 2022. 9. 17)

아무래도 기본보육 시간이 4시면 저는 짧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으로 가정에 있는 전업주부도 4시면 좀 애매한 시간이기도 하고 뭘 하기에 좀 시간이 짧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본보육시간 외에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죠.

(부모 C, 개인면담, 2022. 9. 15.)

2) 유아들도 연장보육 자격기준이 있어야 하는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을 신청하려면 영아는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장보육 신청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시·군·구에서 승인해 주지만, 유아는 별도의 연장보육 신청자격 기준이 없다. 국공립 어린이집 E원장은 기본보육반 유아들 대부분이 연장보육을 신청하여 이용하고 있어 4시 이후 가정에서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유아들도 연장보육제도 이전의 종일반처럼 온종일 어린이집에 머물러있는 점을 안타까워하

였다. 부모 A도 일을 하지 않는 부모들도 연장보육을 신청할 수 있어 유아가 가정보다는 외부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한 세금이 필요 이상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사례이긴 하지만, 장애아 통합보육을 하고 있는 법인어린이집 C원장은 장애아와 비장애아 두 명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가 연장보육 자격기준에 따라 한 명은 연장반 자격이 되고 한 명은 왜 연장반 자격이 안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 원장 입장에서 난감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처럼, 두 원장은 유아도 영아처럼 연장보육 신청자격이 일부라도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저희는 유아반 친구들이 꼭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두 명 빼고는 다 연장반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부모가 그냥 친구들과 하고 더 놀게 하고 싶은 이유도 있으시고 그냥 조금 더 있다 오면 엄마가 더 편하셔서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또 구마다 지역마다 다 다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서구에서 원장을 했을 때는 부모님이 어떻게든 든 직장을 다니셔도 빨리 데려가고 싶어 하셨어요. 오후에 학원을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학원을 가는 건 아니니까 그냥 끝까지 어린이집에 있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장반 신청자격이 유아반도 조금 어느 정도 있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E원장, 개인면담, 2022. 7. 13.)

집에 있는 부모님들이 애들을 더 챙기고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집에 있는 부모님들까지 다 연장을 받아주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애들이 바깥으로 도는 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중략)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다 세금인데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는 건... 그래서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어떤 뭔가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이런 걸 해서 좀 확인하고 해주는 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요.

(부모 G, 개인면담, 2022. 9. 17.)

신청 자격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모님께 연장반에 대해 안내하기도 편하고 덜 헛갈려 하시고, 왜냐하면 형제자매를 보내는데 애는 연장반이 되고 애는 연장반이 왜 안되는지 문의를 하신 적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그래서 언니가 장애고 동생은 정상적인 영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보셔서 설명은 해드리는데 왜 똑같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왜 그렇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차라

리 그냥 동등하게 조건이 같아야 부모님들도 이해가 더 쉬우시고 저희도 더 쉬울 것 같아요.

(C원장, 개인면담, 2022. 8. 25.)

직장어린이집 D원장은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대부분의 아동이 연장보육 신청자격이 돼서 연장보육 신청자격에 관련해서 크게 상관은 없지만, 영아는 가정에서 충분히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유아는 연장보육 신청자격 기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부모에게 홍보 및 안내가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어쨌거나 저는 그 직장어린이집에서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또 그 여성의 차원에서 봤을 때 육아가 너무 길어지거나 그런 어떤 사회적인 경력이 단절되는 게 또 너무 길어져 버리면 그것도 그 엄마의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여러 가지 뭐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확실히. 그런데 영영아기 같은 경우 엄마하고 아이가 친밀하게 지내야 되는 그런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들을 심리학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정에서 보육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부모에게 좀 인식을 시켜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유아가 그런 어떤 자격이 없이 한다는 거는 이해는 가거든요. 저는 전공자로서 아이한테 이 시기에는 엄마의 사랑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보다는 가정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엄마나 아이가 분리될 준비가 됐을 때는 기관에서 또 케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아들은 그런 기준으로 굳이 신청자격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좀 어떤 홍보 그리고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D원장, 2022. 7. 22.)

이처럼, 유아의 입장에서 가정에서 부모의 좀더 세심한 돌봄을 받는 것이 유아에게 심리·정서적으로 더 좋다는 측면에서 유아도 자격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과 부모의 입장에서 기본보육반만 이용하든지 연장보육반을 추가로 이용하든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연장보육반 이용 원아수가 많아야 원 운영에 도움이 되므로 유아 연장반 신청자격 기준이 없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

3) 연장보육반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입장에 따라 다르다

연장보육반 교사들은 오후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집에 남아서 지친 아이들에게 결과물을 요구하는 활동보다는 편안하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하원할 때까지 다치지 않게 보육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일부 부모들은 연장보육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연장보육교사에게 크게 기대하는 바가 없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내기를 원했다.

연구자: 연장보육반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D교사: 저는 집에 갈 때 하원을 제가 시키기 때문에 저는 하원까지 그냥 안 다치고 안전하게 해 주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E교사: 네 저도 마찬가지죠. 정말 아이들이 오전에 와서 오후까지 정말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아이들이 잘 있다 가는 게 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C교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로 아이가 안 다쳐야 부모님들도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저 또한 아이들이 안 다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연장보육반 겸임교사, 실시간 온라인 그룹면담, 2022. 7. 23.)

그냥 아이들이 함께하는 시간에 어떤 수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이 그냥 정말 즐겁게 했던 것을 하고,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면 준비해서 가져가는 것도 괜찮지만 그냥 일률적인 교재로 인한 수업은 제가 겪어보니까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솔직한 마음이고... 그냥 아이들이 즐겁게 기쁘게 잘 놀다가 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그거에 맞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준비해 주는 것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아이들 입장에서도 긴 시간 있는 것이 또 힘들고 지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냥 아이들이 놀이하면서 그냥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냥 이렇게 웃고 이런 모습 자체가 그냥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이제 그런 정서적 안정감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연장보육 전담 B교사, 실시간 온라인 그룹면담, 2022. 7. 16.)

그냥 아이가 뭘 안 배워 와도 편안히만 있다 왔으면 좋겠어요. 만족도는 90점인데, 10점이 왜 깎였냐면 이제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 제가 아무래도 겪다보니... 그래도 대체로 잘 있다 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 C, 개인면담, 2022. 9. 17.)

하지만, 기본보육반 교사들과 원장들은 연장보육반 교사들에게 보조교사가 아닌 연장보육반 담임교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영유아의 흥미를 고려한 놀이나 활동을 준비해 주길 바라고 있었고, 특히 부모에게도 자녀에 대한 사항을 책임감 있게 전달해 주길 원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놀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뭐 수업 준비도 철저히 하시고 놀이도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면 이제 연장된 선생님과 기본반 담임 선생님하고도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의 특성이나 이런 것도 같이 알고 공감을 해야지, 그것도 또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깐.

(기본보육반 E교사, 실시간 온라인 그룹면담, 2022. 7. 21.)

연장 선생님께서 하원 지도를 하시다 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아이를 이제 어머님께 인계하는 선생님이 연장반 선생님이시잖아요. 아이에 대한 컨디션이나 아니면 뭐 원에 있었던 특이 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찌됐건 마지막에 볼 수 있는 부모님들이 보시는 선생님은 연장 선생님이시니까 좀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부분 이렇게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보육반 C교사, 실시간 온라인 그룹면담, 2022. 7. 21.)

연장반 선생님이 스스로 부족하다 생각하지 말고, 더 책임감 있게 연장반 담임이다라는 그런 의식 이런 거를 조금 더 상기시키고 하면 좋을 거 같아요. 또 기본반 선생님이랑 친밀감을 가지고 잘 소통하려는 생각이 있으셔야죠, 아무래도.

(C원장, 개인면담, 2022. 8. 25.)

4) 연장보육 전용 보육실이 없을 때 가장 불편한 사람은 연장보육교사!

본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직원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대부분 별도의 연장보육반 전용 보육실이 없어, 기본보육반에서 연장보육을 하다 보니 연장보육반 교사가 놀이나 활동 준비물을 별도로 가져가서 하더라도 다음 날 기본보육반이 사용하기 때문에 연장보육반에서 하던 놀이나 활동을 연계해서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저는 이제 0세반에서 연장보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다른 반에서 주제에 맞게 갖고 온다던가 이렇게 놀이 후 제자리 원상 복귀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스티커나 이런 거를 바닥에 신체 활동을 위해서 붙이거나 이럴 경우도 그 거를 또다시 떼다가 그다음 날 또다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애로점 그런 것들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연장보육 전담 E교사, 실시간 온라인 그룹면담, 2022. 7. 16.)

단독 공간이 저도 아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처럼 뭔가 재료를 다 소진을 했을 때도 제가 그냥 혼자 쓰는 반이면 내일 봐도 되고 그런 부담감이 없는데, 정말 그 날 색종이라도 좀 아이들이 너무 많이 써버리면 또 그것도 채워야 되는 걸 깜빡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중략) 어쨌든 이게 내 반이면 내가 알아서 뭔가 탁탁탁 마음대로 옮기기도 하고 치우기도 하고 이럴 텐데 이걸 마음대로 못하니까 좀 힘들어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오전에는 이런 놀이를 했지만 저랑할 때는 시계 만들기가 좋아서 제가 시계를 프린트를 많이 해다 놓아도 다음날 기본반 선생님은 그 부분이 또 필요가 없으니까 아이들끼리 혹시 분쟁이 생겼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다음 날 가보면 또 없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바구니를 하나 만들어서 네 제가 따로 그냥 가지고 들고 왔다 갔다하고 있는데 그런 공간 확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어려운 것 같고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연장반이 네 반인데 네 반을 어디다 따로 구성하기도 사실상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게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 같아요.

(연장보육 전담 D교사, 실시간 온라인 그룹면담, 2022. 7. 16.)

또한, 공간이 제일 큰 기본보육실 한곳에 영아반과 유아반 연장보육반을 합쳐 세 반이 통합으로 연장보육을 하는 경우도 있어, 영아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연장보육반 반별로 놀이나 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었다.

저희는 어린이집 여건상 통합으로 해서 따로 큰 교실이 있어요. 거기를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5시쯤에 통합 보육실을 가요. 거기가 이제 유아반 중에 제일 큰 교실이거든요. 그전에는 담임교사랑 각 반에서 같이 보다가 이제 5시에 그쪽으로 옮겨서 연장반 교사들 세 명이 같이 보고 있습니다. (중략) 저희 아이들(영아반)은 이쪽에서 따로 더 놀게끔 해주고.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다치지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연장보육 전담 B교사, 실시간 온라인 그룹면담, 2022. 7. 16.)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가 근무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모든 반의 아동 대부분이 연장보육을 신청하고 있어 영아반의 경우 별도의 연장보육실로 이동할 필요 없이 연장보육반 교사가 각 반에 들어가 연장보육을 하기 때문에 영아들이 하원할 때까지 놀이나 활동을 이어서 할 수 있었다. 유아반이 한 반인 어린이집의 경우도 연장보육반 유아들이 연장보육실로 이동 없이 그대로 기본보육실을 연장보육실로 이용하고 있어 영유아 입장에서 장소 이동에 대한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연장보육 전담 D교사는 연장보육반 전용 보육실이 없지만 유아들이 한 보육실에서만 있으면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유아 연장보육반을 통합한 이후 1시간씩 다른 유아반으로 이동해서 연장보육을 하고 있는데 각 반마다 놀이영역 구성이 잘 되어 있어 유아들이 더 잘 재미있어한다고 하였다. A원장도 전용 보육실이 없으면 교사들만 불편할 뿐 유아들은 다른 반에 있는 새로운 놀잇감을 갖고 놀 수 있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예비 면담을 했던 원장은 빈 보육실이 있어도 연장보육교사가 기본보육실을 연장보육실로 이용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연장보육교사가 한 보육실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렇듯 영유아의 입장에서 기본보육반 영유아가 연장보육반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보육을 하게 되면 좋다는 의견과 유아들이 장소를 이동해서 새로운 보육실에서 연장보육을 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연장보육교사의 입장에서는 전용보육실에 없을 때 놀이나 활동 시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였다.

3. 연장보육반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

1) 교직원 간 소통의 단절은 곧 부모의 불신으로 이어져!

연장보육반 교사들은 연장보육이 시작되기 전 주로 교사들 간의 온라인 그룹 채팅을 통해 연장반 이용 아동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장보육반 교사가 여러 반 아동들을 통합해서 보육하다 보니 제대로 전달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하원 시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부모의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메모를 하거나 단체 카톡방에 올리거든요. 그런데 연장선생님이 보시다가 너무 바쁘셨는지 아니면 정신이 없으셨는지 아니면 좀 성향이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세심하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중략) 한 친구가 바지에 쉬를 해서 옷을 갈아입혔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분명히 연장선생님께 전달을 하셨는데도 그 선생님께서 뭐 깜박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하원지도할 때 ‘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혹시 어머니,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전달을 해 드릴게요. 다시 선생님과 통화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안 느껴지니까 부모님들도 좀 불안해 하시는 거. ‘여기 선생님은 왜 모르시지?’ 뭐 이런 느낌? 뭐 다치거나 그럴 때도 ‘어 여기 왜 다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일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되게 많거든요. (중략) 이게 근데 그 원의 이미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연장반은 조금 불안하다, 이런 느낌!

(기본보육반 C교사, 실시간 온라인 그룹면담, 2022. 7. 21.)

우리 원은 아닌데 제가 아는 한 어머니가 같은 상처에 대해서 기본반 교사와 연장반 교사가 다르게 얘기하니까 의심이 돼서 저한테 CCTV를 확인해도 되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의를 하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은 뭐 ‘놀다가 오전에 다쳤어요’ 라고 했는데 연장반 선생님은 ‘연장반에서 놀다가 이랬어요’ 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 그래서 소통을 꼭 해야 되는구나... 우리 어린이집은 연장반에 남아있는 아이들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나마 또 전달을 잘 할 수가 있어요.

(C원장, 개인면담, 22. 8. 25.)

마찬가지로 기본보육반 교사들이 바쁘거나 혹은 잊어버려서 연장보육반 교사에게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을 때 연장보육교사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부모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 하고 있었다. D 부모도 연장보육교사에게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기본보육반 담임교사와 연장보육교사가 인수인계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하였다.

저희는 선생님들이 13명 정도 있는데 다 성품이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어린이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한번 씩 안 맞는 교사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연장반 교사고 그분들은 담임 선생님이잖아요. 인수인계를 잘 안하고

그냥 이렇게 아이만 말기는 경우 제가 하원 시킬 때 엄마가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요. 다른 말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제가 못 들어서 죄송하다고 한번 여쭙봐 드릴까요?’ 하고는 그냥 하원 시키거든요. 대신 담임 선생님이 키즈노트를 통해 충분히 어머니에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하원을 시키니까 인수인계를 이렇게 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연장보육반 전담 C교사, 실시간 온라인 그룹면담, 2022. 7. 23.)

이제 다른 반에서 오는 경우 전달 사항을 담임 선생님한테서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뭔가 이제 알고 있어야지 저희가 부모들한테 응대를 할 때 말을 할 수 있는데, 모를 때 만약에 그럴 때는 좀 연장반 선생님 입장에서 미안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말을 전달하지 못해줘서 당황스럽고.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렵고 불편한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좀 더 명확하게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당황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연장보육반 겸임 C교사, 실시간 온라인 그룹면담, 2022. 7. 23.)

담임 선생님하고 오후에 오시는 연장반 선생님하고 인수인계 같은 게 잘 안 이루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OO이가 워낙 잘 안 먹고 그래서 먹는 거랑 잘 지냈는지가 궁금한데 어땠는지 물어보면 잘 모르시겠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 퇴근했는데 또 따로 연락해서 물어보기는 또 죄송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모 D, 개인면담, 2022. 9. 16.)

한편, 교사들이 매일 일정한 시각에 만나서 연장보육반 아동에 대해 이야기 나눌 때 누락되는 사항 없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장보육반 교사가 겸임으로 근무할 때 더욱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본보육반 E교사와 D교사는 기본반에 있었던 일은 담임교사가 부모에게 전달하고, 연장반 교사는 연장반에 있었던 일을 부모에게 전달하고 있어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다.

야간연장 선생님이 출근을 일찍 하시거든요. 그럼 그때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헤드리고 서로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는 거에 대한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달사항을 항상 몇 시로 시간을 정해서 그 전달 사항을 항상 알려드리거든요.

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전에 문제가 일어나거나 이게 어떤 상황이 생기면 제가 그냥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본반은 제가 책임을 지고, 하지만 그 이후 시간대 그때 문제 일어난 건 연장선생님이 이제 부모님에게 확실하게 알려다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기본보육반 E교사, 실시간 온라인 그룹면담, 2022. 7. 21.)

올해는 좀 많이 그냥 직접적으로 저희가 연장선생님께 전달을 하거든요. 놓치는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가 좀 있었어서 직접 전달을 해서 연장반 선생님도 이제 확실히 들은 거를 확인을 하고, 하원 지도는 거의 담임 선생님들이 해주셔서 부모님들도 뭐 크게 그러시지는 않는데... (중략) 연장반 선생님이 겸임을 하면서 해야 좀 소통이 훨씬 잘 되고, 담임교사가 잊어버리고 못 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선생님들도 오전에 같이 있을 때는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막 그 오전 보조를 막 계속 연령을 돌아다니면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고정된 반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기본보육반 D교사, 실시간 온라인 그룹면담, 2022. 7. 21.)

2) 담임인 듯 아닌듯한 연장보육교사!

연장보육반 교사들은 기본보육반 교사의 보육방식에 맞춰야 할 때, 영유아가 기본보육반 교사에게 더 의지하려고 할 때, 훈육해야 할 때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장보육교사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제가 이제 보조 겸임을 했을 때 오전부터 계속 있었을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제 연장반을 했을 때 아이들의 훈육을...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담임도 아닌데 막 훈육을 한다고 그래서 계속 지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유아 같은 경우에는 큰 아이들이다 보니까 훈육의 한계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담임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를 오전에 같이 보조겸임을 했을 때는 오전에 아이들이랑 같이 있었을 때 담임교사랑 같이 이렇게 계속 오후까지 할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연장반을 했을 때는 그 훈육의 한계가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따끔하게 혼내기는 하지만 요즘 또 아이들 보면 조금 영악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유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그러니까 물론 아이들한테 좋게

할 수는 있지만 아이들 상황에 따라서 하긴 하지만 그런 훈육의 문제도 조금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이나 그런 인식이 연장반 담임교사 이런 인식이 확실치 않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연장보육반 겸임 B교사, 실시간 온라인 그룹면담, 2022. 7. 23.)

오후에는 아이들이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연장반을 맡으니까 생각보다 연장반교사가 아이들과 소통할 때 조금 힘든 부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기존에 같이 있던 담임 선생님하고 있을 때와 또 연장 선생님하고 있을 때하고 사실은 아이들이 그런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변화에...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불편한데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은 되는데 그래서 연장반 선생님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연장보육반 겸임 C교사, 실시간 온라인 그룹면담, 2022. 7. 23.)

연장반 선생님들 대부분이 이렇게 수업 준비라든지 뭔가 담임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위치가 좀 애매해지시는 것 같아요. 연장 담임교사라고 왔지만 유아반 같은 경우 말도 잘 안 듣고 영아반 같은 경우는 기본 보육반 선생님도 같이 들어가서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조금 위축이 되시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기본보육반 D교사, 실시간 온라인 그룹면담, 2022. 7. 21.)

원장들은 연장보육교사들도 대부분 보육교사 경력이 있고 교사로서의 역량 측면에서 기본보육반 교사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본보육반 교사들이 연장보육반 담임이 아닌 보조교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저희 기본반 선생님들도 연장교사를 보조교사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는 보조교사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반 담임 선생님이 조금 더 존중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다시 말씀을 다 드렸거든요.

(C원장, 개인면담, 2022. 8. 25.)

예전에 근무했던 어린이집에서 기본반 교사들이 연장 교사들이나 보조 교사들한테 너무 일을 막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나는 좀 그런 의문이 좀 생겼어요. 기본보육 교사들하고 연장교사, 보조교사 이거는 좀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

이제 알게 모르게 차별이 있는 것처럼 교사들 사이에서도 진짜 그게 원장들이 잘 중재를 해주지 않으면 확실히 생기거든요. 서로 이제 알게 모르게 진짜 우리와 그들로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뭐 평소에 약간 허드렛일 같은, 왜냐하면 어쨌든 마무리를 연장반 선생님들이 하니까 청소나 뭐 쓰레기 버리는 거 그런 일들에 대한 업무분장이 확실히 더 가거든요. 그 점이 안타까운 거 같아요.

(D원장, 개인면담, 2022. 7. 22.)

D원장의 이야기처럼, 기본보육교사와 연장보육교사들 간에 청소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다. 기본보육교사는 같은 공간을 마지막에 사용하는 연장보육반 교사가 청소해 주길 바라는 경우도 있었고, 연장보육반 교사가 청소를 하는 경우도 기본보육반 교사 본인이 원하는 만큼 깨끗하게 되어 있지 않아 불만이 있다고 하였다. D교사는 연장보육반 교사 회의에서 청소 문제를 건의하여 원장이 의견을 수용하면서 연장보육반 교사들의 청소 범위가 줄어들긴 했지만 대신 기본보육반 교사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고 하였다.

저희는 7시 30분에 아이들이 다 하원하는게 아니라 야간 연장반까지 이어지잖아요. 아이들이 8시 30분~9시에 가면 그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연장반 교실을 청소하고 옆에 달려있는 화장실까지 같이 청소를 하고 그 아이들이 놀았던 유희실까지 청소를 하다보니 청소 범위가 너무너무 넓은 거예요. 혼자 하기에는 버거울 정도로 그래서 진짜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청소 문제...

(연장보육반 겸임 E교사, 실시간 온라인 그룹면담, 2022. 7. 23.)

저희는 연장교사들이 회의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주에 한 번은 항상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중략) 초음에 저희가 청소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원장님이 알겠다 하시고 그걸 수용해 주신 다음에 주임 선생님께 얘기해서 체크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보육실을 청소해 주시고 저희가 쓰는 반은 저희 보고 마무리를 하라고는 안 하셨지만 저는 이제 제가 거의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갔던 거였거든요. 오후에 나온 쓰레기들을 한 번씩 치우고 공통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긴 한데 빨래라든지 그 다음에 원장님방, 교무실 청소 이런 거여서 크게 담임 선생님들이 청소하는 그 반에 비해서는 적은 범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장보육반 겸임 D교사, 실시간 온라인 그룹면담, 2022. 7. 23.)

어린이집 교직원 회의를 주로 연장보육 시간에 하다 보니 연장보육반 교사들은 회의에 참여하기가 어려워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뭔가 주도적으로 보육하기가 애매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소속감이 들지 않아 고민하기도 하였다.

연장반 선생님이 회의에 참여를 사실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록을 그날 작성해 가지고 단체톡에다가 올려줘요, 확인하시라고. 개별적인 건 제가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일대일로 가서 선생님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거 한 번 꼭 확인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게 참 그런 거 같아요. 특으로 사실 봤을 때도 선생님들 자체로도 약간 소외감을 느끼는 거 같아요

(E원장, 개인면담, 2022. 7. 22.)

제가 정담임만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겸임 연장반 교사라는 걸 해봤는데...몸은 편한데 마음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중략) 근데 저 그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조금 내가 여기 속하지 못하는 게 있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정도의 고민거리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연장보육반 겸임 D교사, 실시간 온라인 그룹면담, 2022. 7. 23.)

3) 연장보육반 증설을 해야 하지만 교사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어려움

원장들은 연장보육반 교사의 인건비가 연초 2월까지 구성된 연장보육반의 수를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이후 연장보육반을 신청하는 부모들이 많을 경우 연장보육반을 증설해야 하지만 교사 인건비 지원이 안 되므로 매우 난처한 입장이라고 하였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E원장은 영아반, 유아반 연장보육반이 한 반씩 운영되지만 현재 영아반 연장보육교사의 인건비만 지원이 돼서 유아반 연장보육반은 기본보육반 교사들이 교대로 연장보육을 하고 있으며 3월 이후 연장보육을 신청한 부모들이 많아서 한 반을 증설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인건비 지원이 안된다고 하여 현재 운영되는 연장보육반이 탄력보육 인원수까지 꽉 찬 상태라 교사들이 매우 힘들어해서 원장으로서 매우 답답하다고 하였다.

사실 저희가 지금 영아반 한 반, 유아반 한 반이긴 하잖아요.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엔 다 연장반을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있는 교사 수로는 유아반 연장보육을 당직제로 운영을 하니까, 영아 연장반의 경우 또 교사 한 명을 당직으로 배치할 수가 없어서 간헐적으로 초과보육을 하고 있거든요. 영아반이 그러다 보니까 연장반 선생님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간헐적으로 탄력보육이 이루어지면 모르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탄력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반이 증설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구청에서 연장반 교사를 중간에라도 지원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되니까. 연초에 2월 기준으로 모두 다 확정이 되고 마니까. 그게 조금 힘들고... 구청에다 계속 뒹달을 해가지고, 그래서 (구청에서) 어린이집에 8월부터 연장교사 열 명을 배치한다고 이제 공문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도 나와 있는 게 이번에는 추가 배치기 때문에 한 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딱 차게 두 반을 운영하고 있고, 연장반을 8월에 증설할 예정인데 세 반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두 명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거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어요. 융통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E원장, 개인면담, 2022. 7. 22.)

자꾸 연장교사 인건비를 지원해준다 안 해준다 이래서... 어린이집 재정은 다들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그 와중에도 연장교사를 따로 뽑은 건 인건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이었잖아요. 이제 월급까지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부담하게 한다면 이제 애들도 적고 유지하기가 어려워져서 못 해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 측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 측정을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해서 혼란이 있었죠.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우리가 돈을 못 준다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진 거죠. 어쨌든 결국은 해결해 줬어요. 다 지원을 해주고... 실수한 거니까 해결을 해놓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고 유지해도 되는 사업인거냐 이런 거죠. 어린이집에서 애들은 줄어드는데 교사 채용은 늘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건도 제시했었어요. 야간보육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은 곳에 우선 지원해주겠다? 힘든 어린이집 먼저 우선지원해주겠다 이걸데 이것도 말이 안돼요. 야간 보육이 많은 어린이집은 그나마 그 야간 보육비 지원이라도 더 받는데, 야간 아이들이 많으면 힘들니까 거길 인건비를 먼저 지원해주겠다? ...

(B원장, 개인면담, 2022. 6. 17.)

이처럼, 원장들은 정부에서 연장보육반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연장보육

반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정부는 연장보육제도를 도입해 놓고 예산 편성을 문제로 예산이 없어 인건비 지원이 일부는 안 된다고 하여 앞으로 언제든지 인건비를 지원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한편 교사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연장보육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을 충족하거나 연장보육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연장보육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4. 연장보육제도에 대한 요구와 바람

1) 연장보육에 대한 교사 처우가 개선되었으면!

연장보육교사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를 받고 있지만 이전 보육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연장보육반 교사로 근무하더라도 처우가 더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어 일에 대한 열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정말 학력이나 경력을 10년이든 5년이든 다 무시한 채로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연장반 교사 인건비만 강조하면서 그냥 거기서 아무리 일을 오래 해도 어떠한 그런 보상도 없을 때는 인간인지라 아무래도 그런 만족감이나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들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어린이집의 경우는 답임은 아무도 그만두지 않았는데 이제 해가 바뀔 때 연장교사 4명은 다 퇴사를 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를 저도 듣고 봤거든요. 제도적으로 제대로 보장받는 사람과 안 돼 있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있을 때는 그게 굉장히 크게 오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먼저 되고 조금 우리에게 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확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연장보육반 전담 D교사, 실시간 온라인 그룹면담, 2022. 7. 16.)

저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급여가 아주 조금이라도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경력이 1년이 인정되는 게 아니고 6개월 이렇게 올라가니까 2년에 한 번 정도는 호봉제로 해서 오르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연장보육반 전담 C교사, 실시간 온라인 그룹면담, 2022. 7. 16.)

부모 입장에서든 연장보육 교사들의 처우가 향상되면 좀 더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봐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저희는 종일 일하는 사람이랑 파트로 일하는 사람이랑 이게 대우가 틀리거든요. 이제 어린이집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연장반 선생님한테도 담임 선생님한테 가는 혜택과 이런 급여적인 문제 이런 게 조금 향상된다면 이 선생님도 저희 아이들을 봐주시는 조금 적극적으로... 마음이 좀 더 적극적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장반 선생님들에 대한 대우와 이런 보수적인 측면 이런 게 조금 더 향상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저희 아이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조금 더 뭔가 케어가 된다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 H, 개인면담, 2022. 9. 17.)

하지만, 일부 기본보육교사는 연장보육교사들이 연장반을 전담해서 4시간을 보육하지 않고 보통 5시 이후 2시간 정도만 보육하는데 일률적으로 호봉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하였다.

저희 기본반 선생님은 어찌됐건 여덟 시간을 근무하고 1호봉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연장반 선생님이 뭐 0.5 호봉이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혼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연장반 선생님이 1호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다른 원에서 이직을 해서 이력서를 낸다고 했을 때 좀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선생님인데 호봉이 인정 돼서 똑같이 절반을 (인정) 받게 되면 안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이들과 일과를 보내고 그 안에서 저희도 아이들을 뭐 가르치지만 저희도 배우는 게 많잖아요. 근데 연장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시간 두 시간 내지는 뭐 3시간, 4시간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인정을 받을 만큼의... 그렇게 되면 좀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요.

(기본보육반 C교사, 실시간 온라인 그룹면담, 2022. 7. 21)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장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태도 문제에서 조금 불성실함이 보이면 저희도 이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거 뭐 그런 호봉 같은 것도 반절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근데 또 그에 반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런 게 인정이 됐으면 좋겠고...

(기본보육반 B교사, 실시간 온라인 그룹면담, 2022. 7. 21)

한편, 어린이집 연장보육반 운영 현황에 따라 연장보육교사가 오후 3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지속적으로 보육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연장보육반의 질 높은 보육을 위해서 연장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세심한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 보육반 선생님들이 연장보육을 했을 때 정부에서 뭔가 지원해 주는 게 조금 더 인센티브가 있다거나 저는 이제 받아보지는 않아서 모르는데 이제 수당 같은 게 조금 더 있어야지 선생님들이 조금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제도적으로 좀 있어야지, 그럼 연장보육반 운영에도 좀 더 좋아질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연장교사가 모두 배치되지 않고 약간 그것도 운처럼 교사가 몇 명 배치 됐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은 올해는 운 좋게 모든 게 됐지만(연장교사가 필요한 만큼 배치), 기본보육교사로서는 이제 그런 게 있어야지 저희도 안심을 하고 연장 보육을 조금 할 때 서로 기분도 나쁘지 않고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기본보육반 D교사, 실시간 온라인 그룹면담, 2022. 7. 21)

기본보육교사가 근무시간 이외에 연장보육을 하게 되면 원장은 연장반을 운영했을 때 지원되는 보육료의 일부를 시간 외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시간 외 근무한 시간만큼 늦게 출근하도록 한다고도 하였다. 기본보육교사가 연장보육반을 당직제로 보육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들에게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기본보육교사가 연장보육까지 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업무가 가중되면서 연장보육제도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였으므로 기본보육반 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본보육교사가 연장보육까지 하지 않도록 연장보육반 구성에 따른 연장보육반 교사의 인건비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장 전문가에 의하면 교사 인건비 지원이 없는 어린이집의 경우 기본보육반 교사들에게 기본급으로 최저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겸임을 하는 교사들보다 임금이 낮은 경우도 있어 기본보육반 교사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본보육반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연장보육반 교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

기본보육반 교사나 원장들은 연장보육반 교사 스스로 연장보육을 책임지는 담임교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교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또한, 원장들은 기본보육반 교사들이 연장보육반 교사들을 보조교사처럼 대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연구자: 기본반 교사로서 연장보육반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바람이나 요구가 있으시다면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교사: (연장보육반 교사가) 연장보육반 아이들을 좀 책임감 있게 봐주시고 담임교사라고 생각하시고 역할을 충실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교사: 네, 수업 준비 같은 거나 아니면 아이들 케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보육반 교사, 온라인 실시간 그룹면담, 2022. 7. 21)

저희 기본반 선생님들이 연장 선생님을 보조교사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는 보조교사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반 담임 선생님이 조금 더 존중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다시 말씀을 드렸거든요.

(C원장, 개인면담, 2022. 8. 25.)

부모들도 연장보육반 교사를 연장반 담임교사로 알고는 있으나, 연장보육반에서 있었던 일조차 기본보육반 교사에게 이야기하는 등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고도 하였다.

부모님들도 연장반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의 담임이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긴 하는데, 부모도 충분히 이제 들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애기가 다치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기본반 선생님한테 이제 막 안 좋은 걸 토로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반 선생님도 이제 화난 부모님한테 근데 ‘연장반일 때 연장반 선생님이 이제 주가 돼서 보시는 거예요. 뭐 다치는 것도 제가 전달을 해서 더 주의 깊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긴 하지만 화는 다 이제 기본반 선생님한테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부모님들 자체도 연장반 선생님은 보조 선생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연장교사도 담임이다라고 누누히 얘기를 해도. 연장반에 있었던 일들도 다음날 기본반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기분 상한 거를 이제 기본반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중략) 그래서 보육교직원과 부모님 대상으로 기본적인 교육을 아무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줘도 좋을 것 같고. 선생님들을 모두 다 모아 놓고 이런 교육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본반 선생님한테도 연장반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이다, 기본반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달할 사항들은 전달을 하고, 교육 활동에 대해서도 연계가 되면 더 좋은 부분이잖아요. 공유하고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E원장, 개인면담, 2022. 7. 13.)

E원장의 이야기처럼, 보육교직원 및 부모를 대상으로 지자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연장보육반 운영 및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부모와 연장보육교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

부모들은 연장보육반을 이용하면서 연장보육교사와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회를 갖기를 원했다.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도 연장보육교사에 대한 소개도 없고, 하원할 때도 기본보육반 교사나 보조교사가 나오면 거의 소통할 기회가 없다고 하였다.

제가 아이한테 관심이 많이 없다기보다 어린이집을 갈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연장반 선생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에 계속 뭔가를 문의하고 물어보면 혹시나 선생님들이 귀찮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큰일 아니고서는 어린이집에 잘 전화를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매달 전화 주시라는 게 아니라 오리엔테이션처럼 한 번쯤은 제가 이번 년도에 이렇게 아이와 함께할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해 주시면 저 선생님이거나 알 수 있는데...

(부모 H, 개인면담, 2022. 9. 17.)

제가 어린이집에 중간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그전에 연장보육반을 이용할 때도 따로 연장반 선생님에 대한 소개가 없었거든요. 그냥 진짜 하원 시간에 데리러 가서 보

이면 연장선생님이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지 어떤 이력을 갖고 있고 어떤 분이신지 최소한의 정보도 없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따로 소개하는 시간이 없다고 하면 키즈노트에라도 공지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 C, 개인면담, 2022. 9. 15.)

이렇게 왔다 갔다 인사만 하지 연장반선생님은 비상연락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오늘 연장반 선생님께 잘 놀았다고 전달을 받았는데 입에 상처가 있다. 어떻게 된 거예요라고 물어보면 제가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 건너서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전화가 오더라고요. 선생님이 놀 때 잠깐 피가 나서 조금 묻은 거지 생각하고 입안까지는 못 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었거든요. 그때 조금 심해 가지고... 그러니까 또 담임 선생님이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연장반 선생님 이랑) 직접적으로 부모랑 연결되는 게 없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담임 선생님한테 따로 확인하게 돼요.

(부모 B, 개인면담, 2022. 9. 20.)

오후 활동도 그냥 개별적인 사진이 아니어도 같이 있는 사진이라도 한 장씩, 그리고 아이 상태 같은 거 간단하게 감기 걸렸을 때 기침이나 콧물이 어땠는지 정도요. 이 정도라도 알려주시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대부분 잘 아시는데 가끔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셔서 제가 자꾸 물어보면 조금 왜 자꾸 물어보는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 D, 개인면담, 2022. 9.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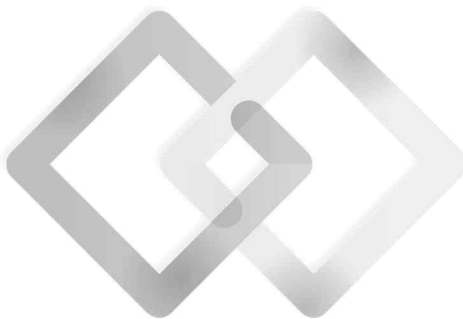
이처럼, 대부분의 부모들은 연장보육교사와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는 어린이집 매뉴얼 등이 없다 보니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기본보육반 담임교사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연장보육반 운영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연장보육교사에 대해 정식으로 소개하는 등의 기회를 마련하고 부모 만족도 조사 및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부모와 연장보육교사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

**어린이집 연장보육반
운영 현황 조사 및 질적 분석**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5장 결론 및 제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기본 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분리하는 새로운 운영 지침과 이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유아 보호자의 늦은 시간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부담은 덜고 기본보육반 담임교사의 근무여건은 개선함으로써, 즉 영유아에게는 더욱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연장보육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연장보육제도를 직접 적용·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연장보육반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구조적·현실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장보육제도 도입 이후 3년차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제도에 대한 실제적 점검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연장보육 서비스를 직접 제공 또는 이용하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영유아 부모들을 중심으로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어린이집 연장보육반 운영의 현실을 이해·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제1절 논의 및 결론

1. 연장보육 서비스 운영 현황 및 인식 조사

대전시 내에는 1,100여 개소의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959개소의 어린이집에서는 연장보육반을 운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a;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2022). 본 연구에서는 이 중 228개소 어린이집의 연장보육반 운영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어린이집에서 운영되고 있는 연장보육반은 총 368개로 이 중 211개 반(58%)은 영아반, 157개 반(42%)은 유아반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육통계(보건복지부, 2022a)에 따르면 대전시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는 20,001명인데 비해 유아는 11,176명으로 영아의 이용율이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내 연장보육반 또한 영아반이 유아반보다 16% 정도 높은 비율로 구성·운영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북부 지역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은재(2021)의 연장보육반 운영 현황에 관한 조사에서도 역시 연장보육반을 이용하는 영아의 수가 유아보다 12% 정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즉, 발달적 민감기의 영아들을 지원하는 세심한 배려와 돌봄으로 연장보육반이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영아 연장보육반 운영 경험에 관한 연구(고명자, 2021; 이남수·임민정, 2021)에서도 장시간 어린이집에 머무르는 영아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연장보육교사들에게 영아 발달 및 연장보육의 특수성에 관한 교육이 제공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연장보육반을 운영하지만 연장보육반 전용실을 마련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대부분(85.1%)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는데, 동일한 결과를 보고한 선행연구들(김은미·전유영, 2021; 이남수·임민정, 2021; 임은선·신동주, 2022)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 연장보육반의 독립성,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영아의 안전사고 우려도 높아지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율이 유아보다 영아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연장보육반 운영에 관한 물리적 환경, 정서적 지원 등 많은 부분들이 영아 중심적 관점에서 새롭게 고민되고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본보육교사와 연장보육교사 간 인수인계 방법으로는 ‘구두 전달(59.2%)’의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상황에 따라 각자 알아서 전달(15.8%)’, ‘간단한 메모로 전달(11.8%)’, ‘기타(4.4%)’ 방식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평가매뉴얼(한국보육진흥원, 2022)에서는 연장보육교사가 기본보육교사로부터 영유아를 인계받을 때 전달사항을 간략하게라도 문서에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보육교사와 연장보육교사 간 인수인계 과정은 다소 비체계적이고 부정확한 방법으로 운영·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김은미·전유영, 2021)에서는 기본보육교사와 연장보육교사 간 인수인계 시간 부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즉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의 보육과정 연계를 위한 효율적인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달 체계 운영 또는 시간적 여유 확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함께 고민되고 해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연장보육반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 72명, 기본보육교사 81명, 연장보육교사 7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장보육제도 및 연장보육반 운영에 관한 인식 조

사에서는 연장보육제도로 인한 어린이집 현장의 개선점과 관련하여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원장과 기본보육교사는 ‘기본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냈고, 연장보육교사는 ‘영유아 부모의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한 부담 감소’에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냈다. 연장보육제도로 인한 수혜자에 관한 질문에서도 원장은 여전히 기본보육교사를 가장 큰 수혜자로 인식하였고, 연장보육교사 역시 연장보육반 영유아 부모를 가장 큰 수혜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기본보육교사는 연장보육제도로 인한 가장 큰 개선점으로 ‘기본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선택했으면서도 이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연장보육반 영유아 부모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조사(조용남, 2021) 외 여러 조사 연구들이 기본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충분히 보고하고 있기는 하나, 임은선·신동주(2022)의 연구에서 기본보육교사들은 본 연구에서와 같이 기본보육교사가 아닌 영유아 부모를 연장보육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기본보육교사들이 자신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된 점은 인정하지만, 연장보육제도 시행으로 인해 더 수혜를 받는 부분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즉, 연장보육제도 도입의 주요 취지로 제시되었던 기본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개선의 유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개선이 실현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질적 접근과 분석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또한, 효율적인 연장보육반 운영을 위한 개선 사항에 관한 조사에서 원장은 기본보육교사와 연장보육교사 간 원활한 인수인계와 협력의 요인을, 기본보육교사와 연장보육교사는 명확한 업무 기준 마련을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선행연구(김은미·전유영, 2021)에서도 연장보육교사들은 명확한 업무 분담 요인을 연장보육반 운영의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심층 면담에서는 원장들이 기본보육교사와 연장보육교사 간 업무 구분 문제로 인한 갈등의 중재자 역할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장들은 이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원활한 인수인계와 협력의 요인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명확한 역할 분담 체계 구축도 필요하지만, 연장보육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각자가 불합리한 상황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연장보육교사 75명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장보육반 일과 운영 실태에 관

한 조사에서는 84%의 연장보육교사들이 연장보육반 보육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실제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진행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더욱 눈여겨볼 점은 계획한 대로 실행하고 있다고 답한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한편, 연장보육반 보육활동을 계획하지 않는다고 답한 16%의 연장보육교사들은 그 이유에 대해 ‘수시로 이루어지는 귀가 지도로 인해 보육계획을 반영하여 실행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을 가장 높게 나타내기도 하였다. 즉, 연장보육교사들은 보육활동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수시로 이루어지는 귀가 지도 때문에 계획대로 실행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교육적 목표 성취에 대한 인식도 낮아져 상황에 따라 융통적으로 진행하는 수준에서 연장보육반 보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장보육제도에 관한 선행연구(강은진·최경, 2020; 김은미·전유영, 2021) 및 연장보육제도의 전신인 시간연장보육제도에 관한 연구(송경섭, 2013)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결과로, 연장보육반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정의 질적 수준에 관한 논의와 개선 문제는 더욱 시급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연장보육시간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활동은 자유놀이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또한 시간연장보육 운영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로, 관련 연구들(김채린, 2012; 송경섭, 2013)에서는 시간연장보육반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영유아들이 단순 반복적 형태의 질적으로 저하된 놀이 활동을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우려하였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시간연장보육 서비스는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홍용희·김기혜·강경아·김수정, 2007). 본 연구에서 연장보육교사들이 응답한 ‘자유놀이’는 과연 보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유아중심·놀이중심이 실현되는 진정한 의미의 놀이를 떠올린 응답이었는지 자기반성적 물음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김은미·전유영(2021)의 연구에서 연장보육교사들은 연장보육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를 가장 높게 나타내기도 하였는데, 현재 연장보육반 운영에 관한 논의는 관계자들 간 이해 문제로만 집중된 경향이 있어 이제는 접근 관점의 변화도 필요하다.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연장보육제도의 근본 취지를 다시 되새기며, 무엇보다 연장보육반 보육과정 운영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시간연장보육반에서 나타났던 우려와는 다른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유아들이 모두 하원한 후 남은 시간 활용에 관한 질문에서 74.7%의 연장보육

교사들은 청소나 환경 정리로 그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0% 정도의 연장보육교사들만이 일지작성이나 다음날 놀이 활동 준비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장보육제도 시행 이후 실시된 보건복지부 조사(조용남, 2021)에서도 연장보육교사들은 그 시간에 주로 청소, 그 다음으로는 일지 작성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같이 연장보육교사들이 보육활동 준비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지막 영유아가 하원한 후부터 퇴근 전까지의 시간 동안에 청소 외에 활동 준비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연장보육교사들은 연장보육에 관한 업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내 여러 업무들을 수행하는 것이 연장보육교사로서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 또한 활동 준비를 위한 시간 확보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연장보육교사들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에서는 영유아들이 모두 하원한 후 시간이 남게 되면 여러 가지 잡무에 동원되어야 하는 연장보육교사의 고충 또한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선행연구(김은미·전유영, 2021)에서도 연장보육교사가 잔여 근무 시간에 해야 하는 업무 범위의 모호성 문제를 지적하며, 영유아들이 모두 귀가한 후 연장보육교사의 업무 범위와 탄력 근무에 관한 제도가 마련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즉, 연장보육교사 또한 연장보육반 보육과정 운영을 위해 고민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인정하고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과 지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연장보육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질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 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입장으로서의 원장, 기본보육반 담임교사,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연장보육반 겸임교사,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면담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연장보육 현실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1) 연장보육반 운영 현장에서의 주요쟁점

먼저, 연장보육제도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문제들을 중심

으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영유아 부모들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논의해보고자 한다. 연장보육반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보육교사들 간 가장 화두에 있는 문제는 연장보육반을 누가 담당하는가에 관한 문제로서, 각자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의견들 또한 분분했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설문 조사에서는 연장보육교사 75명이 참여하였지만, 이 중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36명(48%)이었고, 나머지는 보조교사 겸임 연장보육교사 27명(36%), 기본보육교사 겸임 연장보육교사 7명(9.3%), 야간연장교사 겸임 연장보육교사 5명(6.7%)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연장보육반은 전담교사보다는 겸임교사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연장보육반 겸임교사, 기본보육반 담임교사, 원장, 학부모 각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개별 면담 및 FGI를 통해서도 이러한 연장보육반 담당 교사 배치 형태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견들이 나타났다.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들은 늦은 시간까지 지치지 않고 보육에 충실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영유아들의 기본보육반 생활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오후 시간 보육이 원활하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하였다. 반면, 보조교사 겸임 형태로 근무하는 연장보육교사들은 영유아들의 일과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보조교사 업무를 다한 후 다시 연장보육교사로 늦은 시간까지 영유아들을 보육해야 하는 데 대한 육체적 피로가 크다고 하였다. 또, 어린이집 내에서는 연장보육반 담당 교사가 아닌 보조교사로서만 인식하고 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연장보육반 영유아가 하원한 후에는 다시 보조교사 업무가 요청되는 등 두 역할 간 명확한 구분과 인정이 부족한 점에 대해 아쉬워하였다.

그러나 기본보육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업무 전달과 소통의 용이성 측면에서 연장보육교사가 보조교사 겸임 형태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장들은 연장보육반이 활기차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로 전담교사 형태의 채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들은 보조교사 겸임 연장보육교사라면, 자신을 보조선생님으로 인식하는 영유아들을 지도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지만, 정서적으로 민감한 어린 영아들을 생각하면 또 겸임 형태가 이로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등 업무 효율보다는 영유아 발달적 측면에 대한 고민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의견들을 나타냈다. 이러한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원장들의 고민은 영유아 부모들의 바람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임은선·신동주(2022)의 연구에서도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 부모들은 정서적 안정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의 부모들 역시 교사의 업무 피로 때문에 연장보육반 교사가 별도로 배치되기를 선호하지만 너무 어린 영아, 예민하고 까다로운 영유아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도 함께했던 보조교사가 오후 연장보육반을 담당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지니고 있었다.

즉,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접근해야 하겠지만, 이상의 각 집단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연장보육반은 기본보육반 일과와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전담교사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너무 어린 영아반이라거나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가 많은 어린이집인 경우, 또는 연장보육반 교사의 근속 경력과 자질 등 특별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에서서는 어린이집 내 구성원 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하는 융통성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더불어, 이 같은 연장보육반 담당 교사 배치 형태와 관련하여 더욱 주시해야 할 문제로 다루어진 내용은 기본보육교사가 연장보육교사까지 겸임해야 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었다. 면담을 통해 연장보육반 운영에 대한 이해가 더욱 높아진 부모들은 담임교사가 연장보육교사를 겸임하는 경우에 대해 특히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이런 경우는 보육하는 교사도 맡기는 부모도 서로 힘들고 불편한 일이 된다고 하였다. 본 면담에 참여한 기본보육교사들 중에도 현재 또는 지난해에 연장보육교사를 겸임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들 역시 연장보육반 당번 교사로 근무하게 되는 주간의 고충과 이에 대한 보상 체계 미흡, 연장보육반 운영을 담임교사 당번제로 맡기고 있는 제도에 대한 불만 등을 크게 드러냈다. 선행연구(류다현·김은주 2021; 조미연, 2021)에서도 기본보육교사가 연장보육반을 운영하게 될 경우 다양한 형태의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지만, 관련 지침에서는 초과근무시간 수당 외 규정한 바가 없고 이 또한 강제성이 없기에(유희정·이연승·강민정, 2012) 기본보육교사 겸임 연장보육교사들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러 연장보육교사들은 본인이 속한 어린이집에도 담임교사 겸임 형태의 연장보육교사들이 함께 연장보육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전하며, 그들의 고충이 가장 클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의견들도 나타났다.

그럼에도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후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연장보육반 현황 조사(조용남, 2021)에서는 전국 42,107개의 연장보육반 중 전담교사를 배치한 비율은 27,275개 반(64.8%), 기본보육교사나 원장이 겸임하거나 미배치된 경우는 14,832개 반(35.2%)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즉 생각보다 많은 어린이집의 기본보육교사들이 연

장보육반 운영으로 인한 업무 가중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짐작해 보게 한다. 면담에 참여한 한 기본보육교사는 “이전의 종일보육 체제와 그냥 똑같다고 여기고 하고 있어요. 그 때에도 늦게 하원하는 유아들은 당번 교사들이 남아서 보육했으니까요.” 라며, 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라는 연장보육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한 현실을 말해주기도 하였다. 원장들 또한 기본보육교사가 연장보육교사를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은 정부가 교사 지원의 책무성을 회피하려는 방편으로 마련한 조항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즉, 기본보육교사가 연장보육교사를 겸임하는 형태로 연장보육반이 운영되는 데 대해서는 각 집단의 면담 참여자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과 의견들을 나타냈으며,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진지한 논의와 제도적 수정·보완이 필수적일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연장보육서비스에 관한 개별 면담 및 FGI에서 공통적으로 활발하게 다루어진 또 다른 주요 주제는 연장보육반 편성 인원과 운영 시간에 관한 문제였다. 연장보육반은 기본적으로 연령 혼합으로 영아반은 5명, 유아반은 15명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장보육교사들은 영아반에 0세가 포함되거나 유아반에 3세가 포함될 경우에는 영유아들 간 발달 차이가 커서 교사 혼자 보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원장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헤아려 기본보육교사가 도와주기를 권하지만, 기본보육교사의 입장에서는 또 본인 업무가 있으니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다고 하였다. 게다가 영아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될 수 있는 탄력편성이라는 지침까지 제시되어 있어, 간헐적 이용 영유아들이 많은 날은 정원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김은미·전유영, 2021; 백언정, 2017)에서는 현실적인 보육정원 책정을 위한 충분한 현장 조사와 이해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연장보육반 운영 지침에서 제시하는 영유아의 연령과 인원 기준을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권경숙(2021)은 연장보육반 영유아의 안전 문제, 기본보육반과 연장보육반 간 소통·연계 문제 등을 고려해서라도 현재 제시된 인원 기준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영유아 부모들 역시 연장보육시간에 일어난 자녀의 안전사고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무엇보다 안전한 환경과 돌봄, 정서적으로 좀 더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돌봄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관련 선행연구(백언정, 2017)에서도 어린이집에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하는 영유아들을 배려하여, 연장보육반에서는 가정과 같은 따뜻함과 안정감 제공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부모

들은 연장보육교사 혼자 여러 영유아들을 보육하고 하원 지도까지 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걱정하며, 꼭 필요한 부모들만 연장보육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낮추고 연장보육반 운영의 질을 높이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들도 제시하였다.

또, 부모들은 연장보육반에서 제공하는 저녁 식사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각 어린이집의 결정에 따라 저녁 식사 제공 여부가 달랐고, 제공을 할 경우에도 유상 혹은 무상으로 운영되기도 함으로써 이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였다. 면담에 참여한 한 연장보육교사는 자녀가 저녁 식사까지 마치고 오게 하려고 연장보육반을 신청하시는 부모님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연장보육제도는 필요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사용되면 점차 연장보육반 운영이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났다. 김혜금(2021), 박수영·권경숙(2021)의 연구에서도 연장보육 이용 자격 조건을 세분화 또는 축소 시켜 연장보육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영유아들이 이용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연장보육반 구성 인원에 관한 문제는 우선 관련 규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염려, 한정된 예산과 수요량과의 관계, 이 관계의 불균형에 따른 보육의 질 저하, 부모가 가지는 신청자격 기준에 대한 논의까지 불러일으키는 복합적인 문제였다. 따라서 연장보육반 운영 현장의 안정화를 위해 보다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사안은 보육 현실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적절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책정하는 것, 또 연장보육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 수요 정도를 정확히 조사하여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교사 인력을 배치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연장보육반 운영시간과 관련해서는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 이로 인해 연장보육교사로서의 독립적 역할과 권리를 보장받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기본보육교사의 입장에서 기본보육시간 종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남수·임민정(2021)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본보육시간은 오후 4시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본보육교사들의 실제적인 업무 시간은 오후 5시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기본보육반의 원칙적인 운영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지정하면서도 ‘16:00~17:00±30분의 하원 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한다는 내용을 추가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오후 5시까지 남게 되는 기본보육반 영유아가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함께 지내다가 하원할 수 있도록 연장보육반에서 보육해야 할지, 연장보육반 영유아가 추가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기

본보육반에서 별도로 보육해야 할지 등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도 겪고 있었다. 선행연구(박수영·권경숙, 2021)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언급하며, 연장보육료 산정 시간에 따라 각 보육시간이 동일하게 운영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2) 연장보육반 운영에 관한 집단별 경험과 인식

다음으로는 연장보육반을 직접 운영 또는 이용하는 과정 중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영유아 부모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갖게 되었던 주요 경험과 요구를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각 집단의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연장보육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지만, 각자 자기만의 역할과 입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자로서의 원장은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유무에 관한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로 인한 고민과 갈등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조건 충족을 위해 부모들에게는 연장보육시간 이용을 독려해야 하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혹은 서비스 이용 요청이 증가해 기본보육교사에게 연장보육반 영유아 보육을 부탁하게 되면 교사의 불만은 높아진다고 하였다. 원장 자신도 연장보육교사 채용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시간당 1,000원, 2,000원의 비용으로는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어 고민만 쌓여가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장 대상의 연장보육반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김은미·전유영, 2021)에서도 원장들은 인건비 지원 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장보육반 비용에 관한 인식 조사(김자옥, 2020)에서는 연장보육반 정원이 50% 이상일 경우에만 연장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조항에 대해 보육교직원과 영유아 부모 대부분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미연(2021)은 2021년도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 요구와 지원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수요조사에서는 약 4만 7천 명 정도의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 예산에서는 약 3만 3천 명 정도를 배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조사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생각해본다면,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장에서 연장보육교사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이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원장들은 연장보육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연장보육반이 정부 지원으로 운영될 것처럼

홍보되었으나, 지원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로웠고, 지원 조건이 된다 해도 지자체별 예산 부족으로 인해 또 다른 조건을 추가하여 그에 따라 우선 지원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재정 지원이 부족하고 또,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연장보육반 운영은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하였다. 이에 따라 원장들은 무엇보다 연장보육교사 지원 조건 완화 및 지원 범위 확대에 관한 검토가 진지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였고, 만약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연장보육제도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으로, 연장보육교사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는 기본보육교사와의 업무 분담 및 연계에 관한 문제, 연장보육교사로서의 복지와 처우에 관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설문지 조사 결과에서도 연장보육교사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연장보육반 업무 외 여러 업무를 해야 할 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면담에서는 이 문제가 연장보육교사에 대한 인식과도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장보육교사들은 고정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본보육교사의 성향에 맞추어 보육해야 하고, 기본보육교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청소해야 한다고 하였다. 회의에서도 배제되는 존재인데 담당해야 할 청소 영역은 점차 확대되었고,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니 기본보육교사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선행연구들(강은진·최경, 2020; 박수영·권경숙, 2021)에서도 연장보육교사들은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사이의 모호한 역할로 인한 어려움,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차이에서 오는 동료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존감 또한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보육교사들의 입장은 달랐다. 기본보육교사들은 연장보육교사들이 담임교사로서의 책임감을 갖지 않기 때문에 연장보육시간에도 자신들이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였다. 관련 연구들(강은진·박진아, 2018; 류다현·김은주, 2021)에서도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의 경우 짧은 근무시간에 만족하며 담임교사에 비해 책임감도 낮다는 결과를 밝힌 바 있기도 하다. 박수영·권경숙(2021) 또한 기본보육교사들은 연장보육시간까지 이어지는 무한책임으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여기에는 연장보육교사와의 전달 체계 미흡 요인도 작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연장보육교사들도 기본보육교사와의 소통과 연계 부족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문제는 곧 연장보육반에 대한 부모의 불신으로 이어진다고도 하였다.

즉, 기본보육교사와 연장보육교사는 각자 역할과 입장은 다를지라도 양질의 보육이 제

공된 하루를 완성하기 위해 누구보다 긴밀한 협조와 협력으로 함께해야 하는 중요한 관계인 것이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통한 논의를 토대로 정리해보면, 연장보육교사가 요구하는 명확한 역할 분담, 인식 개선, 기본보육반과의 소통·연계와 같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기본보육교사와 연장보육교사 간 이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형성해 가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연장보육교사들의 입장과 어려움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며(서현, 윤경아, 2013; 강은진·최경, 2020), 또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을 돕는 교사교육을 비롯하여 서로 정서 교류의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워크숍 등 다양한 교사 지원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연장보육교사들은 복지나 처우, 근무여건과 관련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연장보육반 전용 보육실이 없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주어져도 쉴 공간이 없다는 점, 호봉 책정에 반영되는 않는 경력이라는 상실감 등에 관한 것이었다. 연장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남인순, 2020)에서도 53.4%의 연장보육교사들이 휴게시간은 서류상으로는 기록되어 있다고 답했으며, 31.7%의 연장보육교사들은 휴게시간이 배정되어 있지만 그 시간에 업무를 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장보육교사들의 경험에 의하면 연장보육반 전용 보육실 부재 문제는 교사들이 보육과정의 연속적인 운영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수 없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서도 작용하고 있었다.

또, 연장보육교사들은 우리 경력은 몇 년을 근무하더라도 호봉 책정 시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을 비판하였고, 이로 인한 상실감과 사기 저하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연장보육교사는 1년차 교사나 3년차 교사나 차등 없이 동일한 기본 급여만을 수령하기 때문에 연장보육교사로서 숙련된 경험을 쌓아왔다 하더라도 능력을 발휘할 열정을 갖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박성자·권이정(2022)의 연구에서는 연장보육교사의 경우 초과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지는 못하고,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근무 시간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보상받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관계자들 모두 연장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 유무에 관한 문제에만 집중해 온 가운데, 정작 그 당사자들이 연장보육반 담임교사로서 충분히 역할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제공하는 일에는 관심 두지 못했던 것이다.

연장보육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연장보육반 담임교사임에도 기본보육반 담임교사와 역할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는 점, 호봉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점 등이 불합

리한 요소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한 연장보육교사는 “원장님은 항상 저희한테 선생님도 연장보육반 담임이니까 책임 있게 스스로 운영하라고 요구하시지만, 사실 그렇게 맡기시려면 그에 맞는 대우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라며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은 보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강란·장유진, 2021; 김성은, 2019), 연장보육반 운영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연장보육교사의 근무여건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작업도 반드시 병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부모의 입장에서는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연장보육교사와의 소통, 연장보육시간 보육의 질과 관련한 문제에 더욱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에 참여한 일부 부모들은 맞벌이 가정이 아니더라도 다른 자녀의 돌봄이나 가족의 입원 등 연장보육 서비스 신청 자격 조건이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장점을 이야기하는 반면, 일부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가장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집에 남게 되는 것은 여전히 눈치 보인다는 점, 하원 차량운행이 제공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한 어머니는 주택단지에 거주하며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였는데, 퇴근 후 저녁 시간에 어린 자녀와 함께 도보로 하원 하기는 어려운 정도의 거리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었고, 하원 차량 운행은 오후 5시 이전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초등학생인 언니가 차량으로 하원하는 동생을 맞이해주고 있으며, 언니가 일정이 있는 날에만 동생은 연장보육반에 남아 있게 된다고 하였다. 연장보육제도가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맞벌이 부모들의 부담과 불안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는 이 서비스가 사각지대 없이 모든 수요자에게 균등한 접근 기회와 동일한 서비스 내용을 보장하고 있는지 등 보다 세심한 문제로 접근하고 점검해 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 연장보육반 이용 영유아의 부모들은 자녀를 인계해 준 연장보육교사와 소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원 후 자녀에 관한 일로 정보 교환이 필요할 때면 항상 기본보육교사를 통해 내용을 전하고 전달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불편해 아예 묻지 않거나 다음날 등원 시 담임교사에게 묻는 정도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김은미·전유영, 2021)에서는 연장보육반 영아의 부모와 교사 간 정확한 정보 전달과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러한 업무연계를 돕는 보조교사 지원을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연장보육반 운영 또는 이용

방식에 관한 안내 매뉴얼 제시, 오리엔테이션이나 상담 시 연장보육교사도 소개하고 참여하는 방식 등을 제안하며 연장보육교사와 소통·연결될 수 있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연장보육반 운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부모들은 대부분 연장보육반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답하면서도 ‘돌봄 위주인 것이 아쉽다’, ‘블록놀이, 그림그리기 등 한정적인 놀이만 반복하는 것 같다’ 등 연장보육시간 보육의 질에 대한 불만과 요구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5세 유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교육적인 경험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는데, 원장들 또한 유아 연장보육반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강은진·최경, 2020). 본 연구에서의 원장들은 연장보육반 보육과정 운영의 질을 반성해 보며 연장보육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여러 선행연구들(김은미·전유영, 2021; 이은재, 2021; 임은선·신동주, 2022)에서도 연장보육시간 보육의 질과 관련하여 이 같은 교사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들이 양질의 보육 경험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연장보육반이라는 특수성에 기초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장보육교사를 위한 맞춤형 교사교육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2절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결과 및 이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어린이집 연장보육제도의 성공적인 현장 정착을 위한 몇 가지 주요 개선 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장보육반 담당교사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기본보육교사가 연장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은 반드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기본보육교사로서의 업무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장보육교사 역할까지 병행해야 한다면, 이는 교사의 업무가중뿐 아니라 보육의 질적 저하로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기본보육교사 또는 원장이 이처럼 자기 본연의 업무시간 내에 다른 역할을 병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 이 점에 더욱 무게를 실어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조항이다. 그러나 한두 명의 연장보육반

영유아를 보육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가 여의치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보육교사나 원장이 겸임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되, 영유아 인원수를 한두 명 정도로 제한하거나 한시적 혹은 간헐적 보육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등 보육 현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반영된 새로운 지침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현재 연장보육반 편성 인원은 영아반의 경우 0세가 포함되어도 최대 7명까지 보육할 수 있게 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기본적인 반 편성 인원에 관한 새로운 기준이 먼저 제시될 필요도 있겠다.

둘째,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 구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오후 4시를 기점으로 4시 이전까지는 기본보육시간, 4시 이후는 연장보육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보육 서비스의 경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는 모호한 지침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부모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자녀를 하원 시킬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은 좋지만, 이로 인해 기본보육교사의 직접적인 보육 업무 시간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각 현장에서는 오후 4시 이후 남게 되는 기본보육반 영유아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지만, 사실 예측 불가한 다양한 보육 상황과 교사 간 이해관계 등의 문제로 인해 묘안을 내기도 어려웠다. 두 서비스 간 이러한 운영시간에 관한 문제는 이미 여러 현장 사례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므로,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해결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정해진 운영시간을 예외 없이 모두 따를 수 있도록 한다거나 허용 가능 시간 범위를 축소하는 등 보다 안정적·효율적인 기본보육반, 연장보육반 운영을 도모하는 새로운 규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혹은, 해당 시간에는 기본보육반과 연장보육반을 통합보육한다는 구체적 운영 매뉴얼을 제시함으로써, 두 담당교사 간 만남과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여 함께 융통적으로 역할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셋째, 연장보육교사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지원의 조건 기준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저출산 문제로 인해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자체가 낮은 상황에서 연장보육반 정원 기준 50% 이상의 영유아들로 연장보육반 한 반을 구성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조미연, 2021). 또,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원장은 영유아 부모에게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을 독려해야 하기도 하고, 부모는 필요 이상으로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매월 일정 수의 영유아가 일정 시간 이상을 이용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익월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여부를 달리하기 때문

이다. 이는 영유아 중심이 아닌 어른들의 경제 논리에 입각한 정책으로서(박현주, 2022), 연장보육반의 운영 안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 결정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영유아 중심의 안정적인 연장보육 환경 제공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연장보육제도 도입에 따른 소요경비 책정 작업을 재검토하고 보다 안정적·일관적인 지원 체계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넷째, 연장보육반 운영 및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장보육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이용 영유아의 인원 및 발달적 특성, 영유아 부모의 이용 패턴 및 요구, 연장보육교사의 경력과 자질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연장보육반 운영에 관한 세부 결정 사항들, 즉 연장보육반으로 사용할 보육실 지정, 보육과정 계획, 연장보육교사 배치 유무 및 배치 형태에 대한 결정, 연장보육교사와 기본보육교사 간 업무 분장, 연장보육반 영유아에 대한 저녁 식사 제공 여부 등의 다양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며, 현장에는 이로 인한 고민과 갈등도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같은 어려움을 이제는 개별 어린이집 차원의 문제로만 묵과할 것이 아니라, 연장보육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연장보육반 운영 매뉴얼과 같은 지침서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연장보육반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들을 위한 연장보육반 이용 관련 매뉴얼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영유아 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연장보육교사와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 면담 실수 횟수 지정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 지침 등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제는 부모들에게도 단순히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과 단가에 관한 정보만 강조될 것이 아니라 연장보육반 운영 시스템 전반에 관한 이해와 정보를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부모들도 함께 연장보육반의 안정적 운영에 협조·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영유아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의 하원 차량 운행 시간, 연장보육반 종료 시간 제약 등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겪는 경우들도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연장보육반 보육과정 구성의 질에 대한 반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연장보육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으므로, 관계 전문가들은 늦은 시간대에 혼합 연령으로 운영되는 연장보육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

발·보급해야 할 것이다. 연장보육반 보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장보육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관한 실효성 있는 교사 교육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도 있겠다. 다만 여기에는 연장보육교사가 교육자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인정과 이에 따른 적절한 처우 제공, 연장보육교사도 독립적인 담임교사로서 인정하는 집단 분위기 조성 등과 같은 제도적·정서적 지원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같이 연장보육반 운영의 현실적 문제를 밝히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더욱 활성화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연장보육제도는 시행 기간이 짧아 관련 연구가 부족한 편이기도 하며, 특히 이러한 현장 중심적 연구 결과들은 앞서 제시한 연장보육반 운영 매뉴얼 구성의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또한, 연장보육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점검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매년 수집·보고되고 있는 우리나라 보육통계집 발간을 위한 조사 시, 연장보육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장보육반 운영 지원을 위한 소요경비 책정 작업이 재검토되고, 보다 합리적인 지원 기준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란·장유진(2021).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보육효능감, 소진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관계: 교사 휴게시간과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연구, 25(6), 33-52.
- 강은진·박진아(2018).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근무 실태 및 만족도. 육아정책연구, 12(2), 3-27.
- 강은진·최경(2020). 연장보육 운영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요구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5(5), 271-291.
- 고명자(2021). 영아반 연장보육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경험 및 요구.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2020). 2020 상반기 보육교사 노동실태조사 보고서.
- 국민신문고(2022). 민원질의응답. <https://www.epeople.go.kr>에서 2022년 9월 7일 인출.
- 권순임·구수연(2020). 주40시간근무제 실시에 따른 보육교사의 근무실태와 직무만족도. 한국유아교육연구, 22(1), 228-252.
- 권영희(2017). 맞춤형 보육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조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현경(2019.10.2). 보육현장 소리 안듣고 보육의 질 높일 수 없다. 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8662>
- 김성은(2019). 보육교사의 교사권리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원경(2015). 보육교사 근무환경 실태.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미·전유영(2021). 어린이집 연장보육제도에 대한 운영 실태와 원장과 연장보육교사의 인식 및 요구. 유아교육연구, 41(3), 359-386.
- 김자옥(2020). 연장보육 정책에 대한 보육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 비교.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채린(2012). 시간연장보육 프로그램의 현황 및 요구조사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금(2021).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탐색적 고찰. 영유아보육학, 131, 25-45.

- 남인순, “코로나19에도 학부모-아동 연장보육 적절히 이용”, 「남인순 의원실 보도자료」. 2020년 10월 12일.
- 대전세종맘스베이비(2022). 자유게시판. <https://cafe.naver.com/msbabys>에서 2022년 6월 6일 인출.
- 류다현·김은주(2021). 보육교사가 말하는 연장보육의 현실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60(2), 275-294.
- 맘스홀릭베이비(2022). 육아질문방. <https://cafe.naver.com/imsanbu>에서 2022년 4월 20일 인출.
- 문무경·박창현·송기창·김문정(2017). 2018-2022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연구보고 2017-07). 육아정책연구소.
- 박성자·권이정(2022).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근무환경에 대한 인식과 지원요구.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22(1), 175-178.
- 박수영·권경숙(2021).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에 따른 보육교사의 경험.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21(0), 123-125.
- 박정미(2019). 국내 유아교육분야의 저출산 관련 연구 동향 분석.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주(2022.7.19). 맞벌이 가정을 위한 어린이집 연장보육의 허점. 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524>
- 보건복지부(2013).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2009-2012).
- 보건복지부(2016a).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6b).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보건복지부(2019).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
- 보건복지부(2019).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
- 보건복지부(2020).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안내(원장용).
- 보건복지부(2022a). 2021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22b).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 송경섭(2013). 어린이집 유형별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실태 및 보육교직원의 인식과 요구: 서울, 경기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3(2), 24-45.
- 양옥승(2019). 한국 유아교육·보육 시스템 변천사. 영유아교육·보육연구, 12(1), 5-21.
- 오경미(2017). 맞춤형보육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의 인식 비교.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치원·보육교사의 작은 반란(2022). 쌤들의 수다. <https://cafe.naver.com/happyki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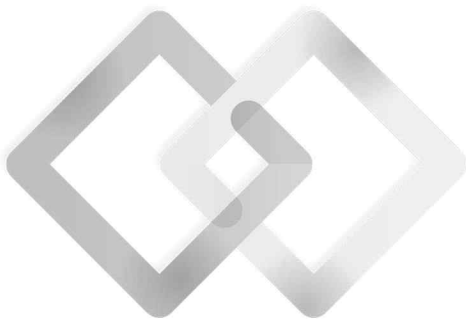
- garten에서 2022년 9월 3일 인출.
- 유희정·이미화(2004).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및 직무실태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유희정·이연승·강민정(2012). 어린이집 설립유형에 따른 운영 및 교사 처우 실태에 대한 분석: 부산광역시 보육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2(4), 181-202.
- 이남수·임민정(2021).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영아반 운영경험과 인식. 유아교육학연구, 25(5), 5-30.
- 이윤신(2019). “온종일 활기찬 어린이집”을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육아정책포럼, 62(-), 24-31.
- 이은재(2021). 어린이집 원장의 연장보육 운영 실태와 인식에 대한 연구.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민·이재필·손여울·김예은·방현(2019). 그리고 영유아교사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들녘.
- 임은선·신동주(2022). 어린이집 연장보육제도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조사: 보육교사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 22(3), 21-34.
- 전명숙(2014). 무상보육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해선, “목포시, 보조금 부당수령 어린이집 행정처분 진행”, 「광주매일신문」, 2022년 7월 27일.
- 조미연(2021). 연장반 전담교사의 효용성과 전망.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17-125.
- 조용남(2021).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현황 모니터링 결과. 보건복지부.
- 지혜쌤의 최강 유아교육 자료실(2022). 고민상담·자유게시판. <https://cafe.naver.com/yuasam>에서 2022년 9월 3일 인출.
- 키드키즈(2022). 이야기마당. <http://www.kidkids.net>에서 2022년 9월 7일 인출.
- 한국보육진흥원(2022). 2022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어린이집용).
- 홍용희·김기혜·강경아·김수정(2007). 유치원 종일제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유아교육연구, 27(5), 335-355.

2022년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

**어린이집 연장보육반
운영 현황 조사 및 질적 분석**



부록



<부록 1> 설문지

어린이집 연장보육반 운영현황 조사 연구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현장연구 지원 사업 선정 과제로서, 대전시 내 어린이집 연장보육제도의 현황, 연장보육제도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질문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연장보육제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에 대한 귀하의 소중한 응답은 연장보육반 운영상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밝히고, 이를 개선해 나아가기 위한 방안 제시 및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게 될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5-10분 내외이며, 『통계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연구에 대한 참여 동의 여부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2년 6월

연구책임자 : 이지혜(진주국제대 조교수)

공동연구자 : 정진희(우송정보대 초빙교수)

김선영(대전광역시청어린이집 교사)

연장보육제도란?

2020년 3월부터 시행되었고, 07:30~16:00까지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과 16:00~19:30까지 돌봄 공백 영유아 대상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연장보육반에 연장보육교사를 따로 배치하는 제도입니다. 연장보육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을 충족하는 부모의 영아(만0~2세)가 이용할 수 있고, 유아(만3~5세)는 별도의 자격이 필요 없으며 어린이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0).

다음은 응답자의 일반적인 배경을 조사하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근무하는 어린이집명을 써주세요. (_____ 어린이집)

1. 귀하는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중복 시 해당되는 내용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① 원장 ② 기본보육(담임)교사 ③ 연장보육교사 ④ 보조교사 ⑤ 기타()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자 ② 남자

3.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만20세-29세 ② 만30세-39세 ③ 만40세-49세 ④ 만50세-59세 ⑤ 만60세 이상

4.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가정 ② 민간 ③ 사회복지법인 ④ 법인·단체 등 ⑤ 국·공립 ⑥ 직장 ⑦ 협동

5. 귀하의 총 근무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2022년 기준)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5년 미만 ③ 5년 이상-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6. 귀하의 자격증 취득경로는 무엇입니까?

① 보육교사교육원

② 사이버보육교사교육원

③ 2~3년제 전문대

④ 4년제 대학교

⑤ 기타()

7.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② 대학(2~3년제)졸업 ③ 대학교(4년제)졸업 ④ 대학원 재학 이상

**다음은 응답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연장보육 환경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무하시는 기관 내 영아반 연장보육반은 몇 반입니까?

- ① 1반 ② 2반 ③ 3반 ④ 4반 ⑤ 5반 이상 ⑥ 없음

1-2. 근무하시는 기관 내 유아반 연장보육반은 몇 반입니까?

- ① 1반 ② 2반 ③ 3반 ④ 4반 ⑤ 5반 이상 ⑥ 없음

2. 연장보육반을 위한 전용보육실이 있습니까?

- ① 전용보육실이 있다. ☞ 4
② 전용보육실이 없다. ☞ 3-1, 3-2

2-1. 별도의 보육실이 없다면 어떤 보육실을 이용하십니까?

- ① 여러 보육실을 돌아가면서 이용한다.
② 일정한 한 보육실을 이용한다.
③ 유아는 유아반 교실, 영아는 영아반 교실을 번갈아 이용한다.
④ 기타 ()

2-2. 위 3-1 보육실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해당반 영유아가 가장 많이 남아있어서
② 보육실의 크기가 적절해서
③ 귀가 지도, 화장실, 기타 업무 등을 하기에 용이한 위치에 있어서
④ 연장보육반 전용보육실을 관리하는 것보다 기본보육반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해서
⑤ 기타 ()

3. 기본보육교사와 연장보육교사 간의 인수인계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구두로 전달
② 간단한 메모로 전달
③ 연계일지를 통해 전달
④ 상황에 따라 각자 알아서 전달
⑤ 기타()

**다음은 연장보육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체크 불가)**

● 다음은 연장보육제도의 효과에 관한 문항입니다.

1. 연장보육제도가 적용된 후 어린이집 현장에서 가장 개선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로 영유아에게 정서적 안정감 부여
- ② 장시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가 부담감 없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 이용
- ③ 어린이집은 장시간 보육 운영에 따른 부담 완화
- ④ 기본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 ⑤ 고정된 연장보육 영유아들이 이용하므로 계획된 프로그램 운영 가능
- ⑥ 기타 ()

2. 연장보육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본보육교사
- ② 연장보육교사
- ③ 연장보육반 영유아
- ④ 연장보육반 학부모
- 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관리자(원장)
- ⑥ 기타 ()

● 다음은 연장보육 운영체계에 관한 문항입니다.

3. 연장보육반의 합리적인 운영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5:00-19:30이 적당
- ② 15:30-19:30이 적당
- ③ (현행기준 유지) 16:00-19:30이 적당
- ④ 16:30-19:30이 적당
- ⑤ 기타()

4. 연장보육반의 신청자격은 어떤 기준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기준 유지) 영아는 맞벌이, 다자녀, 한 부모 등의 신청자격 기준이 있고, 유아는 신청자격 기준이 별도로 없는 것
- ② 영아와 유아 모두 신청자격 기준이 별도로 없는 것
- ③ 영아와 유아 모두 신청자격 기준이 있는 것
- ④ 기타()

5. 연장보육반의 영아반(만0-2세) 정원은 몇 명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행기준 5명)

- ① 3명 이내
- ② 4명 이내
- ③ 5명 이내(현행기준 유지)
- ④ 6명 이내
- ⑤ 7명 이내
- ⑥ 기타()

6. 연장보육반의 유아반(만3세-5세) 정원은 몇 명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행기준 15명)

- ① 12명 이내
- ② 13명 이내
- ③ 14명 이내
- ④ 15명 이내(현행기준 유지)
- ⑤ 16명 이내
- ⑥ 17-20명
- ⑦ 기타()

7. 연장보육반의 영아반 탄력보육 정원은 몇 명 이내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행기준 2명)

- ① 1명 이내
- ② 2명 이내(현행기준 유지)
- ③ 3명 이내
- ④ 기타()

8. 연장보육반의 유아반 탄력보육 정원은 몇 명 이내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행기준 5명)

- ① 3명 이내
- ② 4명 이내
- ③ 5명 이내(현행기준 유지)
- ④ 6명 이내
- ⑤ 기타()

**다음의 질문들은 연장보육제도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체크 불가)**

9. 연장보육 운영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연장보육교사의 명확한 업무 기준 마련
- ② 기본보육교사와 연장보육교사의 원활한 인수인계 및 협력 방안 마련
- ③ 연장보육반 영유아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위한 환경 조성
- ④ 연장보육반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자료 개발 및 보급
- ⑤ 연장보육반 학부모의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수업 확대 실시
- ⑥ 기타()

10. 연장보육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어떠한 재정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독립된 공간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 ② 연장보육교사 및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 ③ 급·간식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 운영비 지원
- ④ 기타()

귀하가 연장보육반 교사인 경우만 해당되는 곳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체크 불가)

1. 귀하는 어떤 형태로 근무하십니까?

- ① 연장보육전담교사
- ② 보조교사 겸직 연장보육교사
- ③ 기본보육교사 겸직 연장보육교사
- ④ 야간연장보육교사 겸직 연장보육교사
- ⑤ 기타 ()

2. 연장보육반 보육활동을 계획하십니까?

- ① 계획한다. ☞ 2-1, 2-2
- ② 계획하지 않는다. ☞ 2-3

2-1. 연장보육반의 보육계획을 세울 때 참고자료는 무엇입니까?

-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자료실에 있는 시간연장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작성
- ② 영유아관련 잡지 이용(예: 월간유아, 키드키즈 등)
- ③ 기본보육반의 활동을 연계하여 작성
- ④ 전공도서나 자료 참고
- ⑤ 기타()

2-2. 계획한 연장보육반 보육활동을 어느 정도 실행하십니까?

- ① 계획한 대로 실행한다
- ② 계획한 대로 실행하지만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진행한다.
- ③ 상황이 되면 계획한 활동을 실행해 보려고 시도한다.
- ④ 계획하지만 실행하지 않는다.

2-3. 연장보육반 보육활동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기본보육반의 놀이 및 활동을 연장하여 진행해서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아서
- ② 자연스럽게 휴식하거나 놀이하는 시간으로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아서
- ③ 수시로 이루어지는 귀가 지도로 인해 보육계획안을 반영하여 실행할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 ④ 연장보육을 하다 보면 준비 시간이 부족하여 계획이 어려우므로
- ⑤ 전문성 부족으로 수업계획이 어려우므로
- ⑥ 기타 ()

3. 연장보육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놀이 및 활동은 무엇입니까?

- ① 기본보육반의 보육 프로그램 반복
- ② 자유 놀이
- ③ 예술 경험(미술, 노래부르기 등)
- ④ 책 읽기나 끼적이기 활동
- ⑤ 신체 활동
- ⑥ 기타 (

4. 연장보육반 영유아들이 하원한 후 남은 시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① 일지작성 및 다음날 놀이 및 활동준비를 한다.
- ② 청소 및 환경을 정리한다.
- ③ 휴게 시간을 가진다.
- ④ 기타 (

5. 연장보육교사로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연장보육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내에서 여러 업무를 해야 할 때
- ② 기본보육교사와 소통의 어려움, 갈등
- ③ 부모와의 소통이 어려움
- ④ 전용 연장보육실이 없어 발생하는 어려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2> 면담참여 동의서

어린이집 연장보육반 운영현황에 대한 질적 분석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현장연구 지원사업 선정 과제로서, 대전시 내 어린이집 연장보육제도의 현황, 연장보육제도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면담에서는 어린이집 연장보육반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의 연장보육반 이용 경험 및 관련 인식과 요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귀하의 소중한 답변은 연장보육반 서비스 운영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밝히고, 이를 개선해 나아가기 위한 방안 제시 및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료수집을 위해 면담 내용은 녹음될 것이며, 귀하의 성함, 어린이집명 등 개인적인 정보 또는 개인적인 정보를 암시하는 그 어떠한 내용도 절대 노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는 『통계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본 면담참여와 녹음에 동의하신다면 아래에 동의 여부 표기 및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서명)	(서명)

2022년 9월

연구책임자 : 이지혜(진주국제대 조교수)

공동연구자 : 정진희(우송정보대 초빙교수)

김선영(대전광역시청어린이집 교사)

<부록 3> 면담용 질문목록 (원장용)

질문범주	어린이집 연장보육반 운영에 관한 면담 목록
연장보육반 운영 현황	• 현재 ○○어린이집 연장보육반은 어떠한 형태(연장보육교사 근무 형태/연장보육 환경 등)로 운영되고 있나요? - 그러한 운영 형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 연장보육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연장보육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기록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연장보육 제도에 대한 인식	• 기본보육반과 연장보육반으로 보육과정 및 시간을 구분하는 연장보육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장보육제도 이전과 비교하여)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연장보육반의 운영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연장보육반의 정원은 몇 명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영아반·유아반 정원 / 탄력보육 정원 • 현재의 연장보육반 신청자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연장보육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원장님은 원장으로서 연장보육 교사가 전담 혹은 겸임 중 어떠한 형태로 근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연장보육반 운영 경험 및 바람(요구)	• 연장보육반을 운영하면서 겪게 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 평소 연장보육반을 운영하면서 원장으로서 갖게 되는 고민으로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 연장보육반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 원장으로서 연장보육제도와 관련된 바람이나 요구가 있으신가요? • 보육교사로서의 역량에 있어 기본보육반 교사와 연장보육반 교사가 차이가 있나요? - 연장보육반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연장보육제도와 관련하여 관할 정부 기관에 정책적 제안 또는 요구하고 싶은 점이 있으신가요? • 연장보육 이용 아동을 중심으로 그 부모, 연장반 교사, 담임 교사 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부록 4> 면담용 질문목록 (기본보육반 교사)

질문범주	어린이집 연장보육반 운영에 관한 면담 목록
연장보육반 운영 현황	• 현재 근무하시는 어린이집 연장보육반은 어떠한 형태(연장보육교사 근무 형태/연장보육 환경 등)로 운영되고 있나요? - 그러한 운영 형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 연장보육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연장보육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기록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연장보육 제도에 대한 인식	• 기본보육반과 연장보육반으로 보육과정 및 시간을 구분하는 연장보육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장보육제도 이전과 비교하여)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연장보육반의 운영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연장보육반의 정원은 몇 명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영아반·유아반 정원 / 탄력보육 정원 • 연장보육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연장보육반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선생님은 기본보육반 교사로서 연장보육교사가 전담 혹은 겸임 중 어떠한 형태로 근무해주길 원하시나요? 왜 그런가요? • 영유아를 위한 연장보육 시간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연장보육 교사가 전담 혹은 겸임 중 어떠한 형태로 근무하는 것이 가장 유익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연장보육반 운영 경험 및 바람(요구)	• 기본보육반 교사로서 연장보육반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기본보육반 교사로서 연장보육반 운영과 관련된 바람이나 요구가 있으신가요? • 연장보육제도와 관련하여 관할 정부 기관에 정책적 제안 또는 요구하고 싶은 점이 있으신가요? • 연장보육 이용 아동을 중심으로 그 부모, 연장반 교사, 원장님 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 면담을 마친 후 연장보육 제도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거나 기존의 인식에 변화가 생긴 부분이 있으신가요?

<부록 5> 면담용 질문목록 (부모용)

질문범주	어린이집 연장보육반 이용에 관한 면담 목록
연장보육반 이용 현황	• 현재 자녀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연장보육반이 몇 반 운영되는지, 연장보육반 선생님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 자녀는 보통 몇 시에 하원을 하나요? • 연장보육반은 언제부터 이용하셨나요? 이용 신청을 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자녀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연장보육반은 한 반이 몇 세로,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연장보육반 이용 경험 및 요구	• 현재 보육 인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당하지 않다면, 몇 명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연장보육반 선생님은 별도로 계신가요? • 어머니는 연장반 선생님이 어떤 형태로 근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연장보육반에서 아이는 어떤 활동을 하면서 보내는지 알고 계시나요? •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게 되었던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연장보육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어떤 점인가요? 아쉬운 점, 개선해주길 바라는 부분이 있나요? •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불편사항, 요구사항이 있으신가요? • 연장보육제도의 가장 큰 장점 혹은 필요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제도의 단점 혹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 마지막으로 면담을 통해 연장보육 제도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새롭게 생각하시게 된 부분이 있나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현장연구 2022-3]

어린이집 연장보육반 운영현황조사 및 질적분석

발 행 일 : 2022년 12월

발 행 인 : 김 인 식

발 행 처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3층(우:34917)

전 화 : 042-331-8901

팩 스 : 042-331-8924

홈페이지 : <http://www.daejeon.pass.or.kr>

인 쇄 처 : (주)유선애드플랜

ISBN 979-11-92238-09-8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있습니다.
